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The 108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본부 사업보고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2024년 춘계노회용"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공백)

목 차

인 사 말 씀 ---------- 2

조 직 및 교 세 ---------- 3

제108회기 총회 주요 사업 ---------- 7

- 사 업 보 고 -

사 무 총 장 실 ---------- 10

행 정 · 재 무 처 ---------- 16

▸행 정 사 무 ---------- 16

▸재 무 회 계 ---------- 73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 89

해 외 · 다 문 화 선 교 처 ---------- 100

교 육 · 훈 련 처 ---------- 105

도 농 · 사 회 처 ---------- 116

제108회기 각 노회 상회비 및 부과상회비 납입현황 ---------- 85

제108회기 각 노회 총회헌금 입금 현황 ---------- 87

인 사 말 씀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개 노회와 9,476 지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정된 일정을 따라 모이시는 춘계 노회 일정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산적한 안건과 사무가 순조롭게 원만히 처리되시길 기도합니다. 총회를 위한 노회의 끊임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에 총회와 산하 기관들은 더 든든한 총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협력하여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봄 노회를 통해 코로나 판데믹 이후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여러 건설적 논의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격화되어 가는 지구촌 분쟁과 기후재난 상황 속에 국내적으로도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표출, 경제적 양극화,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위기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노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선교 사명과 복음을 위한 미래 전략들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출 15:26, 사 53:4-5, 살전 5:23) 주제 아래 달려온 108회기도 전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랜 갈등과 불화의 관계를 자성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 총회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폐회 직후부터 13개 시도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치유세미나 및 연합부흥성회를 가진 것도 이런 의지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세대와 지도자에 대한 총회 차원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107회기에 이어 다음세대비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세대를 지도하는 목회자 1백 명을 초청해 모임을 가졌으며, 1백 주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앞두고 큰 위기 속에 있는 청년회연합회 조직을 재건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조직을 확대하여 침체되어 있는 청년회전국연합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전도부흥과 신앙의 대잇기를 위한 관심과 노력 또한 남은 회기 전개해 갈 것입니다.

전국 교회에서 보내주신 ‘총회헌금’을 통해 총회와 산하 기관들의 정책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울진과 포항,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으로 이어진 분쟁과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 및 지원 사업도 의미 있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총회 임원회와 18개 상임부·위원회, 11개 재단 및 기관, 24개 비상임위원회 사업을 요약,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총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 노회와 지교회 목회 현장에는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3일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

조직 및 교세

I. 조직

1. 총회 임원회

총 회 장 : 김의식 목사 (영 등 포)
목사부총회장 : 김영걸 목사 (포 항 남)　　장로부총회장 : 윤택진 장로 (대 전)
서 기 : 조병호 목사 (서울강남)　　부 서 기 : 김성철 목사 (서울서북)
회 록 서 기 : 장승천 목사 (대 전 서)　　부회록서기 : 조현문 목사 (포 항)
회 계 : 정성철 장로 (서울강북)　　부 회 계 : 송정경 장로 (서 울 남)
사 무 총 장 : 김보현 목사 (서 울)

2. 상임부

부 서	부 장	서 기	회 계
정 치 부	권위영 목사 (서 울)	박병준 목사 (순 천)	김일량 장로 (서울강남)
규 칙 부	김준기 목사 (함 해)	김만기 목사 (경 기)	김시용 장로 (영 주)
재 정 부	문용식 장로 (평 남)	조한원 장로 (서울강서)	김성현 장로 (순 천 남)
신학교육	서순석 목사 (전 남)	박선용 목사 (충 청)	박기상 장로 (영 등 포)
재 판 국	윤석민 목사 (포 항)	방운술 목사 (전 북)	주길성 장로 (평 북)
국내선교	서화평 목사 (전 주)	이금호 목사 (평 남)	신동훈 장로 (서울서남)
세계선교	서은성 목사 (서 울 북)	박태부 목사 (경 남)	안윤선 장로 (서 울 남)
교육자원	김권수 목사 (서 울 동)	리종빈 목사 (전 남)	엄경록 장로 (안 양)
사회봉사	박귀환 목사 (천안아산)	김선우 목사 (전 서)	김태훈 장로 (대구동남)
군경교정선교	김영철 목사 (서울관악)	이상근 목사 (경 남)	강정용 장로 (용 천)
농어촌선교	신동성 목사 (대 전)	이흥만 장로 (광 주)	김채옥 장로 (서울강남)

3.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고시위	안창호 목사 (인 천 동)	박석진 목사 (포 항)	강무순 목사 (군 산)
감사위	노길석 장로 (서울강동)	조원식 목사 (땅 끝)	이복경 장로 (서울강서)
헌법위	남택률 목사 (전 남)	이기주 목사 (울 산)	홍배식 장로 (평 북)
평신도위	임현희 목사 (전 주)	오경남 목사 (함 해)	강찬성 장로 (영 등 포)
남북한선교통일위	안영표 목사 (평 북)	최종호 목사 (익 산)	권오탁 장로 (경 안)
훈련원운영위	김휘현 목사 (서 울 동)	김석겸 목사 (대 구 동)	방군섭 장로 (서울강서)
여성사역개발위	이철웅 목사 (서울강북)	박한수 목사 (서울서북)	배한정 목사 (서울강동)

4. 정기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선거관리위	박한규	장로(부산동)	김진욱	목사(인천동)	권오탁	장로(경안)
통계위	조병호	목사(서울강남)	연제국	목사(충청)	권영문	장로(포항)

5. 재단 및 기관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유지재단	이순창	목사(평북)	공석초	목사(서울북)	박주은	장로(서울동)
연금재단	윤석호	목사(인천동)	김선우	목사(전서)	노흥기	장로(부산남)
복지재단	김정호	목사(용천)	이승철	장로(서울)	서일승	목사(서울서남)
실로암재단	김선태	목사(서울)	이순창	목사(평북)		
장학재단	김영철	목사(서울관악)	이필산	목사(용천)	김석영	장로(서울동남)
문화법인	주승중	목사(인천)	정기수	목사(서울강동)		
한국장로교출판사	권헌서	장로(경안)	진호석	목사(목포)	이두섭	장로(안양)
한국기독공보사	김의식	목사(평북)	이춘복	목사(안양)		
지구촌의료개발기구	김승민	목사(서울서남)	김원웅	목사(광주)	여충호	목사(서울남)
손양원사업회	박은호	목사(서울강북)	임지형	목사(여수)	박기상	장로(영등포)
한국교회연구원	김순미	장로(서울)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전학수	장로(진주남)

6.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교회연합사업위	이순창	목사(평북)	조병호	목사(서울강남)	김일량	장로(서울강남)
정책기획 및 기구기혁위	김한호	목사(강원)	최종호	목사(여수)	박영배	장로(울산)
생명목회순례 10년위	김영걸	목사(포항남)	문성욱	목사(서울서북)	양정석	장로(순천)
에큐메니칼위	김영걸	목사(포항남)	노승찬	목사(경기)	이승철	장로(서울)
역사 및 선교유산회복위	김성수	목사(전서)	김선인	목사(포항남)	이대원	장로(서울북)
교회동반성장위	윤택진	장로(대전)	김상종	목사(제주)	김덕성	장로(부산)
언론홍보 및 정보통신위	전만영	목사(서울강서)	임보순	목사(경안)	김상용	장로(대구동)
이슬람선교 및 단군상대책위	황수석	목사(포항)	임기환	목사(여수)	구성조	장로(서울)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대책위	박한수	목사(서울서북)	명대준	목사(전남)	유춘봉	장로(전서)

여성위원회	김순미 장로(서 울)	이종엽 목사(서울서남)	백보현 장로(서울강남)
다음세대비전위	박성근 목사(포 항 남)	안준호 목사(천안아산)	박기상 장로(영 등 포)
전도부흥위	김준영 목사(목 포)	박능팔 목사(평 양)	김채옥 장로(서울강남)
디아스포라 이주민선교위	이정원 목사(서울강북)	손호산 목사(인 천)	이인기 장로(서 울 남)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	신영균 목사(경 동)	김기용 목사(영 등 포)	방서호 장로(강 원 동)
치유화해조정위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박도현 목사(평 남)	이정환 목사(서 울 남)

7.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총회주제연구위	정해우 목사(평 북)	최광순 목사(용 천)	김미순 장로(제 주)
사립학교법 재개정대책위	김운성 목사(서 울)	강무순 목사(군 산)	박주은 장로(서 울 동)
울릉도선교100 주년기념관건축위	오세원 목사(대 구 동)	조환국 목사(인 천)	서재철 장로(전 남)
총회장정책 자문위	손달익 목사(서울강남)	(부위원장) 김태영 목사(부 산 동)	신정호 목사(전 주)
선교사훈련센터 건립추진위	(미 조 직)		

8. 총회 별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헌법개정위	황형찬 목사(부 산 남)	오경남 목사(함 해)	김재갑 장로(익 산)
순교자및순직자 심사위	김연현 목사(전 북 동)	이봉수 목사(서울관악)	정인권 장로(서울서남)
서울노회유지재 단문제대책위	윤택진 장로(대 전)	이영석 목사(영 등 포)	유흥열 장로(서 울)
총회창립100주 년기념관건축위	(미 조 직)		
농어촌교회 발전위	김정운 목사(천안아산)	송기섭 목사(서울서북)	윤태권 장로(땅 끝)
대구애락원 대책위	마흥락 목사(경 동)	이상근 목사(경 남)	김병구 장로(대구동)
특별심판위원회	김준기 목사(함 해)	박귀환 목사(천안아산)	문용식 장로(평 남)

Ⅱ. 교 세 (2022. 12. 31. 기준)

번호	구 분	통계 수(인원)		증감 (A-B)	증감율 (%)	비 고
		2022년(A)	2021년(B)			
1	노회	69	69	0	0.00%	
2	교회	9,476	9,421	55	0.58%	
3	목사	22,180	21,423	757	3.53%	유학목사 제외
4	전도사	2,359	2,420	-61	-2.52%	
5	교육전도사	3,231	3,288	-57	-1.73%	
6	장로	34,715	33,626	1,089	3.24%	
7	안수집사	81,700	80,273	1,427	1.78%	
8	권사	199,090	190,590	8,500	4.46%	
9	집사	541,823	561,899	-20,076	-3.57%	서리집사 명칭 헌법개정
10	제직(6,7,8,9)	857,328	866,388	-9,060	-1.05%	
11	아동세례수	21,886				(신설/헌법 개정)
12	세례교인	1,602,398	1,617,335	6,949	-0.92%	중고등, 청장년(총대산출)
13	전체교인	2,302,682	2,358,914	-56,232	-2.38%	유아/아동세례 포함
14	경상수입결산	1,448,387,413,545	1,381,147,423,926	67,239,989,619	4.87%	2022년 말 결산기준

목차

제108회기 총회 주요 사업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시기에도 여전히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더불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단과 사이비 등 반기독교세력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불화, 대립과 분열의 소모전이 끊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총회는 제108회기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출 15:26, 사 53:4-5, 살전 5:23)로 제정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치유 총회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총회 본부는 기구개혁에 따른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총회 업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업무 특성을 존중하며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워크숍과 총회 홍보를 위한 공모전 등을 통해 협력의 틀을 다지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둘째, 정책 총회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하여 힘쓰는 총회가 되기 위하여 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상임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총회 주요 행사 및 활동들이 보다 더 노회와 교회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단 상임부 및 위원회의 세미나, 특별위원회 구성, 재해 구호 활동, 교회연합사업 및 에큐메니즘 활동 등의 주요 행사와 활동에 대해 노회와 총회가 상호 교류 가능한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타 교단과 협업, 협력 및 소통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가는 총회가 되도록 교회연합사업 기관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세계 교회와의 선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공유하는 회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총회 주일헌금에 대한 참여도가 미진합니다. 앞으로 노회와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총회-노회-교회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 지원할 것입니다.

제108회기 시작과 더불어 총회는 주제에 맞춰 전국 13개 시도별 ‘치유세미나 및 연합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소망하는 교단 지도자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

기도, 전도, 치유 주제의 강연과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된 신앙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 재난과 국제적 분쟁으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구호 사역을 전개해 열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과 시리아 난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교단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차원의 구호를 전개하고, 전문적인 단체나 기구, 에큐메니칼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되어 갈 재난 상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 중입니다.

교회연합사업 기관 및 타 교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회연합사업이 본 교단 및 한국교회 전체의 방향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제7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으로 장종현 목사(백석)를, 공동대표회장에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선임하여 대정부 관련 사업, 대사회 관련 사업, 평화 통일 준비사업, 한국교회 연합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23년 광복절 78주년 기념 주일을 1923년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종전평화 사업,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사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제41회 총회를 통해 고신 천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한국장로교가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장총의 역사성과 전통성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의 지도 아래 국내 70개 교단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와 한교총 등 주요 연합기관들이 모처럼 마음을 모아 하나 된 한국교회의 연합예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동역 관계에 있어 지난해 내적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금 회기에는 적극적인 선교 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들, 동역 교단들의 내한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세계교회와의 선교 협력 강화를 위해 본 교단과 MOU 및 선교 협정을 맺고 있는 교단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교단은 현재 (2024년 1월 기준) 1,526명의 총회 파송선교사를 91개국에 파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선교현장에서 보는 열매는 모두 주님의 은혜이며, 69개 노회 및 전국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결과이며 기도의 결실입니다. 지난해 세계선교협의회(CWM) 총무단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본부 사무실이 있는 국가를 떠나 국내에서 개최됐으며, 금년에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신학협의회 모임을 국내에 유치키로 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건축 40년을 맞게 되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 대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실 리모델링에 이어 엘리베이터 교체와 기념관 전면 주차장 재정비 공사를 마쳤습니다. 외부 주차 관리 업체에 운영을 위탁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하 주차장 정비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총회 신관 건축비 대출금 상환을 위한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총회헌금 참여 교회 수는 작년 대비 다소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총회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인 기구 개혁과 행정 지원 개선을 위해서 총회주일 헌금에 대한 독려뿐만 아니라 총회헌금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모금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08회 총회에서 채택한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10년 운동'은 총회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이 총회 산하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기존 업무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목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영역별 지침서를 작성하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들을 다듬어 나아갈 것입니다.

목차

사무총장실

1.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 사업 실시 현황

가. 감사위원회

1) 조직

가) 임원 : 위원장 노길석 장로, 서기 조원식 목사, 회계 이복경 장로

나) 위원 : 이형욱 장로, 황영태 목사, 최철용 장로, 하태환 장로, 유희성 장로, 이동아 목사

다) 전문위원 : 김성수 목사, 박훈 장로, 손주식 장로

2) 회의 : 전체 회의 2회, 임원 회의 2회

3) 기타 : 감사연수회 1회

4) 제108회기 상반기 감사 일정

가) 총회 본부/부·위원회: 2024년 3월 12일(화) ~ 15일(금)

나) 법인 기관/설립 기관/자치 기관

(1) 총회유지재단: 2024년 3월 18일(월)

(2) 한국기독공보사: 2024년 3월 19일(화)

(3) 한국장로교복지재단: 2024년 3월 20일(수)

(4) 총회연금재단: 2024년 3월 21일(목)

(5) 한국장로교출판사: 2024년 3월 22일(금)

(6) 전주예수병원 유지재단: 2024년 5월 8일(수) / 연 1회

(7)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2024년 5월 16일(목) / 연 1회

(8) 대구애락원: 2024년 5월 21일(화) / 연 1회

(9)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총회본부 감사 때

(10) 총회문화법인: 총회본부 감사 때

(11) (사)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총회본부 감사 때

(12)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총회본부 감사 때

(13) 총회장학재단: 총회본부 감사 때

(14)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총회본부 감사 때

(15)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본부 감사 때

(16) 전국은퇴목사회: 총회본부 감사 때

다) 직영 신학대학교(연 1회)

(1) 호남신학대학교: 2024년 5월 7일(화)

(2) 한일장신대학교: 2024년 5월 9일(목)

(3) 대전신학대학교: 2024년 5월 10일(금)

(4) 장로회신학대학교: 2024년 5월 13일(월)

(5) 서울장신대학교: 2024년 5월 14일(화)

(6) 영남신학대학교: 2024년 5월 22일(수)

(7) 부산장신대학교: 2024년 5월 23일(목)

나. 교회연합사업위원회

1) 조직

가) 임원: 위원장 이순창 목사, 서기 조병호 목사, 회계 김일량 장로

나) 위원: 김영걸 목사, 윤택진 장로, 김대동 목사, 조현문 목사, 최영업 목사, 주승중 목사, 남택률 목사, 홍성호 목사, 마흥락 목사, 김민수 목사, 양재천 목사, 임영수 장로

다) 전문위원: 정훈 목사

2) CTS기독교TV 임시주주총회

가)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11시

나) 장소: CTS기독교TV 컨벤션홀

다) 주요 내용: 공동대표이사 변경 - 총회장 김의식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감독회장 이철 감독(기감)

3)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1회 정기총회

가)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다) 임원 개선

(1) 대표회장: 천환 목사(고신)

(2) 상임회장: 권순웅 목사(합동)

(3) 공동회장: 김의식 목사(통합) 외 회원교단 총회장(25개 교단)

(4) 부회장: 윤택진 장로(통합), 김영구 장로(합동), 진종신 장로(고신), 원형득 장로(백석), 이재승 장로(개혁)

(5) 서기: 김순귀 목사(개혁)

(6) 부서기: 이승진 목사(합동중앙)

(7) 회록서기: 표성철 목사(고려)

(8) 부회록서기: 원종경 목사(합복)

(9) 회계: 이홍섭 장로(대신)

(10) 부회계: 김재선 장로(합신)

(11) 총무: 정성엽 목사(합신)

(12) 협동 총무: 김보현 목사(통합), 박용규 목사(합동), 이영한 목사(고신), 김창주 목사(기장), 김고현 목사(보수), 조세영 목사(개혁개신)

(13) 감사: 김종명 목사(백석), 김명찬 목사(한영), 전우수 장로(고신)

라) 본 교단 소속 위원장: 사회위원장 김의식 목사, 장로교역사탐방위원장 김보현 목사

마) 주요 내용: 정관 개정, 임원 및 감사 인준, 이사장 및 신임 이사 인준, 회원 가입(웨신), 제41회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72회 총회

가)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나)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

다) 임원 개선

(1) 회장: 윤창섭 목사(복음 총회장)

(2) 부회장: 김의식 목사(예장 총회장), 조성암 대주교(정교회), 태동화 목사(기감), 정옥진 장로(여성/기장), 윤대엽 청년(청년/성공회)

(3) 서기: 이훈삼 목사(기장)

(4) 회계: 박상태 목사(루터회)

(5) 감사: 박준선 사관(구세군), 이재호 목사(서회)

라) 주요 내용: 제72회기 주요 일정, 제72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활동, 제72회 총회선언문 채택 등

5) 한국교회총연합 제7회 총회

가)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나)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다) 임원 개선

(1)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2) 공동대표회장: 김의식 목사(예장통합),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이철 감독(기감), 임석웅 목사(기성)

(3) 상임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이종성 목사(기침), 김홍석 목사(고신), 정서영 목사(예장개혁), 조일구 목사(예성), 변세권 목사(예장합신), 임병무 목사(예장대신), 송동원 목사(예장개혁개신), 류춘배 목사(예장백석대신), 최종술 목사(그교협교역자)

(4) 공동회장: 윤문기 목사(나성) 외 20 회원 교단 총회장

(5) 총무: 엄진용 목사(기하성),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6) 협동총무: 김보현 목사(예장통합) 외 10명

(7) 서기: 김순귀 목사(예장개혁)

(8) 부서기: 정성엽 목사(예장합신)

(9) 회계: 조세영 목사(예장개혁개신)

(10) 부회계: 장성철 목사(예장보수개혁)

라) 본 교단 소속 상임위원장 - 평화통일위원장 황세형 목사

마) 주요 내용: 청원 보고(사업법인 설치, 미수금 결손 처리, 긴급 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 및 행정비사요, 연합기관 통합, 명예회장 추대 및 공로패 증정), 제7회기 사업 계획 승인, 제7회기 회원 교단 회비 및 예산 승인, 제7회 총회 결의문 채택 등

6) 교회연합사업 기관 공천 및 추천

가) 한국교회총연합

(1) 법인이사 추천: 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 서기 조병호 목사

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1) 총대: 황상호 목사(서울동남)

(2) 상임회장 추천: 김순미 장로(서울)

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 이사: 강무순 목사(군산), 김문년 목사(안양)

라)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총대: 김준영 목사(목포), 장향희 목사(서울관악), 전태근 목사(서울강북), 최에릭 목사(서울관악)

다.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1) 조직

가) 임원: 위원장 김한호 목사, 서기 최종호 목사, 회계 박영배 장로

나) 위원: 곽재욱 목사, 신현주 목사, 이종문 목사, 신은수 목사, 유순기 목사, 박노택 목사, 윤한진 장로, 정찬덕 장로, 길근섭 장로, 조중현 장로, 한인규 장로, 강양훈 장로

다) 전문위원: 신영균 목사, 노치준 목사, 양정석 장로

2)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연구를 위해 4개 연구 분야로 분류하고, 분과를 조직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라. 에큐메니칼위원회

1) 조직

가) 임원: 위원장 김영걸 목사, 서기 노승찬 목사, 회계 이승철 장로

나) 위원: 박원빈 목사, 이종훈 목사, 온성진 목사, 장승권 목사, 노흥기 장로, 이영묵 장로

다) 전문위원: 배현주 목사, 조영미 박사, 한경균 목사

2) 회의: 에큐메니칼위원회 2회

3) 제108회기 에큐메니칼 관련 행사

가)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제15차 총회

(1) 일시: 2023년 9월 27일(수)~10월 4일(수)

(2) 장소: 인도 켈랄라 주, 코타얌

(3) 참석자: 김의식 목사(총회장), 김보현 목사(사무총장), 김윤태 목사, 이선이 교수, 조영미 박사, 이창기 전도사, 채송희 목사 및 본 교단 방문자 17명

(4) 주요내용: 주요 내용: 본 교단 조영미 박사(중앙대)가 실행위원으로 선출

나) 세계선교협의회(CWM) 회원 교단 총무단 회의

(1) 일시: 2023년 10월 4일(수)~6일(금)

(2) 장소: 싱가포르

(3) 참석자: 김보현 목사(사무총장)

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총회

(1) 일시: 2023년 10월 8일(일)~10일(화)

(2) 장소: KCCJ 동경교회

(3) 참석자: 윤택진 장로(부총회장)

라) 세계선교협의회(CWM) 종교간 생태-영성 국제컨설테이션

(1)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27일(금)

(2) 장소: 영국 런던

(3) 참석자: 원요셉 목사(순천덕신교회), 김주은 청년(CWM 청년 총대)

마) SIB 서말레이시아 30주년 기념예배

(1)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11월 1일(수)

(2) 장소: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3) 참석자: 김영걸 목사(부총회장)

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15차 총회 보고대회

(1)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2) 장소: 기독교회관 701호 / 온라인 ZOOM
(3) 주요 내용: CCA 총회 보고 및 에큐메니칼 대화

사) 기독교선교연대(EMS) 선교협의회
(1) 일정: 2023년 11월 15일(수)~17일(금)
(2) 장소: 온라인 ZOOM
(3) 참석자: 이지혜 청년(EMS 청년총대, 선교협의회원)

아) 태국기독교회(CCT) 에큐메니칼 파트너 미팅
(1)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25일(토)
(2) 장소: 태국 방콕 CCT 총회
(3) 참석자: 채송희 목사(에큐메니칼 담당), 허춘중 목사(태국 선교사)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에큐메니칼 송년 모임
(1)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2) 장소: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홀

차)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실행위원회
(1) 일시: 2024년 1월 16일(화)~19(금)
(2) 장소: 태국 치앙마이 CCA 본부
(3) 참석자: 조영미 박사(CCA 실행위원/에큐메니칼위원회 전문위원)

카) 세계선교협의회(CWM) 커뮤니케이션 워크숍
(1) 일시: 2024년 1월 17일(수)~21(일)
(2)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르다나 시티센터
(3) 참석자: 이명숙 목사(도농사회처)

타)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 동북아지구(NEAAC) 총회
(1)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오후 3시
(2) 장소: 온라인 ZOOM
(3) 참석자: 이홍정 목사(WCRC 실행위원),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김은하 박사(장신대), 최상도 교수(호신대), 정빙화 목사(장석교회), 장예은 청년(연세대), 채송희 목사(에큐메니칼 담당)
(4) 주요 내용: 조주희 목사가 NEAAC 의장으로 선출, 2025년 WCRC 총회 협력 방안 논의

파) 세계교회협의회(WCC) 신앙과직제위원회
(1) 일시: 2024년 2월 1일(목)~8일(목)
(2) 장소: 인도네시아 마나도
(3) 참석자: 최상도 교수(호남신학대학교)

하) 동북아시아 평화와 민간안보를 위한 포럼(NEA Forum)
(1) 일시: 2024년 2월 19일(월)~22일(목)
(2) 장소: 일본 오키나와
(3) 참석자: 채송희 목사(에큐메니칼 담당)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

가. 에큐메니칼위원회

1) 세계선교협의회(CWM) 동아시아 회원교단 총회 사전대회

가) 일시: 2024년 3월 4일(월)~8(금) / 나) 장소: 태국 방콕

2) 세계교회협의회(WCC) 기후정의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 일시: 2024년 3월 5일(화)~8일(금) / 나) 장소: 스위스 제네바

3) 에티오피아 메카네예수스교회(ECCMY) 선교 파트너 모임(CMCR)

가) 일시: 2024년 3월 5일(화)~8일(금) / 나) 장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4) 일본예수그리스도교회(JCCJ) 제74회 총회

가) 일시: 2024년 3월 19(화)~20일(수) / 나) 장소: 고베시 고베츄오교회(Kobe Chuo Church)

5) 기독교선교연대(EMS) 회계 컨설테이션

가) 일시: 2024년 4월 10일(수)~14일(일) / 나) 장소: 독일 호프가이스마(Hofgeismar)

6) 대만장로교회(PCT) 총회

가) 일시: 2024년 4월 15(월)~18일(목) / 나) 장소: 장화시 장화기독병원

7) 스코틀랜드교회(CoS) 총회

가) 일시: 2024년 5월 17일(금)~23일(목) / 나) 장소: 스코틀랜드교회 총회 홀

8) 세계선교협의회(CWM) 총회

가) 일시: 2024년 6월 12일(수)~19일(수) / 나) 장소: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반

9) 인도네시아 카로바탁개신교회(GBKP) 주일학교대회

가) 일시: 2024년 7월 1일(월)~6일(토) / 나) 장소: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Sukamakmur

10) 미국장로교회(PCUSA) 제226회 총회

가) 일시: 2024년 6월 29(토)~7월 4일(목) / 나) 장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11) 호주연합교회(UCA) 총회

가) 일시: 2024년 7월 11일(목)~16일(화) / 나) 장소: 호주 시드니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가) 일시: 2024년 9월 19일(목)~23일(월) / 나) 장소: 서울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가. 에큐메니칼위원회: 총회 홈페이지 에큐메니칼 게시판에 올라오는 에큐메니칼 소식을 숙지해 주십시오.

목차

I. 행정사무 부문

1. 정치부

가. 임원 및 분과 조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임원분과 / 부　장: 권위영 목사, 서기: 박병준 목사, 회계: 김일량 장로, 전문위원: 류재돈 장로

제1분과 / 분과장: 정병록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충북)

위　원: 백용훈 목사, 김기수 장로, 김상석 목사, 양상주 장로

전문위원: 김종성 목사(대전서)

제2분과 / 분과장: 최성은 목사, 서기: 최재정 장로

위　원: 이대희 목사, 현승학 목사, 심태식 목사, 서원수 목사

전문위원: 김기용 목사

나. 총회 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의 선임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다.

성명 / 교직	노회	교회	경력
류재돈 장로	진주남	서포	• 제107회 총회 평신도위원장 • 전(前)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김종성 목사	대전서	노은우리	• 제104회 총회재판국 서기 • 제107회 총회재심재판국장
김기용 목사	영등포	당일	• 제107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서기 • 중앙대 법대(졸)

다. 제108회기 총회 정치부 수임안건을 다음과 같이 분과별로 배정한 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제1분과: 1) 서울동노장 김상원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 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건

2) 여수노회장 박종석 목사가 "정치부"는 세상적, 정치적 이미지가 강하여 행정에 걸맞는 용어로 변경해 달라는 건

제2분과: 1) 부천노회장 황금성 목사가 제출한 기독교 유적지 탐방 안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달라는 건

2) 여수노회장 박종석 목사가 "정치부"는 세상적, 정치적 이미지가 강하여 행정에 걸맞는 용어로 변경해 달라는 건

라. 제108회기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다.

1) 날짜 : 2024년 3월 26일(화).

2) 시간 : 오후1시30분 ~ 오후3시30분.

3)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4) 대상 : 69개 노회 정치부 임원.

5) 여비와 식비 : 각 노회에 여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마. 제108회기 총회 정치부 부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다.

1) 날짜 : 2024년 5월 9일(목).

2) 시간 : 오전11시30분 ~ 오후2시30분.

3) 장소 : 서울숲교회(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29).

4) 대상 : 총회 **총대** 정치부원.

5) 여비와 식비 : 총회 정치부장이 담당하기로 하다.

2. 규칙부

가. 분과 조직 및 분과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1분과 / 분과장 : 윤마태 목사 서기 : 양명안 목사

위 원 : 김정진 목사 윤훈종 목사 이운성 장로 하장대 장로

2분과 / 분과장 : 박동석 목사 서기 : 방연영 목사

위 원 : 박한수 목사 김정근 목사 송성배 장로 정인철 장로

나. 총회 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의 선임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하다.

성명 / 교직	노회	교회	경력
김연현 목사	전북동	구락	제102회기 ~ 제105회기, 제107회기 전문위원, 법학 박사
김민수 목사	서울강북	새생명	제106회기 규칙부장
이동천 장로	대구동남	칠성	제106회기 규칙부 회계

다. 제107회 총회 수임안건은 다음과 같이 배정하다.

1) 임원분과

가)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단체의 강사 초청 및 광고 후원 요청 건은 부총회장 후보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며 금권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총회장 후보가 되는 해에는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부총회장과 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광고 및 후원 요청의 상한선을 두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보고시 결의)

나) 총회 각 부·위원회 부·위원장 선거가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총회 각 부·위원회 선거 제도 개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 보고시 결의)

다) 총회 기구 개혁(안)을 별지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보고시 결의)

2) 1분과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0-0806 / 총회연금재단 내규 제정의 건(2020. 8.23.)”을 한 회기(1년) 동안 연구는 한 회기(1년) 더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나) 총회연금재단 제 규정(연금법) 제정(안)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다) 전북노회장 전영복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의 노후 보장제도인 총회 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라)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제107회 총회연금재단 결의안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마)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21년~35년 가입자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1.6% 증액한 것을 1.0%로 수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3) 2분과

가) 정치부장 김성철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6695 / 정치부 헌법 개정안 및 규칙 개정안 청원(202

3.6.13.)” 중 규칙 개정안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나) 신학교육부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238 /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정관 변경 청원(2023.6.16.)”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다)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장 최충원 목사가 제출한 “사무총장실-628 / 총회 수임 안건 연구 결과 허락 청원(2023.7.5.)”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라) 사회봉사부장 서성구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293 / 예장녹색교회협의회 정관 개정 청원(2023.7.14.)”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마) 신학교육부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621 /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변경 청원(2023.7.31.)”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바)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장 최충원 목사가 제출한 “사무총장실-752 / 총회 수임 안건 연구 결과 변경 허락 청원(2023.8.14.)”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

사)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의 개정(안)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결의한 건(공천위원회 보고시 결의)

(1)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수의 10% 이상을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제101회)”는 자구를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 준용) 2항 8목에 신설해 달라는 건

(2)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노회 총대 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제101회)”는 자구를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 준용) 2항 9목에 신설해 달라는 건

(3) “총회 상임 부 ·위원회 각 부서의 목사/장로 비율을 가능한 6대 4에 가깝게 배정하도록 한다.”는 자구를 연구하여 개정해 달라는 건

(4) 총회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 임원 공천시 노회장 추천을 받도록 해달라는 건

아) 제107회기 중 규칙부로 보낸 신학교 정관 개정에 관하여는 제108회 총회 임원회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다음 회기 중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관개정에 관한 절차를 조속히 확립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신학교육부 보고시 결의)

자) 총회산하 신학대학교가 총회 결의와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결의 당시의 총회파송이사를 소환하는 규정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108회 총회에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조치(신학교육부 보고시 결의)

라. 규칙부 산하 ‘총회 제 규칙 및 규정 연구위원회’ 구성(총회 규칙부장 포함 규칙부원 11명/5개 권역 목사·장로 각 1인)과 소요되는 예산 1,000 만원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마. 제108회기 규칙부원 카톡방을 개설하여 서기 김만기 목사가 운영하기로 하다.

바. 총회임원회가 전문위원 선임 청원을 허락함.(김연현 목사, 김민수 목사, 이동천 장로)

사. 제108총회 수임안건 중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0-0806 / 총회연금재단 내규 제정의 건(2020.8.23.)”을 한 회기(1년) 동안 연구는 한 회기(1년) 더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우철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3-0204 / 문서(총회연금재단 내규 재정의 건) 반려 요청(2023.02.09.)”에 의거하여 자료를 반려하기로 하고 직원직제 내규 제정(안)을 보완하여 추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아. 제108총회 수임안건 중 전북노회장 전영복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의 노후 보장제도인 총회 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자. 제108총회 수임안건 중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제107회 총회연금재단 결의안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차. 제108총회 수임안건 중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21년~35년 가입자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1.6% 증액한 것을 1.0%로 수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카. "사무총장실-1033 / 제107회기 감사 의견 통지(2023.11.1.)는 참고하고 시행하기로 하다.

타. "행정·재무처-13652 / 청원에 대한 회신(2023.11.9.)"은 총회임원회가 김연현 목사, 김민수 목사, 이동천 장로를 규칙부 전문위원으로 허락함을 확인하고, 김연현 목사를 2분과, 김민수 목사를 1분과, 이동천 장로를 임원분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총회 규칙 및 규정 연구 위원회'건은 참고하기로 하다.

파.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0-0806 / 총회연금재단 내규 제정의 건(2020.8.23.)"을 한 회기(1년) 동안 연구는 한 회기(1년) 더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우철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3-0204 / 문서(총회연금재단 내규 재정의 건) 반려 요청(2023.02.09.)"에 의거하여 자료를 반려하기로 하고 직원직제 내규 제정(안)을 보완하여 추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하. 전북노회장 전영복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의 노후 보장제도인 총회 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거.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제107회 총회연금재단 결의안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너. 순서노회장 윤청열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21년~35년 가입자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을 1.6% 증액한 것을 1.0%로 수정해 달라는 건을 1년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더. 사회봉사부장 서성구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293 / 예장녹색교회협의회 정관 개정 청원(2023.7.14.)"을 한 회기(1년) 연구 허락 결의 후속조치는 차기 회의 시 도농사회처 정관 개정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기로 하다.

러. 규칙 질의 6건 해석 및 총회임원회의 해석 채택 후 통지

1)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의 건(2023.9.12.)"

해석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제 108회 총회 추가 청원서 및 보고서 10번 : 행정·재무처-11499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행정·재무처-11499 / 규칙해석 통보(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10번)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질의 내용 :

질의 1) 땅끝노회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건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은 노회장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한 신안건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 구성 청원 안건에 대한 신안건 질의가 아닌 장로회 각 치리회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의 ‘신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요?

질의 2) 그런데,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는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 곧 ‘신안건’의 해석에 근거하여,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진시온교회 담임목사에게 회신(땅끝노회 제33-74/2023.5.22.)하고서는, 이제서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노회장이 올린 총회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김순임 목사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신안건)를 위배했다고 겁박까지 하며 교회에 2, 3차 피해를 주며 파송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경에 외부인들을 동원해 와서 강진시온교회 외벽에 ‘공고문’을 강력 접착 테잎으로 부착하여 지금까지 부착되어 마을 주민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봐도 공고문 부착하라는 명시가 없는데 총회 규칙이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몇조에 이런 ‘공고문’을 교회 외벽이나 내부에 부착하라는 어떤 규칙의 몇 조항인지요?

질의 3) 법률 사전을 살핀 바, ‘취소와 철회’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이 법률상 취소이고,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 법률상 철회라 합니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6월 15일경 해석을 할 때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회 소집통지서와 거기에 첨부된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을 전 노회원들에게 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기노회때 노회장과 노회 임원회가 이를 ‘없애 버리고, 번복하고’ 김순임 목사가 발언권 얻어서 항의하자 취소(철회) 되었다며 전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사실인바, 이를 참고하여 총회 규칙부는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가 낸 총회 규칙부 질의와 해석(총회 행정재무처-6881호(2023.6.15.)’에서 [이 안건을 재론하거나 재 상정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제33회 정기회 노회 절차 보고에 ‘신안건 제출’도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 유효(有效)인지요? 무효(無效)인지요?(만약 무효라면 그 관련 증빙과 근거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질의 4) 제33회 땅끝노회 소집통지서와 첨부의 헌의안건(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실제로 취소(철회)된 상황과 당시 노회 절차보고에 ‘신안건 제출(서면을 의미)’을 이미 노회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의 재론동의 절차 없이는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의 전에 가령, 김순임 목사에게 반대 발언권을 주었다 할지라도〈반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3회 땅끝노회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이 철회(취소)한 상황에서 ‘재론동의 절차 없이’ 신안건을 받아서 결의한 일련의 처리나, 만약 노회장이나는, 혹은 우리는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을 철회(취소) 한 사실이 없다라

고 한다면, 오히려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헌의 안건에 계속 살아있는 안건이므로 노회장은 '신안건'을 우종탁 목사란 분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신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땅끝노회장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위배한 결정인지? 부적합한 결정인지요?

2)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 건(2023.7.28.)"

해석 : 질의 1), 2) 보통 치리회의 부서 결의에 의거한 시행은 부서장, 위원장 명의로 시행되므로 각 치리회의 부서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부서 결의의 시행은 시찰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질의 3), 4) "총회 규칙" 제 10조 제5항, 제8항에 근거하여 준용한다면 실행, 전문, 자문 위원 위촉은 노회(노회 폐회중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위촉, 선임이 가능하다.

질의 5), 6), 7), 8)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2항, 제 3항에 근거하여 카톡 문자로 진행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사항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 내용 : 관련 근거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87조 2항,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11조 2항, 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미비사항)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2023.07.31.까지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해 부서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2) 노회의 부·위원장이 노회에 질의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경우, 시찰회 경유를 해야만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3)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서울동남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실행(자문)위원 위촉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상회 규정에 어긋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4) 위 질의 3에서 만약 상회 규정에 어긋난다면, 서울동남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실행(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총회 규정에 위배가 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5) 서울동남노회 재정부는 노회 임원회로부터 2022. 12.부터 2023. 03.까지 총 6건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심의를 요청받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부원들의 동의하에 재정부의 카톡방에서 카톡 회의를 통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 회의의 적법 여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6) 위 질의 5에서 불법이라면 이 결의를 본회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7) 위 질의 5에서 불법이고,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8) 위 질의 5에서 불법이지만, 위 질의 6에서 취소시킬 수 없다면, 카톡 회의에서 결의하여 그 근거로 임원회에서 기지출한 예비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3) 서울동남노회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제 규정 질의 건(2023.7.28.)”

해석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 내용 : 서울동남노회는 2023.4.25.09시부터 2023.4.25.18시까지 ‘미래를사는교회’서 제84회기 정기회를 하기로 하고 2023.4.25.09시에 개회를 하였습니다. 목사안수식을 마친 2023.4.25.15시 30분경, 회의 진행 시, 일부 회원들이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발언 후, 아래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① 정회해야 합니다. ② 임시노회를 해야 합니다. ③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④ 정회 후 속개해야 합니다. ⑤ 속개하기로 하고 폐회 동의합니다. ⑥ 모든 것을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⑦ 의결정족수 미달이므로 지금은 ‘임원회 위임’ 등 결의 자체가 안됩니다.이런 혼란 속에 서울동남노회 제84회기 의장은 일체의 결의나 모일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은 채 “정회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2023.04.27.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속회를 한다고 하였다가 ‘미래를사는교회’에서 2023.4.28.13시에 속회를 한다는 통지문을 언권위원들을 제외한 노회원들에게 2023.04.27. 문자로 발송하였고, 통지문대로 2023.4.28.13시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 중, 모 노회원이 이 회의는 불법이라고 발언하자 서울동남노회 규칙부장은 합법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 노호원의 “지금부터의 결의와 보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와 또 다른 노회원의 제청이 있었으며, 이에 의장이 가부를 물을 때, 모 노회원이 “아니오”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오’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거수로 표결을 강행하여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의 1) 서울동남노회가 2023.4.28.13시에 개최한 회의가 속회가 맞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2) 만약 속회가 아니라면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3) 질의 2에서 ‘속회’가 아닌 ‘임시회’라면 ‘임시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4) 질의 1의 회의에서 언권위원들에 대한 회의 개최 사실 미통지는 합법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5) ‘아니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듣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대해 위배 여부를 해석해 주십시오.

질의 6) 만약 질의 5에서 ‘위배’가 된다면 그 안건의 효력 여부에 대해 해석해 주십시오.

4) 여수노회장 천대형 목사가 제출한 “여노 제51-02호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 총회 임원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질의(2024.1.4.)”

해석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4조 4항 가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기간은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 선거종료까지이며, 이 기간에 규정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년 3월 1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선거관리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 총회 임원선거 제 2조 4항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일(총회개회전 60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전에 모 예비후보자가 장로들과 참모들을 대동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적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 제1인사위원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440 / 총회본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신임 총무 임기 관련 규칙 질의(2024.1.15.)”

해석 : 질의 1) 총회 규칙 제 35조에 근거하여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 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가 아니고,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로 한다.

질의 2) 총회 규칙 제 35조 1항 1), 4)호 및 (구)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시 총회본부 5개 처 기구개혁이 완료되었으므로 총회본부 5개 처 총무의 임기 중 사임에 따른 후임 신임 총무의 임기 개시일은 총회임원회의 총무 인준일(총회장 임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질의 :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는 제 104회기시 개정 총회 규칙 제 34조에 근 거하여 제 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인준하여 5개처 기구 개혁이 시행되는 제 105회 총회시 인준 보고되면서 임기가 제 105회 총회(2020. 9. 24.)부터 제 109회 총회(2024. 9. 23.)까지로 정해져서 통보되었습니다(붙임 1). 이에 대한 규칙해석도 제 104회기에 있었습니다(붙임 2).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전 총무 홍경환 목사의 잔여임기인지 아니면 신임총무로서 보장된 4년 임기 인지 여부

질의 2) 해외·다문화선교처 전 총무 홍경환 목사 사임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신임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원회의 인준일로부터 4년인지 제 109회 총회 인준 보고일로부터 4년 인지 여부

6)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115 / 질의 관련 답변 요청(2024.1.16.)”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22조(항존직)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으로 은퇴자는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이고 회장직은 공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회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전에 교회 항존직 정년(만 70세)이 도래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장을 자동승계하는 수석부회장은 교회 항존직 정년 (만 70세) 도래 2년 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수석부회장에 선출될 수 있다.

질의 내용 :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인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에서 보내온 공문 “본회 임원 정년에 대한 질의 건(전국아연 제68-85호, 2024.01.04.)” 관련입니다.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정관에는 임기와 관련하여 은퇴 일자(12월31일)와 회기에 따른 임기(2월 24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훈련처 산하기관입니다.

본회 수석부회장은 본회 회칙 제26조 2, 2) 항에 협의회별 순번에 따라 협의회 내에서 단독 혹 경선을 통해 결정,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OO협의회 내부 경선 결과 후보는 OO노회 OO교회 OOO장로(1955년 10월 20일생)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시 본 인준 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과정 중 수석부회장 (정년)자격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가 해당 협의회에 접수되어, 자격 문제 종결 협조 요청 공문이 본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회 역시 총회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본회 지도기관인 교육·훈련처에 질의합니다.

참고 1.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수석부회장

2025년 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회장

2026년 2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5일까지 직전회장

참고 2. 본회 회칙 :

제1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26조 (공천위원회 및 임원 자격)

2. 임원

1) 회장 :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협의회에서 재추천하여 총회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 : 지 노회연합회장과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협의회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부칙 제 4조 (승인) 본 회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의 추인을 받는다.

3. 재판국

가. 재판 사건 22건을 판결(결정) 선고하다.

1)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6-01호,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송인기 안수집사 외 3인이 서울서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소송)-부전지 포함" 판결

주문 : (1) 제 100회기 서울서노회가 허락한 희성교회 박태웅 담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무효로 한다.

(2) 박태웅 목사는 희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 예총재판국 재심 제 107-06호,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상근 장로 외 3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오상근 장로 외 3인이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4-10호)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판결

주문 : (1) 원심(예총재판국 사건 제 104-10호)을 파기한다.

(2)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을 무효로 한다.

(3) 조인훈 목사의 새봉천교회 목사 위임을 무효로 한다.

(4)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원심판결의 표시(예총재판국 사건 제 104-10호) 1.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3) 예총재판국 재심 제 107-07호,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송인기 안수집사 외 3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송인기 안수집사 외 3인이 희성교회 민병화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5-15호)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결정

주문 : (1) 피고소인(피고발인) 박성태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 제 6항, 제 9항, 제 13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피고소인(피고발인) 민병화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 제 5항, 제 6항, 제 9항, 제 13항, 제 14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 중 200만원은 서울서노회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100만원은 재심청구인에게 반환한다.

4) 예총재판국 제 107-23호, 함해노회 원당반석교회 오재열 장로 외 2인이 함해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장" 판결

주문 : (1)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5) 예총재판국 제 107-30호,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민병우 장로 외 8인이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김건환 은퇴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 판결

주문 : (1)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민병우 장로 외 8인이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김건환 은퇴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3년 11월 4일 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6)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09호, 군산노회 동신교회 김대현 목사가 동신교회 배평옥 권사 외 1인(장인숙 권사)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동신교회 제직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판결

주문 : (1) 이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09호)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7)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03호,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 외 3인이 서울동남노회장 김용석 목사 외 3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장" 결정

주문 : (1)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김용식, 윤호식, 남삼욱, 기공서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 51조, 헌법 정치 제 73조 제 3항, 헌법 정치 제 74조 제 1항 및 제 3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 할 것을 명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 중 100만원은 재항고인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서울동남노회로 송금한다.

8)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29호, 서울동남노회 재정부장 박신현 장로가 서울동남노회원 5인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장이 반려한 건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 판결

주문 : (1) 서울동남노회 재정부장 박신현 장로가 서울동남노회원 안대환 목사, 이대희 목사, 김경섭 목사, 김성곤 목사, 김주안 장로, 허정익 장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장이 반려한 건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건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3년 12월 7일 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9)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8-01호 관련,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민병우 장로 외 9인이 서울서북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과 관련하여 김건환 은퇴목사 및 변호인 남삼욱 목사가 제출한 "제3자 소송참가자 신청서" 결정

주문 : 이 사건(예총재판국 제 108-01호)의 제3자의 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10)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8-05호, 울산노회 김성렬 목사 외 1인이 울산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판결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1)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7-08호, 유호 씨 외 19인이 제출한 “항소장(2023.8.25.)”[서울관악노회 드림교회 김승한 목사가 유호 씨 외 19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부전)’(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1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판결

주문 : (1)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2)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1호,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5-0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판결

주문 :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13)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4호,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이지원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상용 장로 외 3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2020관악새봉천위탁 제47-105호’(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4-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판결

주문 : (1) 이 사건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4)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26호, 전주노회 연세교회 조희욱 안수집사 외 1인이 전주노회 연세교회 윤기환 장로 외 3인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장” 결정

주문 : (1)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 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5)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8-08호, 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이 대전서노회 서대전중앙교회 김상혁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장” 판결

주문 : (1) 이 사건 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이 대전서노회 서대전중앙교회 김상혁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장”은 기각한다.

(2) 이 사건의 소송은 2023년 12월 26일 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16)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6호, 오재열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함해노회 원당반석교회 오재열 장로 외 2인이 함해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장’(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23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결정

주문 : 신청인의 총회 재판국원(총회 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장) 이석범 목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17)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1호,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구서”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5-0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결정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2호,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6-1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결정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3호,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이종운 목사가 제출한 “재

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제3자소송참가인 윤상용 장로 외 2인이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소)장(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4-06호)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결정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 108-04호,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이지원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상용 장로 외 3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2020관악새봉천위탁 제47-105호"(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4-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결정

주문 : (1) 신청인의 총회 재판국원(총회 재판국장) 윤석민 목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총회 재판국원(총회 재판국 행정쟁송재판분과장) 이석범 목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인의 총회 재판국원(총회 재판국 권징재판분과장) 신현주 목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18)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송인기 안수집사 외 2인이 희성교회 당회장 박태웅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장"(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10호)

주문 : (1) 서울서노회 재판국 사건번호 2022-제107회기 01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2022년 6월 19일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장로피택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19) 서울관악노회 드림교회 당회장 김승한 목사가 서울관악노회 이종운 목사, 이재학 장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부전)(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15호)

주문 : (1)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이종운 목사를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5항, 제 6항, 제 8항, 제9항, 제12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2)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 이재학 장로를 총회 헌법 권징 제 3조 제 5항, 제 6항, 제9항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 중 200만원은 서울관악노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0) 전주노회 연세교회 박청일 목사가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장"(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24호)

주문 : (1) 상고인 박청일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1) 평양노회 비전교회 이현오 집사 외 4인이 평양노회 비전교회 김명일 장로 외 1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장"(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7-25호 관련 재판국원 기피신청)

주문 : (1) 신청인의 총회 재판국원(총회 행정쟁송재판분과장) 이석범 목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22)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민병우 장로 외 8인이 서울서북노회 제일영광교회 김건환 은퇴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8-01호)

주문 : (1) 서울서북노회 재판국 '사건번호 서북노재 제 80-1호'의 판결을 파기한다.

(2) 서울서북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사건번호 서북노재 제 80-1호'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

(3) 총회 판결 사건번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 105-18호(2022.3.15.) 및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6-1호(2022.5.17.) 판결의 유효함을 확인한다.

4. 헌법위원회

가. 헌법질의 19건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총회임원회의 해석 채택 후 통지하다.

1) 강원노회장 이주형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40-024호 / 헌법질의(2023.10.5.)"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5) 헌법권징 제129조의 "재심재판국"의 단어는 재심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라는 근거가 아닌 "재심을 하는 원심재판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항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청구를 원심치리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원심치리회는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은 현재 재판국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국원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 교체를 요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동조 제8항에 근거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토록 되어있다. 즉 원심재판국이 재심을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구법에 있다가 삭제된 재심재판국 및 특별재심재판국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다. 따라서 헌법권징 제124조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라는 조항 개정이 없고,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제107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해석은 유효하다.

질의2,3,4) 총회 결의로 존속 청원을 하였다고 해도 총회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법아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 및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재심 관련한 제107회기 해석과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8회기 시에도 이 해석과 답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1) "행정.재무처-6382 / 헌법해석 보고(2023.6.5.)"로 제출한 헌법해석 보고의 1번(서울동노회장의 질의)은 질의 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이 아니므로 질의 5개 항 전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해석을 요청하니 재심의하여 해석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장(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총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조문은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헌법 제 2편 권징 제 124조(재심의 관할)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구성 결의한 재심재판국 15인 국원중에 총회재판국 3년조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 적용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현재 총회 재판국과는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 질의1-1) 헌법권징 제124조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재심재판국이 재심판결을 할 수 없다.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다. 따라서 총회 결의로 법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질의1-3) 헌법권징 제128조 제4항에 근거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질의1-4) 총회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질의1-5) 총회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질의2) 총회 헌법 제87조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은 총회 헌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의 있거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총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정치 제87조는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질의3)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은 총회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헌법권징 제11조의1 제2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질의4) 현재 총회 재판국과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 총회헌법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없다.

질의2) 제108회기 총회 시에 재심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상정 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법률이 부존한 가운데서 헌법권징 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총회결의로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존속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재심재판국 존속 청원을 청구한 자가 헌법권징 제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재심재판국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전체국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존속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재심재판국 존속 결정이 나기 전 존속청원자가 헌법권징 제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현재 임원들을 그대로 존속 시킬 목적으로 전체국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직결정을 하여 조직보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현재 우리교단 헌법은 재심관할이 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8회기 시에 조직된 재심재판국원들은 제108회기 시에 조직된 원심재판국원들(총회재판국원)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재판국 조직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2) 충청노회장 방승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8-48호 / 기관목사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의(2023.10.4.)"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28조 제5항에 근거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는 목사이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청빙토록 되어 있는 기관목사에 대해서는 청빙한 해당기관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회에서 파송하여 그간 노회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법등을 참고할 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산하기관인 일신학원에 교목으로 파송한 기관목사의 퇴직금(2003년~2023년)을 노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노회에서는 매년 일신학원에서 청원한 교목파송비(생활비) 년 지급액만 채정하여 전액 일신학원에 지급하였습니다. 때문에 노회에서는 기관목사의 퇴직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회에서 교목으로 파송하였기에 기관목사의 퇴직금을 노회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다른 노회에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서노회장 최기원 목사가 제출한 "전서 제102-6호 / 전서노회 줄포교회 전상기 은퇴장로 헌법해석을 위한 질의 건(2023.10.26.)"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3) 헌법정치 제44조에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토록 규정되어 있다. 공동의회는 헌법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따라서 공동의회 소집은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질의 외 노회 부연설명을 참고할 때 해당 교회는 시무장로가 1인도 없는 상황으로, 헌법정치 제65조에 근거 폐 당회가 되기 전(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노회부터 폐 당회가 되고)이라도,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 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 제16조10제5항, 제22조를 준용하여 제직회가 공동의회을 소집하여 원로장로 추대 결의를 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는 회기의 변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 그러나 당회가 기존 결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절차에 따라 변경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당회가 없으므로 제직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질의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서노회 소속 줄포교회는 지난 2022년 11월 27일 당회에서 "원로장로 추대를 안 하기로 결정, 공동의회 상정 안 하기로 하다"라고 줄포교회 당회는 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초에 담임 목사님이 "회기가 바뀌었으니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며 동 2월 12일 제직회의 결의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의했고 2월 26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은퇴한 000 장로를 원로장로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줄포교회 은퇴 장로 전상기)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나이다.

질의1) 당회 65조와 제6장 36조 원로장로 2항, 제90조 공동의회 제2항에 의거 당회의 결의 없이 모인 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한지요?

질의2) 제13장 제90조 5항 공동의회 2항에 의거 제직회에서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요?

질의3) 이미 결정한 당회 결의를 "회기가 바뀌었으니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이 존재하는지요?

※노회임원회의 부연 설명

1. 부연 설명

1) 2022년 11월 27일 당회
당회원 : 당회장, 시무장로 2인, 은퇴장로1인
2) 2022년 12월 31일 (시무장로 1인 은퇴)
당회원 : 당회장, 시무장로 1인, 은퇴장로 2인
3) 2023년 3월 5일
제직회에서 최○○ 장로를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의하다.
5) 2023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최○○ 장로 원로장로 추대 결의

4) 서울관악노회장 성우기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55-20호 / 이동교회 비씨디 담임목사가 삼동교회 담임목사도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023.10.31.)"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담임목사는 헌법정치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근거 각 교회 당회의 결의(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무하는 목사이다. 따라서 목사1인이 1개 교회 담임목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우리교단 총회 헌법상 이동교회 비씨디 담임목사가 삼동교회 담임목사도 될 수 있는지 여부(1인이 2개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동남노회장 김주안 장로가 제출한 "서울동남 84-033호 / 노회 감사위원회의 기소의뢰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2023.6.20.)"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노회 감사위원회는 헌법권징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기소의뢰 할 수 있다.

질의내용: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 제54조의2[기소의뢰],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 제54조의3[고소(발) 및 기소의뢰 제한, 3. 위 관련 근거 '가'에 의하면 기소의뢰는 치리회장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되므로 감사위원장이 기소위원회에 직접 기소의뢰하는 것이 현행법상 온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질의(접수번호 84-027호 3.)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아 래 -

1. 헌법 제3편 권징 제1장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 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 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2. 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1절 고소 및 고발 제49조 [고소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

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3. 시행규칙 제3장 권징 제43조 [재판비용] 4.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9.20, 2014.9.25., 2022.9.21.]
⑦ 교회,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회가 치리회의 각부와 위원회 및 총회산하기관의 재정 및 행정 비리의 죄과 사실에 대하여 기소의뢰 혹은 고소·고발을 할 때
4. 시행규칙 제71조 [상소] 4.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부정이나 비리와 감사위원회의 고소(혹은 고발, 기소의뢰) 건에 대한 항소(상고) 건은 노회 기소위원장이 출석하여 재판시에 변론한다. [신설 개정 2014.9.25.]
5. 시행규칙 제3장 권징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책벌(권징) 적용과 범위] 6. 각 치리회나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서의 부정이나 재정 비리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장 혹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이사회, 치리회의 감사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할 수 있다. [신설 개정 2014.9.25., 2022.9.21]
6. 제84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2023년 4월 25일) 감사위원회 보고시 기소의뢰를 보고하여 대회에서 허락을 받음.

질의1) 위 근거로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 감사위원회가 직접 기소의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이 옳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동남노회장 재정부장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서동재 20230530-2 / 헌법 및 제 규정질의 건(2023.6.19.)"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제54조의 3에 근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고발 및 기소의뢰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소여부는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질의2,3) 헌법권징 제54조의2의 근거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감사위원회는 헌법권징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기소의뢰 할 수 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은 헌법 사항이 아니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제 54조의 3[고소(발) 및 기소의뢰 제한]의 규정에서 노회 재정부장의 업무상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 행위의 판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 54조의 2[기소의뢰]의 규정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외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기소위원회에 직접 기소의뢰를 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3) 위 질의2에서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절차상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를 직접 못한다면, 해당 치리회장에게 어떻게 기소의뢰를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에서 시정요구 시, 피 감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음은 적법한 것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7) 서울동남노회 재정부장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서동재 20230620-1 / 헌법 및 제 규정 질의 건

(2023.6.27.)"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제54조의 3에 근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고발 및 기소의뢰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소여부는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질의2,3) 헌법권징 제54조의2의 근거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감사위원회는 헌법권징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기소의뢰 할 수 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은 헌법 사항이 아니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5,6) 제108회기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61조(2023.9.22.)가 개정(삭제) 됨에 따라, 기소위원회 임기는 헌법권징 제56조 제3항 근거 2년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제 54조의 3[고소(발) 및 기소의뢰 제한]의 규정에서 노회 재정부장의 업무상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 행위의 판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 54조의 2[기소의뢰]의 규정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외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기소위원회에 직접 기소의뢰를 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3) 위 질의2에서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절차상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를 직접 못한다면, 해당 치리회장에게 어떻게 기소의뢰를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에서 시정요구 시, 피 감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음은 적법한 것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5) 서울동남노회는 노회규칙에 기소위원회의 임기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이 없어 현재 3년차 기소위원으로 있는바, 총회 헌법 권징 제 56조 3항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 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6) 위 질의5에서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경우, 노회원이 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 후, 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치리회장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죄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8) 서울관악노회장 이봉수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54-94호 / 헌법 질의 회신 요청(2023.7.12.)"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및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질의

질의1-1) 더처치교회를 사임하고 새봉천교회에 이명하고자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제8항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이명해야 한다.

질의1-2) 교인이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록하였을 경우 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2조에 근거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이 되거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본 교단 소속 타 교회를 사임하고 이명한 장로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이명해야 한다.

질의1-3) 헌법권징 제107조제1항에 근거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을 경우 상고기간 도과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회 재판국에 대한 고지여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소송은 헌법권징 제146조에 근거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78조에 근거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질의2) 자의사임 및 적법한 당회 표결 질의

질의2-1) 헌법정치제43조에 근거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으나, 사임서 제출 없이 당회가 사임을 결의할 수 없다. 또한 이명절차를 위반해서 시무장로가 되었을 경우 당회 결의권은 없다.

질의3) 항소기각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 질의

질의3-1) 헌법권징제98조에 근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헌법권징제9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질의3-2) 헌법권징 제107조제1항에 근거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을 경우 상고기간 도과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회 재판국에 대한 고지여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① 2015년 8월 30일 더처치는 봉천교회에서 분립하였고, 분립장로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강해성 장로는 2016년 4월 10일 더처치 장로로 취임하였습니다. ② 강해성은 2016년 10월 16일 더처치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명증명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당회에서는 강해성을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성광은 2016년 8월 18일 이명증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윤상용은 2016년 7월 2일 이명증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③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재판국에서는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④ 2019년 9월 15일 새봉천교회 당회에서는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를 당회결의로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 정치 제1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하였으므로 2017년 11월 5일 당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⑤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에서는 “원심 (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⑥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이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 무효소송(2019가합566883)을 제기한였는 바, 2020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성광 등 원고에게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회의 회의록과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또는 장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0년 5월 26일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이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은 새봉천교회의 장로나 교인은 아니었으며”고 하였습니다.

질의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및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질의

질의1-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 정치 제43조 제1항에 “자의사임은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 제47조 제1항에 “자의사임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당회결의에도 시무복귀결의라고 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판결문(기초사실)에도 장로의 복직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직이 성립하려면 당회에 자의사임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당회가 허락한 당회록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른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조건인데, 강해성은 첫째, 새봉천교회 당회에 제출한 자의사임서가 없고, 자의사임을 허락한 당회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서(2018가합 51600)를 보면 2016년 4월 10일 더처치 장로로 취임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새봉천교회를 떠났다는 의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 566883)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이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은 새봉천교회의 장로나 교인은 아니었으며”라고 새봉천교회 장로나 교인이 아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을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한 당회결의는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1-2)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 강해성은 이명증명서를 더처치에서 새봉천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입니다. 강해성은 새봉천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강해성의 자격을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광, 윤상용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 위반)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①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과 ②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③당회의 결의와 ④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⑤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실정법 위반) 그런데, 새봉천교회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의 절차를 위반하고, 당회결의만으로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을 시무장로로 결의하여 實定法을 위반하였습니다. (절대적 무효) 또한, 이는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280만 성도가 이러한 질서를 지키자고 한 약속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였으니, 당연히 무효사유인 것이다.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총회에서 규정한 규정(질서)를 새봉천교회 당회와 강해서, 이성광, 윤상용이 이를 배제하였으니 당연히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 강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은 효력을 무효화시켜 강제하는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11월 5일의 당회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능력 부존재) 2017년 11월 5일의 당회결의로 권리능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의 절차를 거쳐야 권리능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2017년 11월 5일의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1-3) (2017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원인무효) :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은 총회재판국에 제3자소송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첫째, 상고장은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징 제107조 제1항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 무효사유입니다. (둘째,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권징 제34조 제1항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상고기관은 불변기간이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없는데, 총회재판국은 동 사건을 불법으로 접수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려야 한다. 고 하면서,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오균섭 장로에 관한 건은 서울관악노회 판결로 확정되었고, 제3자소송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제3자소송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들은 자기의 권리 주장이 아닌 오균섭 장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제3자소송의 원리를 위반하였는데도 총회재판국에서는 오균섭 장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재판을 하였습니다. 오균섭 장로는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원고(오균섭 장로), 피고(당회장 조인훈 목사)가 총회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기간 경과(2019년 6월 2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정당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미리 당사자(원고,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3자들의 상고장을 접수하는 등 제3자 소송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권징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제1항 『헌법 권징 제14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당사자인 원고 오균섭 장로, 피고 조인훈 목사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고 상고장을 접수하는 등 제3자 소송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강행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78조 제1항을 무시하고 원고, 피고의 의견을 미리(접수하기 전) 듣지 않고 제3자들의 소장을 접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80조 (행정쟁송과 소제기) 제2항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소송 참가자들의 소장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권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처분을 하였어야 할 사안으로서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판결은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자의사임 및 적법한 당회 표결 질의

[사실관계] 2015년 11월 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가 되었는데, ① 2015년 10월 22일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에서는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시무정지 3년에 처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오균섭 장로는 항송, 상고를 하여 ② 2017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에서는 피고인 오균섭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③ 2018년 2월 4일 새봉천교회 당회는 오균섭에 대하여 자의사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④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새봉천교회 당회가 2018년 2월 4일 오균섭 장로의 새봉천교회 시무사임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⑤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에서는 "원심(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⑥ 2017년 12월 19일 새봉천교회 당회는 오균섭 장로 시무사임에 대하여 당시 당회시에 오균섭 장로가 구두사임이나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백남주 장로와 오균섭 장로가 고소장과 기소장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 아닌지를 놓고 난상토론 과정속에 윤상용 장로 동의로 표결을 강행처리하여 가결시켰습니다. 2018년 2월 4일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정치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당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차 투표에서는 오균섭 장로를 제외하고 토표하였습니다. 유효토표 10표 중 찬성5, 반대3, 기권 2표로 부결되어야 마땅함에도 당회장을 제외하고 유효투표를 착오로 9표로 계산하여 가결 되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새봉천교회 당회는 오균섭 장로 자의사임 결의는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였음을 이유로 취소결의를 하였습니다.

질의2-1) 자의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자의사임은 투표대상도 아니며, 당회원도 아닌 강해성, 윤상용, 이성광이 표결한 2018년 2월 4일의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정치 제43좋 제1항을 위반한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 항소기각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 질의

[사실관계] ① 2020년 11월 30일 새봉천교회 재판국에서는 백남주를 면직/출교 판결을 하였습니다. ② 2021년 1월 28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는 백남주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2021.1.1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관악노회장은 백남주에 대하여 판결집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는 백남주에 대하여 판결확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③ 2022년 8월 16일 총회재판국에서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백남주 장로 면직/출교는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④ 2023년 2월 27일 총회재심재판국에서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백남주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질의3-1) 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836 판결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남주 사건의 경우, 2021년 1월 28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항소기각 결정시 백남주 사건은 종료되었다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2) 권징 제94를 준용하는 권징 제107조 제1항에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남주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회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상고의 방식을 위배하였고, 상고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대법원 1981.10.13. 선고81누230판결에,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준수여부 판정시기는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라고 판시하면서,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총회재판국 판결은 원천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9) 서울동남노회 재정부장 박신현 장로가 제출한 "서동재 20230702-3 / 헌법 및 제 규정 질의 건(2023.7.28.)"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제54조의 3에 근거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고발 및 기소의뢰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소여부는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질의2,3) 헌법권징 제54조의2의 근거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또한 노회 감사위원회는 헌법권징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기소의뢰 할 수 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은 헌법 사항이 아니므로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5,6) 제108회기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61조(2023.9.22.)가 개정(삭제) 됨에 따라, 기소위원회 임기는 헌법권징 제56조 제3항 근거 2년으로 한다.

질의7) 직무유기는 해석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노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권징 제 54조의 3[고소(발) 및 기소의뢰 제한]의 규정에서 노회 재정부장의 업무상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 행위의 판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2) 헌법 권징 제 54조의 2[기소의뢰]의 규정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외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기소위원회에 직접 기소의뢰를 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3) 위 질의2에서 수습전권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이 절차상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를 직접 못한다면, 해당 치리회장에게 어떻게 기소의뢰를 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 감사규정'에서 시정요구 시, 피 감사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음은 적법한 것인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5) 서울동남노회는 노회규칙에 기소위원회의 임기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이 없어 현재 3년차 기소위원으로 있는바, 총회 헌법 권징 제 56조 3항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기는 노회 임원을 선출한 정기회를 기준하여 2년으로 한다.'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6) 위 질의5에서 총회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경우 위배가 되지 않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7) 질의 5에서 총회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경우, 노회원이 노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여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 후, 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치리회장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의 죄과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10) 전북동노회 용평교회 당회장 전인수목사가 제출한 "가접수 제108-29호 / 총회헌법 질의서 (2023.9.26.)"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개인질의이나 부전절차가 완비된 안건**).

해석 : 질의1,2) 헌법정치 제73조에 근거하여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고 헌법 정치 제82조 제3항에 근거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그러나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었다고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정치 제87조 제5항에 근거 총회에서 폐지를 결의해야 한다. 따라서 노회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노회라고 해도 총회에서 노회 폐지가 결의되지 않았다면 해당 노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질의3,4) 헌법 정치 제65조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되며, 헌법시행규정 제31조에 근거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노회에서 대상교회 시무장로 수와 노회 보고 여부를 확인 한 후 이에 근거하여 당회 폐지, 상회 총대권, 임원후보등록 유, 무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설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된 노회임원들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질의2) 노회설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지 만 2년이 지나면 노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동으

로 폐지되는지요? 아니면 노회폐지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질의3) 총회 헌법에 의하면 미조직교회 장로는 노회총대 자격이 없는데, 우리노회는 설립된 이래 30년 이상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미조직교회 장로님들도 노회총대로 인정해 왔습니다. 미조직교회 장로님들도 그동안 노회에서 임원으로 봉사도 하고, 총회 총대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원 중에서 노회 중 갑자기 누군가가 법대로 합시다! 하면 무조건 즉시로 총회 헌법대로 시행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회원들의 전체의견이 중요한지요?

질의4) 미조직교회 장로가 봄노회에서 총대로 선정되어 며칠 전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정기총회에 임원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출마해도 되는지요?

11) 서울관악노회장 성우기 장로가 제출한 "관악 제55-37호 / 헌법해석 회신 요청(2023.11.28.)"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및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질의

질의1-1) 더처치교회를 사임하고 새봉천교회에 이명하고자 하면 헌법시행규정 제26조제8항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이명해야 한다.

질의1-2) 교인이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록하였을 경우 교인이 되며 헌법시행규정 제12조에 근거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이 되거나 직분을 맡을 수 있다. 본 교단 소속 타 교회를 사임하고 이명한 장로의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이명해야 한다.

질의1-3) 헌법권징 제107조제1항에 근거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을 경우 상고기간 도과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회재판국에 대한 고지여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소송은 헌법권징제146조에 근거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78조에 근거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질의2) 자의사임 및 적법한 당회 표결 질의

질의2-1) 헌법정치제43조에 근거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으나, 사임서 제출 없이 당회가 사임을 결의할 수 없다. 또한 이명절차를 위반해서 시무장로가 되었을 경우 당회 결의권은 없다.

질의3) 항소기각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 질의

질의3-1) 헌법권징제98조에 근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헌법권징제9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질의3-2) 헌법권징 제107조제1항에 근거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재판국에 제출되었을 경우 상고기간 도과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노회재판국에 대한 고지여부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① 2015년 8월 30일 더처치는 봉천교회에서 분립하였고, 분립장로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강해성 장로는 2016년 4월 10일 더처치 장로로 취임하였습니다. ② 강해성은 2016년 10월 16일 더처치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명증명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당회에서는 강해성을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성광은 2016년 8월 18일 이명증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윤상용은 2016년 7월 2일 이명증서를 새봉천교회에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5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를 하였습니다. ③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재판국에서는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④ 2019년 9월 15일 새봉천교회 당회에서는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장로, 이성광 장로, 윤상용 장로를 당회결의로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 정치 제17조 및 헌법시행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하였으므로 2017년 11월 5일 당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⑤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에서는 "원심 (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⑥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이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 무효소송(2019가합566883)을 제기한였는 바, 2020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성광 등 원고에게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회의 회의록과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또는 장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0년 5월 26일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이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은 새봉천교회의 장로나 교인은 아니었으며"고 하였습니다.

질의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및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질의

질의1-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귀하는 절차) : 정치 제43조 제1항에 "자의사임은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 제47조 제1항에 "자의사임을 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 당회결의에도 시무복귀결의라고 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판결문(기초사실)에도 장로의 복직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직이 성립하려면 당회에 자의사임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당회가 허락한 당회록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른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조건인데, 강해성은 첫째, 새봉천교회 당회에 제출한 자의사임서가 없고, 자의사임을 허락한 당회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조회서(2018가합 51600)를 보면 2016년 4월 10일 더처치 장로로 취임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새봉천교회를 떠났다는 의미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 566883)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2015년 11월 1일 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이 작성할 당시에는 원고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은 새봉천교회의 장로나 교인은 아니었으며"라고 새봉천교회 장로나 교인이 아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5일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을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복귀결의한 당회결의는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1-2)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는 절차) : 강해성은 이명증명서를 더처치에서 새봉천교회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입니다. 강해성은 새봉천교회 교인도 아니고, 장로도 될 수 없습니다. 강해성의 자격을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광, 윤상용은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 위반)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①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과 ②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③당회의 결의와 ④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신임하며 ⑤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 취임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실정법 위반) 그런데, 새봉천교회 당회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의 절차를 위반하고, 당회결의만으로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을 시무장로로 결의하여 實定法을 위반하였습니다. (절대적 무효) 또한, 이는 절대적 무효사유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280만 성도가 이러한 질서를 지키자고 한 약속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였으니, 당연히 무효사유인 것이다.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마음대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총회에서 규정한 규정(질서)를 새봉천교회 당회와 강해서, 이성광, 윤상용이 이를 배제하였으니 당연히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위반) 강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은 효력을 무효화시켜 강제하는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11월 5일의 당회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능력 부존재) 2017년 11월 5일의 당회결의로 권리능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명장로가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8항의 절차를 거쳐야 권리능력이 발생합니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2017년 11월 5일의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1-3) (2017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원인무효) : 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은 총회재판국에 제3자소송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첫째, 상고장은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징 제107조 제1항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총회재판국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 무효사유입니다. (둘째,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권징 제34조 제1항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상고기관은 불변기간이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총회재판국에 상고 할 수 없는데, 총회재판국은 동 사건을 불법으로 접

수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려야 한다. 고 하면서,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오균섭 장로에 관한 건은 서울관악노회 판결로 확정되었고, 제3자소송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제3자소송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들은 자기의 권리 주장이 아닌 오균섭 장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제3자소송의 원리를 위반하였는데도 총회재판국에서는 오균섭 장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재판을 하였습니다. 오균섭 장로는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에서 승소하였고, 원고(오균섭 장로), 피고(당회장 조인훈 목사)가 총회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기간 경과(2019년 6월 2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는 정당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 미리 당사자(원고,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3자들의 상고장을 접수하는 등 제3자 소송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권징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제1항 『헌법 권징 제14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있어서 재판국이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당사자인 원고 오균섭 장로, 피고 조인훈 목사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고 상고장을 접수하는 등 제3자 소송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강행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78조 제1항을 무시하고 원고, 피고의 의견을 미리(접수하기 전) 듣지 않고 제3자들의 소장을 접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80조 (행정쟁송과 소제기) 제2항 “소장이 제출되면 재판국장은 직권으로써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만약 이들을 흠결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명령으로써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소송 참가자들의 소장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권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각하처분을 하였어야 할 사안으로서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 판결은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자의사임 및 적법한 당회 표결 질의

[사실관계] 2015년 11월 5일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가 되었는데, ① 2015년 10월 22일 봉천교회 당회재판국에서는 오균섭 장로에 대하여 시무정지 3년에 처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오균섭 장로는 항송, 상고를 하여 ② 2017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에서는 피고인 오균섭에 대한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③ 2018년 2월 4일 새봉천교

회 당회는 오균섭에 대하여 자의사임 결의를 하였습니다. ④ 2019년 5월 31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은 “새봉천교회 당회가 2018년 2월 4일 오균섭 장로의 새봉천교회 시무사임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⑤ 2019년 12월 10일 총회재판국에서는 “원심(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⑥ 2017년 12월 19일 새봉천교회 당회는 오균섭 장로 시무사임에 대하여 당시 당회시에 오균섭 장로가 구두사임이나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백남주 장로와 오균섭 장로가 고소장과 기소장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지 아닌지를 놓고 난상토론 과정속에 윤상용 장로 동의로 표결을 강행처리하여 가결시켰습니다. 2018년 2월 4일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정치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아니라 당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차 투표에서는 오균섭 장로를 제외하고 토표하였습니다. 유효토표 10표 중 찬성5, 반대3, 기권 2표로 부결되어야 마땅함에도 당회장을 제외하고 유효투표를 착오로 9표로 계산하여 가결 되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새봉천교회 당회는 오균섭 장로 자의사임 결의는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였음을 이유로 취소결의를 하였습니다.

질의2-1) 자의사임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자의사임은 투표대상도 아니며, 당회원도 아닌 강해성, 윤상용, 이성광이 표결한 2018년 2월 4일의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정치 제43좋 제1항을 위반한 절대적 무효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 항소기각결정 및 상고기간 도과 질의

[사실관계] ① 2020년 11월 30일 새봉천교회 재판국에서는 백남주를 면직/출교 판결을 하였습니다. ② 2021년 1월 28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는 백남주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2021.1.12.)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서울관악노회장은 백남주에 대하여 판결집행을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6일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는 백남주에 대하여 판결확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③ 2022년 8월 16일 총회재판국에서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백남주 장로 면직/출교는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④ 2023년 2월 27일 총회재심재판국에서는 파기자판을 하면서, 백남주를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질의3-1) 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836 판결에,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남주 사건의 경우, 2021년 1월 28일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 항소기각 결정시 백남주 사건은 종료되었다는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2) 권징 제94를 준용하는 권징 제107조 제1항에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남주는 상고장을 원심재판국(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회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상고의 방식을 위배하였고, 상고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대법원 1981.10.13. 선고81누230판결에,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준수여부 판정시기는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라고 판시하면서, 상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총회재판국 판결은 원천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해석을 구합니다.

12) 전주노회장 박종숙 목사가 제출한 “헌법질의(2023.12.26.)”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총회 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결의로 존속청원을 하였다고 해도 총회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적용순서가 법아래 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 및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3,4,5)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근거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기에 총회임원회에서 재심재판국 활동을 중단 또는 정지하고 원심재판국에 이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총회 재판국은 헌법권징 제124조에 근거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참고: 제107회기 41번, 42번 및 제108회기 헌법위원회 2차 회의 해석)

제107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41번, 42번 해석

41. 총회재심재판국의 구성 근거 등

서울동노회장 김상원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8-2호 / 재심 재판국 관할, 판결 및 구성에 관한 질의(2023.4.25.)”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 권징 제 124조에 근거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재심재판국이 재심판결을 할 수 없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이다. 따라서 총회 결의로 법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구성 할 수 없다.

질의3) 헌법 권징 제 128조 제4항에 근거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질의4) 총회 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질의5) 총회 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와 헌법 권징 제128조 제4항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와 헌법시행규정 제 3조 제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

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에 근거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적법한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1) 총회 재판국(원심)에는 있는 재심의 관할권을 박탈하고,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심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2) 법적용순서를 무시하고 총회 결의를 헌법보다 우선 적용하여 총회 임원회가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3) 재심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임원회가 재재심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지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4) 위에 내용에 근거하여 총회 임원회가 구성한 재심 재판국은 적법한 것인지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5) 총회 임원회가 구성한 재심 재판국이 스스로 불법임을 선언하고 재심 재판국을 해체를 했다면 적법한 것인지 해석을 구합니다.

42. 총회재심재판국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제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714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헌법 질의 제출(2023.6.19.)"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총회 헌법 제87조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은 총회 헌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거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총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정치 제87조는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질의2)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은 총회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헌법 권징 제11조의 1 제2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 10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질의3) 현재 총회 재판국과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 총

회 헌법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없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장(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총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조문은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헌법 제 2편 권징 제 124조(재심의 관할)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구성 결의한 재심재판국 15인 국원중에 총회재판국 3년조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 적용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현재 총회 재판국과는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제108회기 헌법위원회 제2차 회의(23.10.11) 10번 해석

10) 강원노회장 이주형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40-024호 / 헌법질의(2023.10.5.)"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5) 헌법권징 제129조의 "재심재판국"의 단어는 재심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라는 근거가 아닌 "재심을 하는 원심재판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항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청구를 원심치리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원심치리회는 확정판결을 한 재판국이 소속한 치리회"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재심의 청구가 재심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재판국은 현재 재판국원 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국원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소속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 교체를 요구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동조 제8항에 근거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토록 되어있다. 즉 원심재판국이 재심을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구법에 있다가 삭제된 재심재판국 및 특별재심재판국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다. 따라서 헌법권징 제124조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라는 조항 개정이 없고,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제107회기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해석은 유효하다.

질의2,3,4) 총회 결의로 존속청원을 하였다고 해도 총회 결의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법아래 있다. 따라서 법적 근

거가 없는 별도의 재심재판국 구성 및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

질의내용 : 질의1) 재심 관련한 제107회기 해석과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8회기 시에도 이 해석과 답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1) "행정.재무처-6382 / 헌법해석 보고(2023.6.5.)"로 제출한 헌법해석 보고의 1번(서울동노회장의 질의)은 질의 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이 아니므로 질의 5개 항 전체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해석을 요청하니 재심의하여 해석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총회 헌법 제 2편 정치 제 12장(총회) 제 87조(총회의 직무) 제 4항에 "총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조문은 제 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헌법 제 2편 권징 제 124조(재심의 관할)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구성 결의한 재심재판국 15인 국원중에 총회재판국 3년조 5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법 적용을 만족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현재 총회 재판국과는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 질의1-1) 헌법권징 제124조에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한다. 별도의 재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재심재판국이 재심판결을 할 수 없다.

질의1-2)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다. 따라서 총회 결의로 법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질의1-3) 헌법권징 제128조 제4항에 근거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불복할 수 없으며, 총회 재판국이 재심 인용 또는 재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경우 누구든지 다시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다.

질의1-4) 총회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

질의1-5) 총회헌법에 재심재판국 구성 근거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질의2) 총회 헌법 제87조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은 총회 헌법에 대하여 여러 의견의 있거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총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심재판국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재판국을

구성할 수 있다거나 법에 없는 규정을 헌법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총회 결의로 만들어 낸다고 하면, 총회헌법의 규법성 및 안정성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정치 제87조는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이 유효하다는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질의3)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구성은 총회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헌법권징 제11조의1 제2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 보선할 수 있다.

질의4) 현재 총회 재판국과 별도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있는 총회헌법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없다.

질의2) 제108회기 총회 시에 재심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상정 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법률이 부존한 가운데서 헌법권징 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총회결의로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존속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재심재판국 존속 청원을 청구한 자가 헌법권징 제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재심재판국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전체국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존속청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재심재판국 존속 결정이 나기 전 존속청원자가 헌법권징 제124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을 무시하고 현재 임원들을 그대로 존속 시킬 목적으로 전체국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직결정을 하여 조직보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현재 우리교단 헌법은 재심관할이 원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08회기 시에 조직된 재심재판국원들은 제108회기 시에 조직된 원심재판국원들(총회재판국원)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재판국 조직이 유효한지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질의1) 제107회 총회 회의록 재판국 보고서에 “재심을 받아들이고,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기로 찬성 975표, 반대 46표로 가결되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2022년 9월 27일 임원회 1차회의시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사건에 한하여 재심재판국원 선임 및 재심재판국 구성건은 총회장께 일임하여 법리부서장들과 대화 후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2022년 10월 12일 2-1차 회의시 총회 재심재판국 선임을 하였습니다. 제107회기 총회 때 새봉천교회 사건에 한하여 재심을 결의한 총회결의는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질의2) 제108회 총회에서 재심국장 조진현 목사가 조직보고를 하였습니다. 국장 조진현 목사, 서기 송준영 목사, 회계 김종천 장로... 라고 보고하니, 1,500 총대들이 허락하

였습니다. 이어서, 조진현 국장이 제107회 총회에서 재심을 받아드리고, 이순창 총회장님이 법리부서장들과 협의 후 재심국원을 선정하였고, 현재의 재심재판국은 원심에 속한 재판국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였으니, 연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자, 1,500 총대들이 허락하였습니다. 김의식 총회장님께서 이제 재심을 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총회결의를 선포하였습니다. 제108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 조직과 재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한 결의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질의3) 제107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재심을 하는 재판국)이 조직되었고, 제108회에서 연장허락을 받았는데, 재심재판국 운영(활동)을 총회임원회에서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질의4) 제107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재심을 하는 재판국)이 조직되었고, 제108회에서 연장허락을 받았는데, 재심재판국 운영(활동)을 총회임원회에서 총회재판국에 넘길 권한이 있습니까?

질의5) 총회재판국에서 자발적으로 새봉천교회 4건의 재심사건을 심리•판결할 수 있습니까? 끝.

13) 장현운 씨가 제출한 "총회헌법질의서(2023.12.28.)"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제60회 및 제82회, 제83회, 제84회, 제94회 총회결의에 의한 헌법위원회 질의시 절차(노회 경유, 노회 거부지 부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반려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질의1) 헌법 제137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결의 내지(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장이 선포 내지 공지함으로 시행된다." 에 따라 장○○ 원로목사 시벌에 대하여 총회 제 102회기 총회회의안 해벌승인보고서 353쪽 총회재판국 15인 전원일치로 해벌승인 결정(사건번호: 예장총101-988)이 났으나 이의신청이 있어 1회까지 재심의요구 가능함에 따라 재심의 결과 번복할 이유 없어 해벌 재차승인까지 난 바에 관하여는 해벌승인 확정 및 해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부연설명) (서울강남노회가 이종윤원로목사를 면직시켰다가 현역에서 물러나 현직이 없어 이미 면직 상황인데 어불성설 무슨 면직이냐며 해당사항 없어 무효 처리된 사례도 있음) 이 질의사건에 대하여 별도 해벌 승인 결정이 났으나 해벌반대 서명을 위조하여 첨부한 이의신청이 있어 총회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강도 높게 재 심의한 결과 이의 신청서명은 조건부사임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선교비횡령고소(형사대법원 선교비횡령 범죄증명없음 무죄확정, 민사법원 선교비횡령손해배상청구기각확정판결-이 두 법원판결을 인용한 총회재판국 사임무효 면직무효 등 판결) 당시 검찰에 제출했던 300여명 서명을 다시 복사해 해벌반대 때 받은 서명인 것처럼 날자, 표지, 페이지 등 바꿔 위조조작 됨이 밝혀짐에 따라 번복할 이유 없음으로 재차승인 결정 확정(36조6 법리부서 1회까지 재심의요구가능)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음(목회자연금 수

급박탈로 생존을 위한 생계위기)은 해벌재차승인 확정 및 해벌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부연설명(첨부 102회 총회회의안 해벌승인 보고서-1장).

14) 마량교회 김주홍 장로 외 2인이 제출한 "담임목사 청빙시 서약서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3.12.29.)"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 제60회 및 제82회, 제83회, 제84회, 제94회 총회결의에 의한 헌법위원회 질의시 절차(노회 경유, 노회 거부지 부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반려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위원회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헌법 정치 28조 3항에 담임목사 청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땅끝노회 마량교회는 2022년 12월 25일 제직회를 통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습니다. 다만 목사가 당장 사모가 함께 올 수 없다(사업관계로)고 하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의 신뢰성을 보증화기 위하여 노회장, 정치부장도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자에도 사모가 오지 않았고 장로들이 계속 약속이행을 요구하자 담임목사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당회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불법 공동의회, 장로 탄핵, 장로 강제 사임, 교회대표 선임 등). 장로들은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하였고 땅끝노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에 대해 '면직' 판결을 내렸으며, 담임목사는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땅끝노회는 지난 가을 노회시 담임목사에 대해 무임목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총회 재판이 끝나려면 1년 6개월이 걸린다" "노회 총회가 필요 없다" "헌법도 필요 없다"는 요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교회는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모는 앞으로도 올 계획이 없습니다. 사모 없이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3개 교회를 거쳤는데 그곳에서도 사모가 오지 않아 사임을 하고 왔습니다. 본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사모가 올 수 없다고 했다면 이력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의1) 담임목사 청빙시 작성된 위의 서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임목사의 직은 유지되어야 합니까?

질의2) 목사가 처음부터 사모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단 담임목사가 되고 보자는 방식이었다면 교회와 성도를 속인 죄(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서약서(이름생략)

"2023년 5월 31일까지 배우자는 사업을 정리하고 목회사역에 적극 협력한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3년 목회사역을 (임기)약속했더라도 즉시 마량교회를 사임한다."

교회 대표 장로 (인)
박보선 목사 (인)
땅끝 노회장 (인)
정치부장 (인)

15) 서울남노회장 이정환 장로가 제출한 “서울남 103-06 / 교인지위 확인에 대한 질의 건(2024.1.10.)”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교인 지위 확인여부는 헌법정치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근거 해당 교회 당회가 판단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노회 산하 효성교회(배동호 목사 시무)에서 접수한 “**교인지위 확인서 요청 건**”에 대해 본 임원회는, 교인 명부는 지교회의 관할인 바, 해당 교회의 교인지위 확인서를 노회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총회 헌법위원회에 첨부서류와 함께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내용**

: 효성교회가 노회로 접수한 공문(교인지위확인서 요청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본 교회는 201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효성교회(전중식측)와 사회 법정에서 민,형사상 법적인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교단탈퇴무효 확인의 소(2023나2051633)로, 형사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2023고정1777)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중식측은 2020. 4. 27.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 6. 30. 서울남노회로부터 제명되었으며 2022. 9. 6. 총회재판국(제 101-18호)으로부터 재항고건(제 106-11호)으로 “피재항고인 전중식을 면직 출교에 처한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중식측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4가길 43(방배동 889-4)의 효성교회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중식측은 2015. 8. 23. 교인들을 교회 건물에 들오지 못하도록 철대문과 철조망을 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출입을 막아놓고 불법적으로 아래의 본 교회 교인 158명을 회원권 정지 및 실종 교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제84-106호) “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 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 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는 것과 2019. 5. 14 총회재판국(제101-18호)의 판결 “전중식 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한다.” , 판결이유 2. “전중식 목사는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 교인 147명, 총계 158명을 처리한 후에 123명의 교인으로 전중식 목사 위임목사 재청빙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제99회기(2015년 9월) 헌법 사례집 341쪽에 76 교인의 자격정지에 보면 ‘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서로가 예배 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 교인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에 근거하여 전중식 목사가 실종 교인 처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권징 제3조 제6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문에 의거하여 전중식측이 2015. 8. 23. 아래의 본 교회 교인 158명을 회원권 정지 및 실종 교인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지금까지 전중식측은 2015. 8. 23.(실종교인 147명, 회원권정지 11명), 2016.

10. 30.(실종교인 15명, 회원권정지 6명), 2017. 10. 31.(실종교인 3명, 회원권정지 10명), 2018. 11. 11.(실종교인 23명, 회원권정지 3명), 2019. 11.17.(실종교인 8명 , 회원권정지 30명), 2020. 1. 9.(실종교인 213명, 회원권정지 3명) 등 총합계 실종교인 409명, 회원권정지 63명을 해마다 불법으로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 전중식이 서울남노회에 보고한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세례교인이 무려 1,712명이었는데 매년 끊임없이 교인 수를 급감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2020. 4. 27. 교단탈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교인 수를 무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2015년 이후에 사회법정에 제출한 문서에는 불법으로 행정처리한 실종교인과 회원권정지한 교인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회인 귀 노회는 본 교회가 확인한 아래의 실종교인과 회원권 정지한 교인들의 지위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5. 8. 23. 전중식측이 불법으로 행정처리한 실종교인과 회원권 정지한 교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회원 권 정지 교인 - 6개월 이상 결석자
   구공주 고진영 김봉금 김영섭 김충일 박태흥 백예영 백예찬 이정은
   이흥미 최원석 (이상 11명)

2. 실종 교인 - 1년 이상 결석자
   강대숙 강미선 강미숙 강승철 강재명 고영록 고영애 곽영준 곽지현
   권오성 권오준 김가진 김경덕 김기철 김동진 김말례 김명원 김미연
   김민호 김상호 김성철 김성태 김세윤 김숙희 김영미 김명준 김옥란
   김은경 김인선 김일매 김종숙 김지현 김춘희 김채선 김하영 김현빈
   김형철 김홍성 나광조 라병호 라영미 라정배 라영웨 모순옥 문옥순
   박경빈 박광자 박성지 박원경 박원율 박정은 박정희 박종호 박지선
   박재연 박진아 박찬신 박현우 배방현 백순이 봉순임 서인숙 손윤기
   송재수 송덕현 신순철 신영지 신유미 신은숙 안수찬 안영신 안지은
   안유나 안태수 엄정현 오세홍 오영지 오형석 우성수 유현순 윤경식
   윤선녀 윤영희 윤효정 이경숙 이경옥 이광미 이미경 이복형 이상준
   이숙자 이 신 이양엽 이영숙 이영희 이요섭 이윤주 이은비 이은주
   이인섭 이재권 이재연 이정호 이종성 이종식 이종직 이지현 이지혜
   이창석 이철우 이태호 이한영 이효순 임갑금 인순자 임지열 장광원
   장근화 장영화 정경임 정명숙 정병우 정성찬 정연호 정인순 정점례
   제원호 조숙자 조원경 조혜란 주명성 지형진 채경미 채규현 최강준
   최명선 최민정 최상윤 최수나 최은아 최지나 추신애 한금희 한대룡
   한원일 한현미 황규순 (이상 147명) - 총계 158명 -

첨부서류

1. 2015. 8. 23. 효성교회 (전중식측) 주보 사본
2. 총회헌법위원회 제96-76호 '교인의 자격정지' 에 대한 해석 사본
3. 2019. 5. 14. 총회재판국 (제 101-18호) 판결문 사본
4. 2022. 9. 6. 총회재판국 (제 106-11 호) 판결문 사본

2024년 1월 3일

효성교회 당 회 장 배 동 호 (인)
당 회 원 이 형 규 (인)
당 회 원 윤 경 식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 귀하

16) 포항남노회장 한동우 목사가 제출한 "포남노제 107-08호 / 헌법질의(2024.1.10.)"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90조 제2항에 근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거나 제3항에 근거 상회의 지시에 의해 소집한다. 따라서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총회헌법에 위배된다.

질의2)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 근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질의3) 본 교단은 교단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87조에 근거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항존 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9호 면직책벌로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은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며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의4) 헌법정치 제77조 제2항에 근거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이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회 결의 시 당회장 없이 결의할 수 없다.

질의5) 헌법시행규정제33조 제3항에 근거 당회장권을 정지하였다고 하여도 담임목사로서 설교권, 예배인도권, 성례집례권은 중지시킬 수 없다.

질의내용 : 국가법원에 교회 정관제정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국가법원이 신청인들의 요구대로 장로를 공동의회 소집자로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을 어기고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제정했습니다. 위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교단탈퇴와 위임목사 해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교단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적법하지 않게 허락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을 하기는

커녕 당회장권을 정지하면서 권징권까지 행하여 당회장의 강단권을 정지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동의회는 헌법정치 90조 2항에 의거 당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로가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2)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정관에 의하면 위임목사를 당회 2/3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과반수 결의로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 정관이 적법한지? 위의 정관으로 위임목사해임을 결의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의3) 본교단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교단탈퇴에 대하여 위의 정관에 의하면 교단탈퇴는 당회 2/3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과반수 결의로 교단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정관이 적법한지? 위의 정관으로 교단탈퇴를 결의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의4) 노회는 각 당회가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헌법정치 77조 2항). 당회의 청원이란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을 해야 하는데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 것이 적합한지? 장로들의 청원을 받아 노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지?

질의5) 노회가 구성한 수습전권 위원회(헌법시행규정 33조 3항)가 당회장권 정지, 당회원권 정지를 시키면서 위임목사의 강단권(설교권, 예배인도권, 성례집례권)을 정지한 것이 적법한지?

17) 부산남노회장 엄정길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 87-67호 / 헌법질의(2024.1.10.)”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2,4)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된다.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헌법정치 제95조 제2항에 근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이 총회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노회 유지재단은 노회 산하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여러 노회로 구성된 유지재단의 경우는 각 노회 산하기관으로는 볼 수 없고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5항에 근거 노회 유관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 경남노회 유지재단은 헌법정치 제95조 제2항에 근거 7개 노회가 설립한 점과 경남노회 유지재단을 헌법시행규정 제37조에 근거 유관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무국장 정년이 기관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교단 헌법에 정한 만70세 정년을 준용하여한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 만70세를 넘으면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

질의3)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헌법해석으로 유무효 판단하기보다, 상기 해석에 따르면 된다.

질의내용 : 경남노회 유지재단은 본 교단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7개 노회(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남, 진주, 진주남)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관리하는 법인입니다(첨부한 정관 및 참고자료 참조). 경남노회 유지재단은 2023년 7월 25일(화) 법인 사무실에서 개회한 정기 이사회에서 안건 6번 바. 사무국장 연임건에 대하여(연임 희망원 참조) 이사장은 현 사무국장(1952년생 현재 만72세, 은퇴장로)을 인사문제라고 하고 가부 토론없이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식 유급직원으로(사택제공) 75세까지 시무가 가능하도록 연임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남노회는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헌법정치 제92조에 규정된 소속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및 헌법시행규정 제37조에 규정된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시행규정 제15조 3항에 근거하여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남노회 유지재단 이사회와 일부 이사들은 헌법해석 내용에 사무국장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빠졌고 유지재단은 부산시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하며 계속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오니 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총회산하에 소속해 있는 (재)경남노회 유지재단 정관에는 유급직원 정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경남노회 유지재단 정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회도 총회도 산하기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년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시무가 가능한 것입니까?

질의2) 재단법인 유지재단은 시청 또는 도청의 관리감독만 받고 본 교단 총회의 관리, 감독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질의3) 연임결의 후 정규직으로 시무중인 사무국장의 이사회결의에 대해 유무효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4) 경남노회 유지재단은 총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첨부. 1. 헌법해석 통보(부산남노회장) 1부.
2. 연임 희망원 1부.
3. 유지재단 2023년도 예.결산 및 2024년도 예산
4. 유지재단 정관

18) 평양노회 비전교회 김명일장로가 제출한 “비전 2024-01 /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4.1.5.)”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담임목사는 은퇴전까지 당회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당회 미 개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

질의2) 헌법정치 제91조 제4항에 근거 당회장이 제직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헌법정치 제68조 제9항에 근거 제직회 부서장 임명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당회 결의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 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3) 헌법권징 제71조에 근거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무장로로 시무할 수 있고 헌법 정치제64조 제1항에 근거 당회원이다.

질의4) 헌법정치 제67조 제3항에 근거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은퇴목사, 타 노회 목사도 대리당회장이 가능하다.

질의5) 사실관계 확인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기로 하다.

질의6) 헌법정치 제67조에 근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5에 근거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28조 3항과 제67조 4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따라서 임시당회장 및 대리당회장 파송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교회 사정을 아는 노회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내용 : 질의1) 본 교회는 시무장로가 2인으로 조직교회입니다. 담임목사는 2023년 12/31부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는 주일에 12/31에 당회결의 없이 일방적 단독으로 주보 광고란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제직을 임명을 한다고 하면서 임명을 강하고 은퇴했습니다. 제직임명이 적법 또는 유효한지요?

질의2) 본 교회는 노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된 적 있었지만 현재는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31에 은퇴하는 목사가 2024년 제직임명을 당회결의 없이 일방통보하고 떠났습니다. 당회원이 해오던 재정부장도 (서리)집사로 임명까지 했습니다(참고자료 주보). 불법 임명한 제직임명을 무효로 하고 대리당회장 또는 임시당회장을 통해 당회의 정식결의로 2024년 제직과 부서장을 임명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질의3) 일부 교인이 시무장로를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는 불기소통지를 받았으나 고소인들이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죄 추청에 의거한다고 하면 해당 시무장로가 당회원으로 시무하는데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입니까?

질의4) 타 노회원의 대리당회장은 가능한지요?

질의5)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적법하게 요청했는데 노회가 서리집사가 노회로 보낸 서류가 임시당회장 청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습니까?

질의6) 임시당회장을 하지 않고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합니까? 끝.

>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7의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 목사 청빙 [개정 2012.9.20.]**
>
>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19) 전주노회장 박종숙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53-25호 /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원로목사 청원에 관한 질의(2024.1.24.)”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1) 헌법정치 제27조에 근거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헌법정치 제28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5을 준용하여 제직회가 당회를 대신하여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로목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교회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회가 허락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질의내용 : 질의1) 원로목사의 추대는 헌법 정치 제27조 8항에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전주비전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정치 제16조의 5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규정을 들어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은퇴하는 담임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여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해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에 원로목사 청원을 했습니다. 노회 임원회와 인사부가 연석회의를 한 결과 교회의 사정상 원로목사의 예우를 할 경우 새로 오는 담임목사는 자비량목회를 해야 할 상황과 헌법시행규정 정치 제16조의 5를 원로목사 청빙에 대해서도 원용해도 되는지에 관해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끝.

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가.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및 이첩안건을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에 일임하여 연구 및 조사중

나. 조직

위원장 : 이철웅 목사(서울강북) 서기 : 박한수 목사(서울서북) 회계 : 배한정 목사(서울강동)

위 원 : 이춘복 목사(안양) 강정원 목사(전남) 김덕수 목사(경북) 이명덕 목사(용천)
정창환 목사(군산) 최구영 목사(부산) 정동천 목사(함해) 김태수 목사(서울동)
서성구 목사(경기) 황표성 목사(순천남) 하남수 목사(부산동) 김종찬 목사(평남)

전문위원 : 송용원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천세종 교수(연세대학교) 이상은 교수(서울장신대학교)

교육원장 : 백용훈 목사(서울동북)

상담소장 : 박형국 교수(한일장신대학교)

전문상담사 : 고형석 목사(함해) 강경호 목사(서울서북) 한강수 목사(전남) 권남궤 목사(부산동)
신성남 목사(대전서)

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1) 연구분과위원회

분과장 : 김덕수 목사 서기 : 정동천 목사 위원 : 서성구 목사 김종찬 목사

2) 조사분과위원회

분과장 : 최구영 목사 서기 : 김태수 목사 위원 : 이명덕 목사 정창환 목사

3) 상담분과위원회

분과장 : 강정원 목사 서기 : 황표성 목사 위원 : 이춘복 목사 하남수 목사

라. 총회 이단상담사 교육 2월26-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

마. 제108회 지역별 이단사이비 및 이슬람선교대책 연합세미나 3월7일(목) 영남신학대학교, 3월8일(금) 전주완산교회 진행 및 3월15일(금) 사능교회, 3월22일(금) 대전오정교회에서 개최 예정

1) 일정

2024.3.7.(목)-3.8.(금)

13:00 - 13:20 개회 및 소개 13:20 - 14:50 제1강의
14:50 - 15:00 휴식 15:00 - 16:30 제2강의
16:30 - 17:00 질의응답 및 폐회

2) 순서자

2024.3.7.(목) / 영남신대

전체사회 : 백용훈 목사, 기도 : 황병국 장로, 전체소개 : 각 위원장

강사소개 : 배한정 목사 임기환 목사, 폐회기도 : 김덕수 목사

2024.3.8.(금) / 전주완산교회

전체사회 : 최구영 목사, 기도 : 정창환 목사, 전체소개 : 각 위원장

강사소개 : 배한정 목사 임기환 목사, 폐회기도 : 이중관 목사

3) 지역별 강사

권남궤 목사(부산동노회 이음교회, 총회이단전문상담사)『최근 신천지의 동향과 대책』

박형국 교수(총회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한일장신대) 『이단 문제와 교회의 사명』

공일주 목사(PCK 선교사) 『국내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이만석 목사(무슬림선교훈련원장) 『무슬림들을 전도합시다』

4) 참석자

2024.3.7.(목) / 영남신대 - 50여명

2024.3.8.(금) / 전주완산교회 - 60여명

바. 6월 한·일연합대책세미나 개최 예정

사. 8월 첫째주일(8/4) 이단경계주일 성수 준비 및 자료집 발간 예정

6. 선거관리위원회

가. 조직

위원장 : 박한규 장로(부산동) 서기 : 김진욱 목사(인천동) 회계 : 권오탁 장로(경안)

위 원 : 김승민 목사(서울서남) 김성곤 목사(서울동남) 박귀환 목사(천안아산)
이성무 목사(충남) 조현성 목사(부산) 박해욱 목사(경북) 권호임 목사(평북)
황진웅 장로(영등포) 정찬덕 장로(부천) 박영배 장로(울산)
주상근 장로(강원동) 박상기 장로(함해)

나. 제108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구성

- 신청서심의 소위원회 : 김승민 목사(위원장) 박해욱 목사 정찬덕 장로
- 유인물발송 소위원회 : 황진웅 장로(위원장) 조현성 목사 권오탁 장로
- 고소·고발 소위원회 : 박귀환 목사(위원장) 권호임 목사 박상기 장로
- 투표관리 소위원회 : 김성곤 목사(위원장) 박한규 장로 주상근 장로
- 개표관리 소위원회 : 박영배 장로(위원장) 김진욱 목사 이성무 목사

다.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접수 관련하여 부총회장 후보지역 노회 공문 발송(2024.1.3.) 및 한국기독공보사에 공고함(2024.1.27.)

라.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마감일 : 2월 29일(목) 오후 5시까지

마.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결과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 / 임직순〉

1)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 광주남문교회)

2)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 전주시온성교회)

3) 정 훈 목사(여수노회 / 여천교회)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 임직순〉

1)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 한소망교회)

2) 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 / 성덕교회)

7. 헌법개정위원회

가. 조직

위원장 : 황형찬 목사(부산남) 서기 : 오경남 목사(함해) 회계 : 김재갑 장로(익산)

위 원 : 임종길 목사(서울서) 이태종 목사(서울강남) 연제국 목사(충청) 김 기 목사(대전)
장의환 목사(포항남) 이현세 목사(경서) 홍성용 장로(서울동북) 김의경 장로(서울서남)
이홍무 장로(충주) 박영호 장로(여수) 김수찬 장로(부산) 최종섭 장로(경안)

전문위원 : 이진구 목사(목포) 이명덕 목사(용천) 이병철 장로(부천)

나. 제108회 총회 수임된 헌법 개정(안) 연구 위해 분과 구성함

교리 분과(5명) : 12개 신조 개정안 연구
이태종 목사(분과장) 김의경 장로(서기)
임정길 목사 홍성용 장로 이병철 장로(전문위원)

정치 분과(5명) : 정치 12개 조항 개정안 연구
이현세 목사(분과장) 최종섭 장로(서기)
연제국 목사 이홍무 장로 이명덕 목사(전문위원)

권징 분과(5명) : 권징 2개 조항 개정안 연구
장의환 목사(분과장) 김수찬 장로(서기)
김 기 목사 박영호 장로 이진구 목사(전문위원)

8.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

가. 조직

위원장 : 윤택진 장로(대전), 서기 : 이영석 목사(영등포), 회계 : 유흥열 장로(서울)

위 원 : 백용훈 목사(서울동북), 김승민 목사(서울서남), 김명서 목사(인천), 정성철 장로(서울강북),
김대권 장로(서울서), 성우기 장로(서울관악)

전문위원 : 박중근 목사(서울), 문용식 장로(평남), 박검섭 장로(서울노회유지재단 사무국장)

나. 서울노회유지재단 문제로 인한 분담금 모금은 현재 20억 7천 8백만원 입금되었다는 보고는 받다.

다. 100대 교회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라. 경기노회장 서성구 목사가 제출한 “경기노회 제78-31호 / 강제경매 사건 경기노회 소속 노회별 분담금 이의 제기 건(2023.9.7.)”은 회신하기로 하다.

마.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다.

바. 서울노회유지재단 문제로 인한 분담금 모금은 현재 2,333,430,000원 입금되었다는 보고는 받다.
사. 2023년 11월 28일 강제조정금액(2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아. 한국기독공보사에 강제경매 사건처리 경과보고에 대한 보도를 요청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차기회의 시 의논하기로 하다.
자. “사무총장실-1033 / 제107회기 감사 의견 통지(2023.11.1.)”는 참고하기로 하다.
차. 변호사 보수비용은 지급하기로 하고 도림교회에서 차용한 1억원은 반환하기로 하다.
카.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장 이월식 장로, 회계 유흥열 장로, 전문위원 박검섭 장로에게 총회장 명의의 공로패 수여를 청원하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차기 회의 시 의논하기로 하다.
타. 서울서남노회장 신동훈 장로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101-063호 / 은성교회 강제경매에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마련 헌의 요청(2023.12.5.)은 서울노회유지재단에서 조치하기로 하다.
파. 총회 소송을 수임하는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가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들에게 탈퇴 권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총회에서 지도 권고해 주시길 요청하기로 하다.
하. 현재 위원장 이월식 장로의 12월말 은퇴로 차기회의부터 윤택진 부총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하다.
거. 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항존직 은퇴함에 따라 사임하고,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너. 서울강서노회장 최영관 목사가 제출한 “서울강서 7-053호 /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면담 건(2023.12.20.)”은 위원장이 임원들과 일정을 조정하여 면담하기로 하다.
더. 총회임원회에 강제경매 사건 해결비용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재 청원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러. 강제경매 사건 노회별 분담금 미납 노회에 공문을 재발송하기로 하다.
머. 2024년 1월 15일 현재 모금액이 2,711,130,000 임을 확인하다.
버. 분담금 미납 노회에 위원장 윤택진 장로 인사말과 공문을 재발송하기로 하다.
서. 10대 교회에 임원들이 방문하여 모금을 진행하기로 하다.

9. 치유화해조정위원회

가. 위원장에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서기에 박도현 목사(평남), 회계에 이정환 장로(서울남)를 각각 선출하다.
나. “행정재무처-12379 /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다.
다. 차기 회의는 12월 15일(금) 오전 11시에 총회본부에서 모이기로 하다.
라. 전문위원 이정배 목사(영등포노회)가 이영석 목사(영등포노회)로 교체되었음을 확인하다.
마. “행정재무처-12379 /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다.
바. 총회장이 요청한 “사무총장실-1033 / 제107회기 감사 의견 통지” 건은 향후 화해조정 업무에 참고하기로 하다.
사. 총회장이 요청한 “행정재무처-13746 /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요청(2023.11.13.)” 【①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5-0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② 서울관악노회 방영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 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6-1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③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임

시당회장 이종운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제3자소송참가인 윤상용 장로 외 2인이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소)장(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4-06호)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④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이지원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상용 장로 외 3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2020관악새봉천위탁 제47-105호”(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4-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건의 4건에 대하여 차기 회의 시 아래와 같이 화해조정을 진행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서울관악노회장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전 11시

2)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후 1시

3)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후 2시 20분

아. 차기 회의는 12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총회본부에서 모이기로 하다.

자. “행정재무처-12379 /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다.

차. 서울관악노회가 제출한 “관악 제55-42호 / 치유화해조정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명단 통지(2023.12.13.)” 건은 간담회에 참고하기로 하다.

카. 총회장이 요청한 “행정재무처-13746 /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요청(2023.11.13.)” 【①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5-0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② 서울관악노회 방영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 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6-1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③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이종운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제3자소송참가인 윤상용 장로 외 2인이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소)장(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4-06호)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④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이지원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상용 장로 외 3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2020관악새봉천위탁 제47-105호”(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4-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건의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다.

- 다 음 -

1) 서울관악노회장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전 11시

가) 시작기도 / 차주욱 장로

나) 참 석 자 / 부노회장 이종운 목사, 부노회장 김용태 장로, 부서기 박윤범 목사

다) 마침기도 / 김성철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총회재판국에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결과 후 판결하도록 요청한 것을 전달하다.

(2) 새봉천교회 분쟁에 대하여 서울관악노회는 화해조정하는 동안은 기다리도록 한다.

2)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후 1시

가) 시작기도 / 안옥섭 장로

나) 참 석 자 / 백남주 장로, 오상근 장로, 윤상용 장로

다) 마침기도 / 김승익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총회재판국에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결과 후 판결하도록 요청한 것을 전달하다.

(2) 차기 회의 시 합의의견에 대하여 검토해 오기로 하다.

3)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 외 대표 2인 : 2023. 12. 15.(금) 오후 2시 20분

가) 시작기도 / 이정환 장로

나) 참 석 자 / 구자원 장로, 오균섭 장로, 조성근 장로, 이영철 장로

다) 마침기도 / 김성철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총회재판국에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결과 후 판결하도록 요청한 것을 전달하다.

(2) 차기 회의 시 합의의견에 대하여 검토해 오기로 하다.

4) 총회재판국장 및 서기 : 2023. 12. 15.(금) 오후 3시 40분

가) 시작기도 / 차주욱 장로

나) 참 석 자 / 재판국장 윤석민 목사, 재판국서기 방운술 목사

다) 마침기도 / 윤석민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총회재판국에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결과 후 판결하도록 요청하다.

(2) 새봉천교회 관련 화해조정 건은 빠른 시일 내에 화해조정키로 하되, 최종 조정 시에 재판국의 협조를 요청하다.

타. 차기 회의는 새봉천교회 화해조정을 위하여 2024년 1월 5일(금), 1월 18일(목), 1월 29일(월) 각각 오전 10시 30분에 총회본부에서 모이기로 하되, 서울관악노회를 제외한 새봉천교회 양측을 간담하여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다.

파. “행정재무처-12379 /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다.

하. 총회장이 요청한 “행정재무처-13746 /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화해조정 요청(2023.11.13.)” 【①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가 새봉천교회 기소위원장 조성근 장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5-0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② 서울관악노회 방영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4인이 서울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무효 등 확인 소송)”(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6-18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③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이종운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제3자소송참가인 윤상용 장로 외 2인이 새봉천교회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소)장(결의취소의 소 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 103-4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4-06호)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④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 이지원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윤상용 장로 외 3인이 서울관악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상고장)-2020관악새봉천위탁 제47-105호”(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104-21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건의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다.

- 다 음 -

1)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외 1인 : 2024. 1. 5.(금) 오전 11시
가) 시작기도 / 이영석 목사
나) 참 석 자 / 백남주 장로, 오상근 장로
다) 마침기도 / 김성철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합의의견을 제출하니 부연 설명을 듣다.
(2) 화해조정하는 동안 최대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자제할 것

2)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 외 대표 3인 : 2024. 1. 5.(금) 오전 12시
가) 시작기도 / 강정용 장로
나) 참 석 자 / 구자원 장로, 오균섭 장로, 조성근 장로, 이영철 장로
다) 마침기도 / 김성철 목사
라) 전달 및 요청사항 /
(1) 빠른 시일 내에 합의의견을 문서로 제출 할 것
(2) 전 재판국장 교회 앞 시위를 자제할 것

거. 새봉천교회 양측 면담을 위해 2개 분과를 조직하다.
1) 1분과 / 백남주 장로 측 면담 : 김승익 목사, 이정환 장로
2) 2분과 / 구자원 장로 측 면담 : 박도현 목사, 차주욱 장로

너. “행정재무처-12379 /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2023.10.10.)” 건은 계속 연구하기로 하다.

더. 새봉천교회 화해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 1,2분과와 양측이 면담 진행함
1) 백남주 장로 측 면담 : 1월 26일, 3월 11일
2) 구자원 장로 측 면담 : 1월 26일, 3월 11일

러. 본 위원회 회의비 예산 추경 300만원을 청원하기로 하다.

10. 통계위원회

가. 임원 조직 : 위원장 조병호 목사, 서기 연제국 목사, 회계 권영문 장로

나. 제108회 총회 헌의안(수임안건) / 서울노회장 양의섭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지침 녹색행정에 따른 총회 각종 증명서도 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구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2〉은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정보통신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이첩하여 주시기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다. 한국교회총연합회장 이영훈 목사가 제출한 “한교총 제06-196호(2023.10.19.) 교세 통계 자료 요청의 건”은 총회가 보유한 제공 가능한 자료(2001년~2022년의 20년간 **노회별** 통계 : 교회수, 세례교인수, 장년/성인 교인수, 영유아/유치/초등/중고등부 학생수, 전체 목사수_은퇴/원로 제외)를 제공토록 협조하기로 함.
// **참고:** 향후 30년간 한국 기독교 교세 추이 예측 프로젝트(국내 범 교단 자료 분석)
- 자료제출처 sg.kim@embrain.com(마크로밀엠브레인 김석균 상무), 11월23일까지
- 프로젝트진행팀/ 목회데이터연구소, 엠브레인
본 프로젝트 목적 이외에는 제공자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NDA(none disclosure agreement) 자료 받을 예정.

라. 중고등부 입력란 세분화에 대한 전 회기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영·유아·유치, 아동부도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기로 함.

	구분(만 나이)	원입교인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아동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계
영아·유아·유치(변경)	2023년생(0세/출생)									
	2022년생(1세)									
	2021년생(2세)									
	2020년생(3세)									
	2019년생(4세)									
	2018년생(5세)									
	2017년생(6세)									
초등(아동)(변경)	2016년생(7세/초1)									
	2015년생(8세/초2)									
	2014년생((9세/초3)									
	2013년생(10세/초4)									
	2012년생(11세/초5)									
	2011년생(12세/초6)									
중등	2010년생(13세/중1)									
	2009년생(14세/중2)									
	2008년생(15세/중3)									
고등	2007년생(16세/고1)									
	2006년생(17세/고2)									
	2005년생(18세/고3)									
청·장·노년	2004년~1995년생(20대)									
	1994년~1985년생(30대)									
	1984년~1975년생(40대)									
	1974년~1965년생(50대)									
	1964년~1955년생(60대)									
	1954년~1945년생(70대)									
	1944년~1935년생(80대)									
	1934년 ~1***년생(90대)									
전체 교인수(총계)										
교인 세대 수		세대								

마. 전 제107회기 동 위원회 결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확인하다.

신설 1. 교인 등록 수(12월 말 기준/ **교회 입력란**)-제107회기 결의 반영

구 분	남	여	계
초신자(새신자) 수			
타 교인(이명) 수			
합 계			

신설 2. 당해연도 교회 현황(12월 말 기준/ **노회 입력란**)-제107회기 결의 반영

구 분	계
신설 교회	
탈퇴 및 폐 교회	
통(폐)합 교회	
합 계	

- 통합될 시 승계되는 교회를 통합교회에 수를 기입하고, 승계되지 못한 교회는 폐교회에 수 기입

바. 총회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2093(2023.10.20.) / 교세통계표 설문조사 문항 추가 요청 건"은 아래와 같이 교회학교 설치 유무란과 구분항목을 추가{영유아유치(통합),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아동부(통합), 중고등부(통합), 대학청년부(통합)}하기로 하다. 또한 기존 학생

수 수집란은 위 결의한 교인수 항목 세분화로 인해 교회학교 학생수 파악이 가능하다 사료되므로 “학생수” 항목은 삭제하기로 함.

※ 교회학교 유무 삽입 - 교육자원부 요청사항 반영

구 분	교회학교 설치 유무		학생수			교사수		
	있음	없음	남	여	계	남	여	계
영 아 부	☐	☐						
유 아 부	☐	☐						
유 치 부	☐	☐						
영유아유치(통합)	☐	☐						
초등 1학년	☐	☐						
초등 2학년	☐	☐						
초등 3학년	☐	☐						
초등 4학년	☐	☐						
초등 5학년	☐	☐						
초등 6학년	☐	☐						
저학년부(1-3학년)	☐	☐						
고학년부(4-6학년)	☐	☐						
아동부(통합)	☐	☐						
중 등 부	☐	☐						
고 등 부	☐	☐						
중고등부(통합)	☐	☐						
대 학 부	☐	☐						
청 년 부	☐	☐						
대학·청년부(통합)	☐	☐						
장 년 부	☐	☐						
노 년 부	☐	☐						
(42) 합 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부서명(통합)에 표시(기록)할 것.

사. 미진한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함.

아. 한국교회총연합회장 이영훈 목사가 제출한 “한교총 제06-225호(2023.11.28.) / 한국교회 미래 교세 추정을 위한 원 자료(Raw Data) 협조 요청의 건”은 본 통계와 관련한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갖기로 하되, 세부 진행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함.

자. 이만식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토록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차. 2024년 교회 교세통계 조사 일정(안)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보고받다.

1) 조사 일정(안)

가) 2024년 1월 1일~ 3월 31일 - 교회 교세 통계 입력 기간

나) 2024년 4월 1일~30일 - 노회 교세 통계 입력 기간

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입력

2) 조사 방법 : 총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력(조사)

- 12월 중·하순 경에 전국 교회 및 노회에 협조 공문 준비 및 발송함.

카. 2024년 교회 및 노회 교세통계 조사 입력 양식(안)을 확정함.

타. 총회 소속 목사의 인적정보(생년월일) 수집은 국가 개인정보법에 의거 준비해야 하므로 더 연구하기로 하되, 각 노회가 비치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기로 함.

11.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 /** 1차: 2024.1.4.(목), 오후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A.

가. 임원 조직 : 위원장 마흥락 목사, 서기 이상근 목사, 회계 김병구 장로

나. 향후 대구애락원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및 내용은 임원과 위원 황병국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12. **특별심판위원회**

가. 위원장에 김준기 목사(규칙부장/함해), 서기에 박귀환 목사(사회봉사부장/천안아산), 회계에 문용식 장로(재정부장/평남)를 선출하다.

나. 안건토의 "가. 서울강동노회 총회 총대 김범식 장로가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2023.10.4.)'"은 심사하고 피고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다.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소장(제3자 소송참가신청)(2023.11.2.)"은 참고자료로 받기로 하다.

라. 안건토의 "(유안건) 가. 서울강동노회 총회총대 김범식 장로가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2023.10.4.)'"은 심사하고 원고 서울강동노회 총회총대 김범식 장로의 원고적격문제는 헌법 권징 제144조, 헌법 권징 제 145조에 의거함을 확인하다.

마.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소장(제3자 소송참가신청)(2023.11.2.)"은 심사하고 제3자 소송참가신청 자격적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류 보정 요청하기로 하다.

바. 안건 '다.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2023.11.6.)', '라. 피고 김의식 총회장이 제출한 답변서 제출(2023.11.7.)', '마.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2023.11.13.)'는 차기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다.

사. 안건토의 "(유안건) 가. 서울강동노회 총회총대 김범식 장로가 총회장 김의식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2023.10.4.)'"과 관련하여 신청인 서울강동노회 총회총대 김범식 장로가 제출한 "소 취하서(2023.11.16.)"를 확인하고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고 결정문 작성 및 통지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주문 : (1) 이 사건 행정소송(결의 취소 및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은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11월 16일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3) 예납한 재판 비용은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아.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소장(제3자 소송참가신청)(2023.11.2.)"은 신청인 새봉천교회 당회서기 구자원 장로가 제출한 "소 취하서(2023.11.16.)"를 확인하고, 서울강동노회 총회총대 김범식 장로가 소 취하함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제출한 제반서류를 모두 반려하기로 하다.

13. **제1인사위원회**

가. 임원 조직 : 위원장 이순창 목사, 서기 조병호 목사, 회계 이철웅 목사

나.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총무 선임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함.

2023년 12월 19일(화) - 한국기독공보와 총회 홈페이지에 인선 공고

2024년 1월 10일(수) - 총무 지원 서류 마감

1월 11일(목) - 오후 5시, 제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서류심사)

1월 20일(토) - 오전 10시, 제1인사위원회 소위원회(면접)
1월 22일(월) - 오전 11시, 제1인사위원회 소위원회(면접 추가시)
2월 1일(목) - 오전 11시, 제1인사위원회(최종 인선)
2월 15일(목) - 총회 임원회 인준

다.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청빙 공고(안) 중 경력부분에 있어서 "1)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목회 경력(선교, 기관) 10년 이상 된 분"으로 수정하기로 함.

라.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인선 지원자 서류 접수 현황(4명 접수) 보고받음.

마. 노회장 추천서 대신 노회소속증명서를 제출한 김봉춘 목사에 대해서는 서류미비로 총무 인선 후보에서 제외시키기로 함.

바. 총무 임기 개시 기산일이 총회 임원회 인준일인지 아니면 총회 보고일 부터인지를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함.

사. 1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총무 지원자의 면접을 실시하되, 면접 순서는 서류 접수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아. 예비비 전용 청원 건은 원안대로 허락하기로 함.

자.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후보 선출을 위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의함.

1) 총회 규칙 제4장 총회 본부 제34조 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별정직원선임 3)호에 근거하여 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2) 1차 투표에서 재석 과반을 얻는 후보 2인을 추천하되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 종다수로 2인을 결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4조(개표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연조 우선순위로 한다.)를 준용하여 임직순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차.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후보 선출 건은 투표 결과, 박원길 목사 4표, 류현웅 목사 3표, 정용구 목사 1표로 다음과 같이 후보 2인을 결정하고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함.

1) 박원길 목사(4표) 2) 류현웅 목사(3표)

카. 2월 1일 전체회의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제1인사위원회 양식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함.

타.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처 총무 선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결의함.

1) 국내와군·특수선교처와 도농·사회처 총무 2인에 대한 재인준 여부 결정은 제1인사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일시는 2024년 5월 3일로 예정하기로 제1인사위원회 시 제안하기로 하다.

2) 2024년 9월 2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교육·훈련처와 행정·재무처는 신임 총무 인선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가) 별정직 선출 공고 : 5월 중
나) 별정직 선임 절차 : 6월 중
다) 별정직 최종 결정 : 7월 중

파.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후보 2인을 대상으로 5분간 업무소견발표토록 한 후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함.

하. 인선 투표방식은 총회 규칙에 따라 재석과반수(11표) 득표로 선임하기로 하고 1차 투표후 동수가 나오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후에도 동수가 나오면 3차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그 후에도 동수

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의함.

거.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 선출 건은 투표 결과, 박원길 목사 5표, 류현웅 목사 15표로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로 류현웅 목사를 선임하고 총회 규칙 제4장 총회 본부 제34조 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별정직원선임에 근거하여 총회 임원회에 인준을 청원하기로 결의함.

너. 국내와군·특수선교처와 도농·사회처 총무 2인에 대한 재인준 여부 결정은 차기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고 2024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총회 본부에서 모이기로 함.

14. 제2인사위원회

가. 임원 조직 : 위원장 김영걸 목사, 서기 조병호 목사

나. 제108회기부터 시행 적용하기로 한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2인에 대한 대상조치내용은 “1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의함.

다. 총회 사무총장실 구혜민 대리가 제출한 “사무총장실-8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2023.9.22.)” 건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6장 휴가와 휴직 제38조 근로시간 단축 1항 1호”에 의거하여 허락하기로 함.

라. 총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사무총장실-942, 병가 청원(2023.10.12.)” 건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6장 휴가와 휴직 제35조 휴가의 종류 9항 병상휴가”에 의거하여 병가 2개월로 허락하기로 함.

마. 제108회기 총회 직원 근무평가 관련으로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평가 방안(승진, 순환보직 포함), 평가 계획, 평가 일정 등의 기초 자료는 총무단에서 마련하여 연구소위원회에서 검토 한 후 차기 회의시 결정하기로 함.

연구소위원회 : 김영걸 목사, 조병호 목사, 정성철 장로, 김보현 사무총장, 안영민 총무

바. 총회 사회봉사부장 박귀환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965, 이민지 대리 임신기간 근로 시간 단축 신청(2023.11.27.)” 건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의거 임신 12주 이내에 해당되기에 허락하기로 함.

사. 총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사무총장실-1163, 병가 연장 청원(2023.12.11.)” 건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6장 휴가와 휴직 제35조 휴가의 종류 9항 병상휴가”에 의거하여 병가 1개월 연장을 허락하기로 하다.

아. 총회 교육자원부장 김권수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2462, 공과(5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형 인턴 채용 청원(2023.12.7.)” 건은 공과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청원을 반려하기로 하다.

자. 제108회기 총회 직원 승진 심사 진행 계획(안)대로 시행하기로 허락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승진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되, 위원은 김영걸 위원장, 조병호 서기, 장승천 목사, 정성철 장로, 문용식 장로, 김보현 사무총장으로 하기로 하다.

차. 총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271,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직원 채용 추천(2024.1.8.)”건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3장 임면 제14조 일반직·기타직의 임용”에 의거하여 해외·다문화선교처 직원 2인(과장대우 1인, 직원 1인, 수습 3개월) 채용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직급	성명 및 교직	성별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발령일
과장 대우	박영진 목사	남	1973.2.15.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졸 장신대 신대원(M.Div) 졸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교육(M.A) 졸 스위스 제네바한인교회 담임목사(7년)	2024.2.1.자 (수습 3개월)
직원	박민애 목사	여	1990.12.7.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졸 장신대 신대원(M.Div) 졸 미국 남침례교대학 기독교교육(M.A) 졸 현) 범양선교회 말레이시아 파송 선교사	2024.2.1.자 (수습 3개월)

카. 제108회 총회 직원 승진자 심사에 대해 1차 승진 심사 결과로 하고 2차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승진자 결정을 하기로 하다. 이일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김영걸 위원장, 정성철 장로, 김보현 사무총장, 오상열 총무, 안영민 총무로 하기로 함.

타. 총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사무총장실-104, 총회 계약직원 채용 추천(2024.2.5.)” 건은 “총회 직원 직 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3장 임면 제14조 일반직·기타직의 임용”에 의거하여 기독교선교연대 (EMS) 협약 계약직원 1인(2년 계약)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함.

성명 및 교직	성별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근무 형태
최원경 목사	여	1983.10.20.	한국외대 영어학 졸 장신대 신대원(M.Div) 졸 현) 장신대 대학원 영성신학 과정	계약직 주3일 출근(2년) 주2일 급여 : EMS지원 주1일 급여 : 총회지원

15. 기타 주요 업무 처리

가. 제 108회 총회 결의 각 부, 위원회, 재단, 기관, 노회에 수임안건 분류 및 통지

나. 제 108회 총회 회의록 편집 및 발행

다. 춘계노회 총회본부 사업보고서 작성 및 총회 홈페이지 게재

라. 제 109회 총회 준비

마. 총회 사료관 운영 관리

바. 제증명, 문서접수 처리

사. 해외 이명 처리

아. 직원 근태 처리

자. 사회소송 대응 관련 실무 지원 (총 8건)

1) 전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인소송

2) 서울동북노회 진관제일교회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소송

3) 전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소송비용 확정 소송

4) 평양노회 천래교회 소송비용 확정 소송

5) 장현운 씨 총회 특별재심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소송

6) 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7) 함해노회 원당반석교회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차. 총회 전산 서버, 홈페이지, 전산 지원 등의 전반적 유지보수 및 관리, 노회(교회) 원격 전산 지원

- 총회 내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기업 무료판) 보급 중
- 알PDF 평생 영구버전(공공기관용) 구입/ 보급

제품명	2023년 (1년 구독/임대)	2024년 (1년 구독/임대)	비고
기존) EZPDF	1인 19,800원	1인 38,000원	3년 후 영구버전(약 12만 원)과 가격 분기점이 비슷해지므로 구독은 무의미하다 판단.

↓

제품명	기업용 (영구)	공공기관용 (영구)	비고
신규) 알PDF	약 12만 원	약 4만 원	1. 기존 사용제품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함. 2. 본래는 기업용으로 구입해야 하나, 판매업체와 1주 정도 네고하여 공공기관용으로 구입함. **기대효과** : 매년 지불할 구독료(약 2백 만원)를 10년 사용한다면 1천만 원 소요되나 공공기관용 1회 구입(약 2백만 원)으로 10년 이상 영구 사용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효과 기대

- 외부 업무가 가능하도록 MS오피스(및 클라우드) 보급함으로 외부에서 업무자료 공유 가능(보안문제로 기존 웹하드 운용 중단, 동 운용비로 구독)
- 한글2014vp 업데이트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연구 중(구입 또는 MS오피스로 전환 필요)
- 캔바(CANVA), Adobe, 영상제작 탬플릿, 영상회의 계정 구매, 각 처 공유

목차

Ⅱ. 재무회계 부문

Ⅰ. 조 직

1. 재정부 임원

부 장 : 문용식 장로(평남)

서 기 : 조한원 장로(서울강서)

회 계 : 김성현 장로(순천남)

2. 실행위원

강북지역 : 심요택 장로(서울동북) 정장시 장로(서울서) 김형태 장로(서울강북)

강남지역 : 조한원 장로(서울강서) 김창만 장로(인천동) 김덕찬 장로(인천)

중부지역 : 문용식 장로(충청) 김영태 장로(충남) 백춘길 장로(강원)

동부지역 : 권수학 장로(부산) 방재원 장로(포항남) 박중한 장로(대구동)

서부지역 : 김성현 장로(순천남) 박윤걸 장로(남원) 송원식장로(광주)

3. 산하위원회

가. 재정정책연구위원회(6명)

위원장 : 박중한

서 기 : 방재원

위 원 : 백춘길, 정장시, 송정경(총회 부회계)

전문위원 : 문병효

나. 예산결산위원회(9명)

위원장 : 문용식

서 기 : 조한원

위 원 : 김성현, 김명대, 김창만, 박윤걸, 심요택, 정성철(총회 회계)

전문위원 : 이식영

다. 세정대책위원회(5명)

위원장 : 송원식

서 기 : 김덕찬

위 원 : 권수학, 김형태

전문위원 : 김태영

세무상담 : 김진호(세무사), 유봉환(세무사), 김종철(세무사), 전진관(세무사), 박흥조(회계사)

권역별상담 : 조인주(행정사), 서창열(세무사), 조한명(회계사), 김덕수(세무사), 김대빈(세무사), 이창진(세무사), 박경일(세무사)

Ⅱ. 회 의

1. 부 회 : 1회
2. 실행위원회 : 3회
3. 임원회 : 3회
4. 재정정책연구위원회 : 1회
5. 예산결산위원회 : 1회
6. 세정대책위원회 : 1회
7. 재정정책협의회 : 1회

Ⅲ. 제 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내용

재 정 부

1. 제1차 재정부 부회의(2023. 9. 19., 명성교회)

가. 제108회기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

부 장 : 문용식 장로(평남)

서 기 : 조한원 장로(서울강서)

회 계 : 김성현 장로(순천남)

실행위원

강북지역 : 심요택 장로(서울동북) 정장시 장로(서울서) 김형태 장로(서울강북)

강남지역 : 조한원 장로(서울강서) 김창만 장로(인천동) 김덕찬 장로(인천)

중부지역 : 문용식 장로(충청) 김영태 장로(충남) 백춘길 장로(강원)

동부지역 : 권수학 장로(부산) 방재원 장로(포항남) 박중한 장로(대구동)

서부지역 : 김성현 장로(순천남) 박윤걸 장로(남원) 송원식 장로(광주)

나. 제108회 총회에 제출할 청원 건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2. 제1차 실행위원회(2023. 9. 19., 명성교회)

가. 제108회 총회에 청원 건은 다음과 같이 총회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1) 제108회기 예산안을 별책과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08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추가경정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부는 총회 위임에 의하여 추가경정 심의권을 갖는다.

3) 제108회기 총회에서 허락하는 부, 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청원에 대하여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차 임원회(2023. 10. 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 재정정책연구위원회(6명)

위원장 : 박중한

서 기 : 방재원

위 원 : 백춘길, 정장시, 송정경(총회 부회계)

전문위원 : 문병효

* 사업내용 :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 연구, 목회자 생활비 및 퇴직금 연구, 기부금 활성화 연구 등 총회의 장기적인 재정정책 연구

2) 예산결산위원회(9명)

위원장 : 문용식

서 기 : 조한원

위 원 : 김성현, 김명대, 김창만, 박윤걸, 심요택, 정성철(총회 회계)

전문위원 : 이식영

* 사업내용 : 제108회기 결산안 승인 및 제109회기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사업

3) 세정대책위원회(5명)

위원장 : 송원식

서 기 : 김덕찬

위 원 : 권수학, 김형태

전문위원 : 김태영

* 사업내용 : 총회 및 교회와 노회와 관련된 세정대책 연구, 총회 및 교회(노회)의 회계 제도연구, 교회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교육, 세정상담소 운영

가. 총회임원회 이첩 안건 처리 결과

1) 총회임원회 제107-13차 회의(2023.9.14.)에서 이첩한 "행정·재무처-11027/총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입찰 결과 보고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금 지급(2023.9.07.)"청원 건은 재정부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 계약금액 : 1억원

나. 각 부·위원회 재정청원 건 처리 결과

1) 재해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요구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9/18)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수입부) 재해구호헌금	국내재해 구호헌금	100,000,000	339,957,480	400,000,000	500,000,000
수입계		100,000,000	339,957,480	400,000,000	500,000,000
추가경정 예 산 액		7,161,600,000		400,000,000	7,561,600,000
(지출부) 재해구호비	국내재해구호비	182,226,101	179,620,000	400,000,000	582,226,101
지출계		182,226,101	179,620,000	400,000,000	582,226,101
추가경정 예 산 액		7,161,600,000		400,000,000	7,561,600,000

다. 기타안건 처리 결과

1) 제108회 총회 지속가능위원회 보고시 상영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지속가능목회지침" 영상제작비 지급 요청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목 기타특별위원회)

⇒ 금액 : 3,506,250원(부가세포함)

2) 제 108-2차 재정부실행위원회 일정

일시 : 2023년 10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하기로 하다

3) 재정부 정책협의회 일정 : 2023년 12월 7일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실시하기로 하다.

4. 제2차 실행위원회(2023. 10. 26.,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재정부 임원회 결의 추인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1) 총회임원회 제107-13차 회의(2023.9.14.)에서 이첩한 “행정·재무처-11027/총회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입찰 결과 보고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금 지급(2023.9.07.)”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재해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요구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액	집행액(9/18)	추경요청액	추가경정예산
(수입부) 재해구호헌금	국내재해 구호헌금	100,000,000	339,957,480	400,000,000	500,000,000
수입계		100,000,000	339,957,480	400,000,000	500,000,000
추가경정 예 산 액		7,161,600,000		400,000,000	7,561,600,000
(지출부) 재해구호비	국내재해구호비	182,226,101	179,620,000	400,000,000	582,226,101
지출계		182,226,101	179,620,000	400,000,000	582,226,101
추가경정 예 산 액		7,161,600,000		400,000,000	7,561,600,000

나. 총회임원회 이첩 안건 처리 결과

1) 제107회기 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재 목사가 제출한 “도농사회처-1135 / 서류이첩 결과보고(2023.6.21.)”건 중 번역비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편성해 달라는 건은 400만원만 허락하기로 하다.

다.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기로 하다.

1) 제108회기 예산안 허락 결의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2) 제108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3) 제108회기 총회에서 허락하는 부, 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청원에 대하여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허락되었으므로 실행하기로 하다.

4) 5차 총회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수양관기금 중 1억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을 재정부 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 조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5) 총회 연금재단 제 36기 예산(안)을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 조치 건은 제108회기 총회에서 허락되었으므로 연금재단에서 실행하기로 하다.

라. 재정부 임원회가 제출한 산하위원회 위원 선임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다.

1) 재정정책연구위원회(6명)

위 원 장 : 박중한

서 기 : 방재원

위 원 : 백춘길, 정장시, 송정경(총회 부회계)

전문위원 : 문병효

* 사업내용 :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 연구, 목회자 생활비 및 퇴직금 연구, 기부금 활성화 연구 등 총회의 장기적인 재정정책 연구

2) 예산결산위원회(9명)

위 원 장 : 문용식

서　　기 : 조한원

위　　원 : 김성현, 김명대, 김창만, 박윤걸, 심요택, 정성철(총회 회계)

전문위원 : 이식영

* 사업내용 : 제108회기 결산안 승인 및 제109회기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사업

3) 세정대책위원회(5명)

위 원 장 : 송원식

서　　기 : 김덕찬

위　　원 : 권수학, 김형태

전문위원 : 김태영

* 사업내용 : 총회 및 교회와 노회와 관련된 세정대책 연구, 총회 및 교회(노회)의 회계 제도연구, 교회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교육, 세정상담소 운영

마. 각 부·위원회 재정청원 건 처리 결과

1) 교육·훈련처 세목 및 산출기초 전용 요구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0/23)	전 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전용사유
특별위원회	총회 주제 연구 위원회	15,000,000	3,908,400		15,000,000	1. 연구비 예산액 : 700만원 감소액 : 200만원 조정 후 예산액 : 500만원 2. 회의비 및 제경비 예산액 : 800만원(908,400원 기 지출) 감소액 : 100만원 조정 후 예산액 : 700만원 3. 신규 : 주제선포식 경비 예산액 : 300만원(9/26일 지출) *전용사유 : 제 108회 총회 시 주제선포식을 마임으로 하여 부득이 경비가 지출됨에 따라 연구비 및 회의비 예산 에서 충당 함.
합		15,000,000	3,908,400		15,000,000	

바. 기타 안건 처리 결과

1) 재정부 정책협의회 일정 : 2023년 12월 7일(목)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믿음실)

2) 재정부 정책세미나 일정 : 2024년 2월 29일(목)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그레이스홀)

5. 제2차 임원회(2023. 11. 2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총회 임원회 제 108-2차 회의(2023.11.9.)에서 결의에 의거하여 귀 재정부에 이첩한 강제경매사건 해결비용 청원 건(총 조정금액의 약 10% 수준 3억 4천만원을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을 청원 한 건)은 3.4억을 재정지원 하기로 하되 현재 총회 재정형편상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재정부 실행위원회에 제안하여 확정하기로 하다.

6. 제3차 실행위원회(2023. 12. 7.,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재정부 임원회 결의 추인 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1) 총회임원회 제108-2차 회의(2023.11.9.) 결의에 의거하여 재정부에 이첩한 강제경매사건 해결비용 청원건(총 조정금액의 약 10% 수준 3억 4천만원을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을 청원)은 현재 총회 재정형편상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다.

나. 각 부·위원회 재정청원 건 처리 결과

1) 기타특별위원회(전도부흥위원회) 예산전용 요구 건은 460만원 요청액 중 300만원만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1/9)	전 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사유
특별 위원회	기타특별위원회 (전도부흥위원회)	4,000,000	1,270,000	3,000,000	7,000,000	위원회 회의비 증가 예정 기타특별위원회 예비비에서 전용
합계		4,000,000	1,270,000	3,000,000	7,000,000	

2) 행정·재무처 예비비 전용 요구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1/22)	전 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전용사유
(지출부) 국내 연합사업	교단 분담금	338,780,000	80,500,000	5,000,000	343,780,000	교회연합사업 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교단 분담금 배정(대한기독교교육협회)
기타 특별사업	긴급사건 대책비	20,000,000	0	80,000,000	100,000,000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 강제경매관련 해결 비용 지급
예비비	예비비	484,554,105	0	-85,000,000	399,554,105	
합계		843,334,105	80,500,000	0	843,334,105	

3) 교육·훈련처(훈련원운영위원회) 예산 전용 요구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기로 하다.

항	목	기존예산	집행액 (12/4)	전 용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전용사유
(지출부) 교육연구 개발	훈련원 후원이사회	18,000,000	455,900	-5,000,000	13,000,000	기타특별위원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 행사 청년목회세미나 지원
기타 특별위원회	다음세대 비전위원회	4,000,000	1,058,350	5,000,000	9,000,000	청년목회세미나 지원
합계		22,000,000	1,514,250	0	22,000,000	

다. 기타 안건 처리 결과

1) 사무총장실 구혜민 대리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감소액 보전금 지원 요청 건은 다음과 같이 인건비 항목 제수당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허락하기로 하다.

가) 급여 총 지급액 : 2,668,000원(기본급+수당)

나) 단축근무관련 지급액 : 2,348,000원(중식대 100%)

다) 차액 : 320,000원 중 공단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지원

2) 총회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위한 시상금 예산 청원 300만원은 인건비 항목 제수당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허락하기로 하다.

7. 제1차 재정부정책협의회(2023. 12. 7.,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예산결산위원회)

가. 제108회기 예산안 편성 일정을 확인하고, 7월~8월중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갖기로 하다.

나.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식영 장로가 제출한 제109회기 상회비 등가 조정 및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건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 그대로 받기로 하다.

1) 상회비 등급 조정 건

가) 경기노회 : 3등급 → 2등급(경기노회가 소속된 지역의 급속한 성장)

나) 여수노회 : 4등급 → 3등급(본래 4등급기준 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

다) 2등급 노회 중 대구지역 노회에서 도시지역이 포함된 대구동남노회는 1등급으로 상향 의견(노회 예산 등 확인)

2) 아동세례교인은 상회비 세례교인수 산출인원에서 제외

3)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건는 총대권 제한

가) 서울서남노회 3회기(105-107) : 서울강서노회와 분리 영향

*2노회 재정부장, 회계, 노회장 초청협의

나) 서울관악노회 2회기(106-107)

*원인 파악 후 노회장 등 면담

다) 전주노회 2회기(106-107)

*원인 파악 후 노회장 등 면담

다. 총회헌금 의무제 관련 결의사항 보완

1) 세례교인 감소에 대비한 대책 마련으로 적극 참여하는 노회에 대한 보상안 확대

→ 현재 초과분 50% 노회 지원을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회가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법.

라. 직원급여 책정 건은 추후 예산지침서 작성 시 결정하기로 하다.

마. 국내부담금과 국외부담금 및 산하기관 지원금은 제109회기 예산편성시 예산을 조정하기로 하다.

바.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 하기로 하다.[별첨]

[별첨]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h>비고</th></tr>
<tr>
<td>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4조(적용방법)
3. 일반직은 퇴직 4년 전의 기본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3년 전에는 3%, 퇴직 2년 전에는 6%, 퇴직 1년 전에는 9%를 감액하여 지급 한다.

[참고]각 직급별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감액율
<table>
<tr><th rowspan="2">직군</th><th rowspan="2">직급</th><th colspan="8">도입 시기 및 감액율</th></tr>
<tr><th>59세</th><th>60세</th><th>61세</th><th>62세</th><th>62세</th><th>63세</th><th>64세</th><th>65세</th></tr>
<tr><td rowspan="2">별정직</td><td>사무총장</td><td>-</td><td>-</td><td>-</td><td>-</td><td>기본급기준</td><td>동결</td><td>동결</td><td>동결</td></tr>
<tr><td>국장
훈련원감
총무</td><td></td><td></td><td></td><td></td><td>기본급기준</td><td>동결</td><td>동결</td><td>동결</td></tr>
<tr><td>일반직</td><td>실장
과장
대리
직원</td><td>기본급기준</td><td>3%</td><td>6%</td><td>9%</td><td></td><td></td><td></td><td></td></tr>
</table>
</td>
<td>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4조(적용방법)
3. 일반직은 퇴직 4년 전의 기본급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동결한다.

[참고]각 직급별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감액율
<table>
<tr><th rowspan="2">직군</th><th rowspan="2">직급</th><th colspan="8">도입 시기 및 감액율</th></tr>
<tr><th>59세</th><th>60세</th><th>61세</th><th>62세</th><th>62세</th><th>63세</th><th>64세</th><th>65세</th></tr>
<tr><td rowspan="2">별정직</td><td>사무총장</td><td>-</td><td>-</td><td>-</td><td>-</td><td>기본급기준</td><td>동결</td><td>동결</td><td>동결</td></tr>
<tr><td>총무</td><td></td><td></td><td></td><td></td><td>기본급기준</td><td>동결</td><td>동결</td><td>동결</td></tr>
<tr><td>일반직</td><td>실장
과장
대리
직원</td><td>기본급기준</td><td>동결</td><td>동결</td><td>동결</td><td></td><td></td><td></td><td></td></tr>
</table>
</td>
<td>대법원판결현실화</td>
</tr>
</table>

(재정정책연구위원회)

가. 상회비 및 총회 헌금 감소에 따른 대책 안

1)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 연구

가)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헌금 미납인 대형교회에 총회장님께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나) 총회헌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다.

2) 총회 및 노회, 교회의 장기적인 재정정책 연구

가) 불필요한 행사나 세미나는 자제하고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나) 철저한 감사로 다음 회기 예산 책정에 반영하기로 하다.

나. 계속연구 안

1) 제106회기 결의되어 제107회기부터 시행인 아동세례수 포함에 관한 건은 현재 총회헌금 참여율이 36.82%로 저조한 상태에서 아동세례수를 포함하여 책정액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한 회기 동안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시행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총회헌금 의무제 미납노회(3개)에 대한 대책은 납부 요청 공문 및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하다.

(세정대책위원회)

가. 교회직원 대상으로 교회세무 및 회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1)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오후 2시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 내용 : 종교인소득세 및 개정된 세법과 교회회계 세무교육

3) 강사 : 김진호 장로

나.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하기로 하다.

※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세무상담사 명단

지역명	직임	성명	노회
총회 세무상담사 (전국 및 수도권)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회계사	김종철 장로	서울남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세무사	박흥조 장로	평북
수도권지역	행정사	조인주 장로	서울관악
	세무사	서창열 장로	영등포
	회계사	유봉환 장로	서울동북
중부지역	세무사	김덕수 장로	평북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	전진관 장로	평북
부산, 경남지역	회계사	김대빈 장로	부산
광주, 전남지역	세무사	박경일 장로	전남
전주, 전북지역	세무사	이창진 장로	광주동
제주지역	세무사	김진호 장로	서울동

다. 대면강의 시행 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1) 일시 : 2024년 1월 중

2) 장소 : 제주도

3) 제주노회에서 공문 요청이 오면 강사로 김진호 장로를 파송하기로 하다.

재정정책연구위원회

1. 제1차 재정정책연구위원회(2023. 10. 26.,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제108회기 재정정책연구위원회 조직을 확인하다.

위 원 장 : 박중한

서　　기 : 방재원

위　　원 : 백춘길, 정장시, 송정경

전문위원 : 문병효

나. 제108회기 사업 계획안을 검토하다.

1)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 연구

가)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헌금 미납인 대형교회에 총회장님께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납부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나) 총회헌금 납부에 대한 안내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다

2) 총회 및 노회, 교회의 장기적인 재정정책 연구

가) 불필요한 행사나 세미나는 자제하고 온라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나) 철저한 감사로 다음 회기 예산 책정에 반영하기로 하다.

다. 계속 연구 안건을 확인하고, 자료 보완 및 연구 검토하여 12월 7일(목) 재정부 정책협의회시까지 발표하기로 하다.

1) 계속연구안건

가) 제106회기 결의되어 제107회기부터 시행인 아동세례수 포함에 관한 건은 현재 총회헌금 참여율이 36.82%로 저조한 상태에서 아동세례수를 포함하여 책정액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한 회기 동안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시행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총회헌금 의무제 미납노회(3개)에 대한 대책은 납부 요청 공문 및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하다.

세정대책위원회

1. 제1차 세정대책위원회(2023. 10. 26.,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제108회기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1) 교회세무 및 회계 교육 계획 건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오후 2시 백주년기념관

내용 : 종교인소득세 및 개정된 세법과 교회회계·세무교육

강사 : 김진호 장로(예정)

※ 김진호 장로 강사 섭외 및 일시조정 진행.

2) 재정부 정책협의회 시 발표 안건(연구)

제목 : 대면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내용 : 인터넷으로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대면강의를 활성화하기로 하다. 제주노회의 요청으로 특별히 대면강의가 진행된 적 없던 장소인 제주도에서 2024년 1월 중 김진호 장로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예산결산위원회

1.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2023. 10. 26.,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가. 제108회기 조직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위원장 : 문용식　　서기 : 조한원

위　원 : 김성현, 김명대, 김창만, 박윤걸, 심요택, 정성철(총회 회계)

전문위원 : 이식영

나. 제108회기 사업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하다.

1) 제109회기 예산안 관련 상회비 및 총회헌금 모금관련은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하다.

2)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건은 계속해서 공문 발송하기로 하다.

3) 상회비 등급 및 등가 조정은 건은 12월 정책협의회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다.

다. 제109회기 총회 예산안 및 편성절차를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1) 제109회기 예산안 편성

2) 제109회기 총회 각 부 · 위원회 결산안 승인

예산안 편성절차

1. 사무총장 – 각부서 차기 사업계획안 제출 통지(4월)
   1) 사업계획안 제출 내용 명시

⬇

2. 각부서 – 실행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안 제출(5월 중순)

⬇

3. 사업계획안 심의기구 구성(5인) : 임원(2인) + 사무총장 + 행정재무처장 + 재정부장
   1) 임원 : 서기, 회계

⬇

4. 심의기구 : 각부서 사업계획안 검토, 조정안 각부서 통지 / 재정부 전달(6월 중순)
   1) 제109회기 중점 사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주제사업을 각 부서 사업에 포함토록 함
   2) 노회 이관 가능 사업을 명시할 것 – 노회 또는 권역별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명기
   3) 총회와 노회가 실행하는 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은 총회가 노회로 완전 이관
   4) 총회 사업 중 타부서와 유사한 사업은 부서간 협동 사업으로 실행토록 함

5) 총회 사업 중 계속 사업 이외의 사업은 당해 사업연도에 종료토록 함
6) 부서가 운영하는 기금 중 사업목적이 종료된 기금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금 · 적립금은 평가하여 유사기금으로 통폐합

⬇

5. 재정부(예산결산위원회) : 예산안 지침서 각부서 통지(7월 초순)
1) 예산통합으로 인하여 각부서는 행정비를 제외한 통합된 사업 예산안 제출
2) 전입, 전출금 항목, 운영비 항목 제외

⬇

6. 각부서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재정부 제출(7월말)

⬇

7. 예산결산위원회 : 예산안 편성(8월 중순)
1) 각부서 총무 예산안 브리핑

⬇

8. 재정부 – 예산안 확정 총회 제출(9월 초순)

⬇

9. 제109회 총회 – 예산안 확정 의결(9월)

* 세부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

다. 제108회기 예결산위원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다.

1) 제2차 회의 : 2024년 7월 18일(목) 예정 – 제109회 예산지침서 작성
2) 제3차 회의 : 2024년 8월 22일(목) 예정 – 제109회 총회 예산안 편성
3) 재정부 정책협의회 :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믿음실)
4) 재정부 정책세미나 : 2024년 3월 28일(목)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그레이스홀)

제 108회기 각 노회 상회비 및 부과상회비 납입현황

(2023. 7. 1 ~ 2024. 3. 12.)

(단위 : 원)

No.	노회명	제108회기 상회비 책정액	상회비부과액 / 23.10.01.기준 (제107회기 총회헌금 부족액)	부과상회비 미납액 (제105-107회기)	책정액 합계	납입액	잔액
1	서 울	234,085,000	5,166,000	0	239,251,00	0	239,251,000
2	서 울 동	78,763,000	2,923,000	0	81,686,000	0	81,686,000
3	서울동북	61,608,000	3,953,000	0	65,561,000	0	65,561,000
4	서 울 북	61,235,000	2,624,000	0	63,859,000	31,929,500	31,929,500
5	서울강북	78,908,000	8,974,000	0	87,882,000	43,941,000	43,941,000
6	서 울 서	71,883,000	0	0	71,883,000	0	71,883,000
7	서울서북	120,202,000	0	0	120,202,000	60,101,000	60,101,000
8	제 주	45,922,000	2,936,000	0	48,858,000	0	48,858,000
9	영 등 포	141,440,000	9,301,000	0	150,741,000	50,741,000	100,000,000
10	안 양	81,721,000	4,904,000	0	86,625,000	0	86,625,000
11	경 기	68,000,000	1,656,000	0	69,656,000	37,658,000	31,998,000
12	서 울 남	58,049,000	1,983,000	0	60,032,000	0	60,032,000
13	서울관악	70,880,000	7,323,000	15,481,000	93,684,000	0	93,684,000
14	서울동남	138,393,000	6,751,000	0	145,144,000	0	145,144,000
15	서울강동	124,591,000	7,180,000	0	131,771,000	20,000,000	111,771,000
16	서울강남	179,969,000	16,260,000	0	196,229,000	0	196,229,000
17	서울서남	56,384,000	6,669,000	27,417,000	90,470,000	30,000,000	60,470,000
18	서울강서	56,806,000	2,423,000	0	59,229,000	0	59,229,000
19	부 천	43,306,000	3,685,000	0	46,991,000	23,500,000	23,491,000
20	인 천	118,295,000	5,561,000	0	123,856,000	40,000,000	83,856,000
21	인 천 동	22,715,000	1,624,000	0	24,339,000	0	24,339,000
22	충 북	31,316,000	0	0	31,316,000	31,316,000	0
23	충 청	66,635,000	3,784,000	0	70,419,000	35,209,500	35,209,500
24	충 주	13,260,000	0	0	13,260,000	6,630,000	6,630,000
25	대 전	46,655,000	0	0	46,655,000	23,327,500	23,327,500
26	대 전 서	72,379,000	1,158,000	0	73,537,000	36,768,500	36,768,500
27	충 남	27,049,000	0	0	27,049,000	13,524,500	13,524,500
28	천안아산	39,837,000	0	0	39,837,000	19,918,500	19,918,500
29	전 북	38,943,000	3,623,000	0	42,566,000	0	42,566,000
30	전 주	39,136,000	4,893,000	5,990,000	50,019,000	0	50,019,000
31	군 산	18,950,000	0	0	18,950,000	0	18,950,000
32	익 산	36,625,000	3,278,000	0	39,903,000	0	39,903,000
33	전 북 동	7,575,000	0	0	7,575,000	7,575,000	0

34	남 원	15,108,000	0	0	15,108,000	0	15,108,000
35	김 제	6,637,000	0	0	6,637,000	6,637,000	0
36	전 서	24,946,000	694,000	0	25,640,000	0	25,640,000
37	전 남	93,288,000	7,625,000	0	100,913,000	30,000,000	70,913,000
38	광 주	53,292,000	860,000	0	54,152,000	0	54,152,000
39	광주동	70,774,000	4,985,000	0	75,759,000	37,879,500	37,879,500
40	순 천	47,580,000	3,023,000	0	50,603,000	20,000,000	30,603,000
41	순천남	43,067,000	0	0	43,067,000	22,000,000	21,067,000
42	순 서	17,002,000	0	0	17,002,000	8,501,000	8,501,000
43	여 수	35,437,000	3,861,000	0	39,298,000	0	39,298,000
44	목 포	15,111,000	0	0	15,111,000	5,111,000	10,000,000
45	땅 끝	10,963,000	140,000	0	11,103,000	0	11,103,000
46	진 주	8,798,000	0	0	8,798,000	0	8,798,000
47	진주남	10,295,000	0	0	10,295,000	5,147,500	5,147,500
48	경 남	48,878,000	0	0	48,878,000	24,878,000	24,000,000
49	부 산	55,324,000	353,000	0	55,677,000	0	55,677,000
50	부산동	38,227,000	1,211,000	0	39,438,000	20,000,000	19,438,000
51	부산남	31,410,000	705,000	0	32,115,000	16,057,500	16,057,500
52	울 산	54,455,000	857,000	0	55,312,000	0	55,312,000
53	경 북	60,225,000	3,145,000	0	63,370,000	31,685,000	31,685,000
54	대구동	51,750,000	0	0	51,750,000	51,750,000	0
55	대구동남	27,885,000	274,000	0	28,159,000	14,079,500	14,079,500
56	대구서남	34,133,000	870,000	0	35,003,000	17,501,500	17,501,500
57	경 동	35,664,000	0	0	35,664,000	17,832,000	17,832,000
58	포 항	54,843,000	164,000	0	55,007,000	27,503,500	27,503,500
59	포항남	55,025,000	826,000	0	55,851,000	27,925,500	27,925,500
60	경 서	26,292,000	0	0	26,292,000	0	26,292,000
61	경 안	32,151,000	0	0	32,151,000	16,075,500	16,075,500
62	영 주	30,893,000	0	0	30,893,000	15,446,500	15,446,500
63	강 원	15,863,000	0	0	15,863,000	0	15,863,000
64	강원동	17,641,000	0	0	17,641,000	0	17,641,000
65	평 양	72,877,000	6,964,000	0	79,841,000	50,000,000	29,841,000
66	평 남	243,407,000	27,076,000	0	270,483,000	0	270,483,000
67	평 북	145,772,000	4,700,000	0	150,472,000	70,472,000	80,000,000
68	용 천	157,243,000	0	0	157,243,000	0	157,243,000
69	함 해	94,549,000	9,940,000	0	104,489,000	0	104,489,000
합 계		4,188,320,000	196,905,000	48,888,000	4,434,113,000	1,048,622,500	3,385,490,500

납입율: 23.65%

제108회기 각 노회 총회헌금 입금현황

(2023. 7. 1 ~ 2024. 3. 12)

(단위 : 원)

No.	노회명	세례교인수	총회헌금 기준액 (세례교인수×1000원)	총회헌금 납입액	총회헌금 기준차액	참여 교회수	교회 총수	참여율(%)
1	서 울	82,135	82,135,000	15,375,000	-66,760,000	15	113	13.27%
2	서 울 동	27,636	27,636,000	15,196,000	-12,440,000	22	70	31.43%
3	서울동북	21,617	21,617,000	1,621,000	-19,996,000	3	140	2.14%
4	서 울 북	21,486	21,486,000	8,144,000	-13,342,000	11	94	11.70%
5	서울강북	27,687	27,687,000	7,824,000	-19,863,000	19	170	11.18%
6	서 울 서	25,222	25,222,000	24,505,500	-716,500	27	71	38.03%
7	서울서북	42,176	42,176,000	300,000	-41,876,000	1	226	0.44%
8	제 주	21,359	21,359,000	2,272,108	-19,086,892	3	137	2.19%
9	영 등 포	49,628	49,628,000	25,876,000	-23,752,000	24	121	19.83%
10	안 양	28,674	28,674,000	6,380,000	-22,294,000	10	84	11.90%
11	경 기	31,628	31,628,000	20,059,000	-11,569,000	95	215	44.19%
12	서 울 남	20,368	20,368,000	4,985,000	-15,383,000	5	38	13.16%
13	서울관악	24,870	24,870,000	4,364,000	-20,506,000	11	61	18.03%
14	서울동남	48,559	48,559,000	0	-48,559,000	0	141	0.00%
15	서울강동	43,716	43,716,000	1,967,000	-41,749,000	10	174	5.75%
16	서울강남	63,147	63,147,000	4,833,000	-58,314,000	6	90	6.67%
17	서울서남	19,784	19,784,000	5,355,000	-14,429,000	10	137	7.30%
18	서울강서	19,932	19,932,000	30,000	-19,902,000	1	54	1.85%
19	부 천	15,195	15,195,000	0	-15,195,000	0	114	0.00%
20	인 천	41,507	41,507,000	16,705,000	-24,802,000	31	100	31.00%
21	인 천 동	8,260	8,260,000	570,000	-7,690,000	2	91	2.20%
22	충 북	18,421	18,421,000	19,570,000	1,149,000	53	173	30.64%
23	충 청	30,993	30,993,000	10,996,000	-19,997,000	53	121	43.80%
24	충 주	7,800	7,800,000	5,227,500	-2,572,500	35	84	41.67%
25	대 전	16,370	16,370,000	9,804,000	-6,566,000	18	115	15.65%
26	대 전 서	25,396	25,396,000	16,340,000	-9,056,000	40	203	19.70%
27	충 남	12,581	12,581,000	0	-12,581,000	0	160	0.00%
28	천안아산	14,486	14,486,000	0	-14,486,000	0	101	0.00%
29	전 북	18,113	18,113,000	300,000	-17,813,000	2	123	1.63%
30	전 주	18,203	18,203,000	1,788,000	-16,415,000	8	153	5.23%
31	군 산	8,814	8,814,000	0	-8,814,000	0	67	0.00%
32	익 산	17,035	17,035,000	6,189,000	-10,846,000	25	109	22.94%
33	전 북 동	4,456	4,456,000	5,695,000	1,239,000	21	64	32.81%

34	남 원	8,887	8,887,000	0	-8,887,000	0	97	0.00%
35	김 제	3,904	3,904,000	3,379,000	-525,000	10	41	24.39%
36	전 서	14,674	14,674,000	0	-14,674,000	0	97	0.00%
37	전 남	33,923	33,923,000	6,762,000	-27,161,000	14	291	4.81%
38	광 주	19,379	19,379,000	4,297,000	-15,082,000	12	133	9.02%
39	광 주 동	25,736	25,736,000	11,498,000	-14,238,000	37	252	14.68%
40	순 천	22,130	22,130,000	11,602,108	-10,527,892	38	203	18.72%
41	순 천 남	20,031	20,031,000	16,125,000	-3,906,000	102	169	60.36%
42	순 서	10,001	10,001,000	7,655,000	-2,346,000	47	125	37.60%
43	여 수	20,845	20,845,000	8,542,000	-12,303,000	27	208	12.98%
44	목 포	8,889	8,889,000	0	-8,889,000	0	131	0.00%
45	땅 끝	6,449	6,449,000	4,427,000	-2,022,000	20	114	17.54%
46	진 주	5,175	5,175,000	0	-5,175,000	0	111	0.00%
47	진 주 남	6,056	6,056,000	12,137,000	6,081,000	41	101	40.59%
48	경 남	22,734	22,734,000	10,272,000	-12,462,000	27	188	14.36%
49	부 산	19,412	19,412,000	13,070,000	-6,342,000	32	137	23.36%
50	부 산 동	13,413	13,413,000	7,188,000	-6,225,000	12	89	13.48%
51	부 산 남	11,021	11,021,000	8,236,000	-2,785,000	13	66	19.70%
52	울 산	19,107	19,107,000	16,983,000	-2,124,000	37	155	23.87%
53	경 북	21,900	21,900,000	10,305,000	-11,595,000	22	160	13.75%
54	대 구 동	18,818	18,818,000	12,081,000	-6,737,000	25	159	15.72%
55	대구동남	10,140	10,140,000	8,394,360	-1,745,640	21	87	24.14%
56	대구서남	12,412	12,412,000	2,745,000	-9,667,000	11	91	12.09%
57	경 동	16,588	16,588,000	18,302,000	1,714,000	44	152	28.95%
58	포 항	19,243	19,243,000	20,689,000	1,446,000	73	157	46.50%
59	포 항 남	19,307	19,307,000	6,604,300	-12,702,700	25	101	24.75%
60	경 서	15,466	15,466,000	17,549,000	2,083,000	72	175	41.14%
61	경 안	14,954	14,954,000	22,542,000	7,588,000	135	198	68.18%
62	영 주	14,369	14,369,000	26,335,800	11,966,800	100	166	60.24%
63	강 원	9,331	9,331,000	1,250,000	-8,081,000	2	98	2.04%
64	강 원 동	10,377	10,377,000	10,377,000	0	24	102	23.53%
65	평 양	25,571	25,571,000	6,632,000	-18,939,000	18	188	9.57%
66	평 남	85,406	85,406,000	7,206,000	-78,200,000	20	153	13.07%
67	평 북	51,148	51,148,000	14,269,000	-36,879,000	31	275	11.27%
68	용 천	55,173	55,173,000	10,173,216	-44,999,784	52	250	20.80%
69	함 해	33,175	33,175,000	7,026,000	-26,149,000	22	342	6.43%
70	기 타		0	2,747,648	2,747,648	8	0	0.00%
합 계		1,602,398	1,602,398,000	589,672,540	-1,012,725,460	1,735	9,476	18.31%

⊙ 제108회기 총회헌금 납입안내

제1차 마감일 : 2024. 6. 30.

제2차 마감일 : 2024. 8. 31.

목차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Ⅰ. 국내선교부

1.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3. 9. 19- 2024. 3. 10)

가. 총회 주제사업

1) 제108회기 시도별 치유세미나 및 연합부흥성회

지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
경기	10.10(화)	거룩한빛광성교회	170명
강원	10.20(금)	춘천동부교회	350명
대구	10.23(월)	대구충성교회	650명
충남	10.24(화)	대전반석교회	310명
경북	10.26(목)	포항동부교회	1,200명
부산·이북	10.27(금)	부산애광교회	300명
전남	10.30(월)	광주서림교회	300명
전북	10.31(화)	이리신광교회	350명
서울강북·이북	11.2(목)	진광교회	300명
경남	11.3(금)	울산사랑선교교회	400명
서울강남	11.7(화)	평촌교회	497명
제주	11.9(목)	제주영락교회	330명
충북	11.10(금)	청주서원경교회	450명

나. 전체사업

1) 제108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정책협의회 : 2023. 12. 5(화)

장소 : 대전 선창교회 참석 : 53개 노회 137명

내용 : 가) 제108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정책 및 노회와의 협력 사항
(문장옥 목사,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나) 주제강의. 복음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 이론과 실제
(김윤태 목사, 대전신학대학교, 신성교회)

다) 사례1.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와 마을 만들기(박병주 목사, 송학대교회)

라) 사례2. 교회의 연합, 새로운 형태의 교회(전종규 목사, 봉계교회)

다. 전도분과

1) 총회 전도학교 교무위원회 : 1회

내용 : 전도학교 훈련교재 신간 출판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하다.

2) 전도및교회성장연구위원회 : 1회

내용 : 총회 산하 교회들의 전도 현황의 필요성과 전도정책 연구를 위한 설문을 작성하여 노회 배포하기로 하다.

라. 개척선교 분과

1) 교회개척훈련정책연구위원회 : 2회

내용 : 가) 선교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마련 및 목회박람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4월 29일(월)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나) 새로운 유형의 교회개척 정책 마련을 위해 영국 선교형교회를 탐방하기로 하다.

2) 선교형교회운영위원회 : 1회

내용 : 선교형교회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축하기로 하다.

마. 청소년선교 분과

1) 학원선교주일 (2023. 11. 5 주일) : 총회장 목회서신 배포

바. 직장, 병원의료선교 분과

1) 직장선교주일 (2023. 10. 15 주일) : 총회장 목회서신 배포

2) 제108회기 직장선교세미나 '일과 소명' 온라인세미나 : 2023. 1. 29(월), 온라인(zoom)

참석 : 35명

내용 : 가) 일과 소명에 대한 교회론(한국일 교수)

나) 성경공부 진행 및 매뉴얼 적용 방법(이철규 장로)

다) 교재 활용법(이효재 목사)

라) 교회 성경공부 적용 사례발표(오만종 목사)

3) 총회 원목협의회 임원회 : 2회

내용 : 제108회기 원목협의회 병원의료선교 워크숍 및 총회 준비를 위한 세부사항 논의하다.

사. 문화선교 분과

1) 총회인터넷선교후원회 회의 : 1회

내용 : 온라인 사역에 대한 발제와 정책 제언 및 Chat GPT 활용법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다.

2) 제108회기 총회인터넷선교후원회 정책워크숍 : 2024. 1. 21(주일)-23(화), 제주도

내용 : 온라인 선교 사역에 대한 발제와 정책토론

3) 총회스포츠선교회 임원회 : 1회

내용 : 가) 분과조직에 배구분과를 신설하기로 하다.

나) 제1회 총회장배 목사 장로 배구대회를 2024년 4월 중 여수지역에서 여수노회 후원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아. 목회개발 분과

1) 자비량목회연구위원회 : 1회

내용 : 제107회 총회 시 자립대상교회에 한 해 자비량목회가 허용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수임 안건에 대해 ① 노회 자비량 목회 지침 및 안내 매뉴얼 ② 자비량목회자 교육과정을 제108회 총회 시 연구 결과로 보고하였으나 노회에 홍보가 되지 않았기에 봄 노회를 기점으로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다.

2) 예배학교운영위원회 : 1회

내용 : 제108회기 총회예배학교 세미나를 '성 금요예배'를 주제로 하여 부산동신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3) 제108회기 총회 예배학교 '성 금요 예배 세미나' : 2024. 2. 29(목) 11:00

장소 : 부산 동신교회 은혜홀

주제 : 성 금요예배, 그 새로운 이해와 교회적 실제

내용 : 가) 성 금요예배, 십자가의 절정에서 부활의 새벽으로

나) 성 금요예배 시연 : Tenebrae 예배 :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예배

다) 질의응답

자. 상담 및 영성분과

1) 총회상담학교 협력 심리상담센터 협약식 : 2023. 12. 8(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용 : 총회 상담학교와 권역별 11개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 기도학교 교무위원회 : 2회
내용 : 108회기 총회기도학교를 총회 주최, 주관으로 봄에 진행하기로 하다.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 11일 - 7월 4일)

가. 총회 주제사업

1) 2024 전도부흥운동 시상식 : 2023. 7. 4(목) 10:30

나. 개척선교 분과

1) 제31기 총회교회개척훈련 제1과정 : 2023. 4. 2(화)-5(금)

2) 제31기 총회교회개척훈련 제2과정 : 유형별 교회탐방

일 시	장소 / 목회자	유 형
4/23(화)	그린나래교회/승향아 목사	공간과 문화
4/25(목)-26(금)	주복교회/서범석 목사	영성공동체
4/29(월)	선교형교회컨퍼런스	다양한 목회 및 자비량 사역
4/30(화)	도담교회/오수진 목사	목회의 실제와 양육
5/2(목)	사랑인교회/이상준 목사 부천아름다운교회/양황승 목사	개척과 전도 전도와 양육

3) 제31기 총회교회개척훈련 전체탐방 및 수료식 : 2024. 5. 16(목) 13:30
장소 : 천안주복교회(예정)

4) 선교형교회컨퍼런스 : 2024. 4. 29(월) 17:00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다. 직장 및 병원의료선교 분과

1) 제108회기 총회 원목협의회 병원의료선교 현장 탐방 및 워크숍 : 2024. 4. 22(월)-25(목)
장소 : 일본 오사카(요도가와 기독교병원 방문 외)

라. 상담 및 영성분과

1) 총회상담학교 '노회로 찾아가는 감정세미나' : 2023. 2. 29(목) 13:00
장소 : 진주노회 사천읍교회

2) 제108회기 총회 기도학교 : 2024. 3. 18(월)-19(화)
장소 : 천안 케노시스수도원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가. 노회 내 신설교회 개척 목회자에 대하여

1) 총회 교회개척훈련을 반드시 수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 교회개척훈련을 받는 목회자에 대한 등록비와 교회탐방, 수료식 등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정 목회 프로그램 및 컨설팅, 2과정 유형별 탐방, 전체탐방 및 수료식)

3) 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개척을 준비할 때에 무임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개척훈련을 수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91회 총회 결의 : “지교회 설립(가입) 허락 시 설립되는 지교회의 담임교역자는 반드시 총회교회개척훈련 과정을 이수한 분으로 한다.)

나. 제107회 총회 시, 자립대상교회에 한해 자비량목회가 허용되어, 제108회기 총회 시 노회 자비량목회 지침 및 안내 매뉴얼을 보고하였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국내선교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 노회와 총회의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노회 국내선교부 상임총무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로 사역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소년, 직장, 병원 사역자들에 대한 노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 새롭게 발간 예정된 총회 전도학교 훈련교재를 각 노회와 지교회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총회전도부흥위원회와 함께 전도를 활성화해서 부흥하기 위해 전도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와 지교회의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도로 부흥한 각 지교회들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노회와 총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 각 노회가 제출할 전도부흥운동 결과보고서는 총회 국내선교부 홈페이지 공문양식자료와 노회에 발송된 접수 공문을 참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총회 통계위원회에서 수집할 2024 통계 입력자료를 통해 제108회기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시상에 반영되오니, 통계기간 내에 반드시 교세통계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되는 사항은 노회를 통해 총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제출규격, 양식은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www.pck.or.kr) 홈페이지 내 전도부흥 시상 제출양식 다운로드 가능, 전도한 숫자를 보고할 시 교회학교와 장년들을 구분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군경교정선교부

1.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3. 9. 19- 2023. 3. 10)

가. 전체사업

1) 제108회기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정책협의회 : 2023. 12. 7(목)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참석 : 45개 노회 127명

내용 : 가) 제108회기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정책 및 노회와의 협력과제
(문장옥 목사,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나) 주제강의. 주여, 열방을 치유하소서(조용선 목사, 온무리교회)

다) 사례발표1. 성경적 교정회복 치유(용서)사역
(변상해 목사, 벧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서울청교정연합회 수석부회장)

라) 사례발표2. MZ세대의 선교전략과 마음치유(대령(진)김택조 목사, 군종목사단 단장)

나. 군선교

1) 제108회기 군선교사역자 현황(2024. 03. 10. 현재)

가) 군종목사 : 53명 나) 군종사관후보생 : 40명 다) 군선교사 : 75명

2) 2024년도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준비위원회

주관 : 서울강남(서부)권역 8개 노회(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서남, 서울강서, 부천, 인천, 인천동)

준비회의 : 1차 회의 2023. 11. 16(목)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차 회의 2023. 12. 15(금)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차 회의

3) 제108회기 총회 군종목사수련회 준비위원회
주관 : 서울강북권역 7개 노회(서울, 서울동, 서울동북,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
준비회의 : 1차 회의 2023. 11. 17(금)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차 회의 2024. 1. 30(화)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차 회의

4) 2023년 은퇴 군선교사 위로예배 : 2024. 1. 8(월)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은퇴군선교사(11명) : 최정화 목사(서울), 이창희 목사(서울북), 이금순 목사(서울서북),
김기문 목사(영등포), 문충도 목사(서울강남), 강성동 목사(충남), 김태영 목사(전북),
김광훈 목사(광주동), 김용선 목사(부산동), 김동영 목사(강원), 송석규 목사(강원동)
총회장 공로패 전달 : 4명
예총공 제108-9호 강성동 목사 예총공 제108-10호 김기문 목사
예총공 제108-11호 김광훈 목사 예총공 제108-12호 김용선 목사

5) 2024년도 총회 사랑의온차 전달식 : 2024. 1. 11(목)
장소 : 수도방위사령부
후원 : 총회임원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영락교회
내용 : 위문금 2,000만원 전달

6) 2024년도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 : 2024. 3. 9(토) 14:00, 연무대교회
주관 : 서울강남(서부)권역 8개 노회(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서남, 서울강서, 부천, 인천, 인천동)
세례인원 : 1,728명
설교 : 김의식 목사(총회장)

7) 총회 군선교사회 사업
가) 군선교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군선교현장방문) : 2023. 11. 2(목)
장소 : 17사단 전차대대 승전교회(군선교사 박선규 목사 시무)
나) 제108회기 총회 군선교사 수련회 및 워크숍 : 2024. 3. 4(월)-6(수)
장소 : 제주도 이스턴호텔
내용 : (1) 개회예배(김영철 목사, 총회 군경교정선교부장)
(2) 사례발표 : 자비량 사역을 위한 제언(이용호 목사, 군선교사회 회계)
(3) 총회 군선교사 지침 설명

8) 총회 군종사관후보생회 사업
가) 군종사관후보생 소집교육 : 2024. 2. 14(수)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강사 :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 소령 성기우 목사(육군본부교회)
나) 2024년도 군종목사 임관예정자 소집교육 : 2024. 2. 14(수)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년관

강사 : 대위 이철 목사(시온교회), 대위 안재훈 목사(기드온교회)

임관예정자 : 윤황섭 목사

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연합사업

가) 한국군종목사파송교단 총무단 간담회 : 2023. 12. 5(화)

장소 : 더 플라자호텔(세븐스퀘어)

나) 2024년 군목파송교단장 신년하례회 및 한국교회 연합세례식 : 2024. 1. 13(토)

장소 :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참석 : 총회장 김의식 목사,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문장옥 목사

내용 : 1부. 군선교신년하례예배(설교 : 총회장 김의식 목사)

2부. 육군훈련소교회 70주년 축하

3부. 한국교회 연합세례식(세례인원 : 1,577명)

다) 한국교회연합 조찬예배 : 2024. 2. 14(수)

장소 : 여전도회관 리루이시홀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설교 : 총회장 김의식 목사

다. 경찰·교정·소방선교

가. 교정선교

1) 총회교정선교협의회 임원 워크숍 : 2023. 11. 9(목)-10(금)

장소 : 여수 주사랑교회

내용 : 제108회기 사업논의 및 교정선교활성화 방안 논의

2)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 및 워크숍 준비회의 : 2023. 12. 20(수)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주최 : 아가페 재단 및 소망교도소

내용 : 소망교도소 13주년 기념식 및 소망교도소와의 워크숍 사전 논의

3) 총회 교정선교협의회 전체임원회 : 2024. 2. 6(화) 11:30

장소 :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교정워크숍 및 정기총회 일정을 논의하다.

나. 경찰선교

1) 총회경목전체임원회 : 2023. 9. 25(월)

장소 : 포항제4교회

내용 : 경목워크숍 일정논의

2) 총회 경찰교정선교주일 : 2023. 11. 12(주일)

내용 : 총회장 목회서신 배포, 총회 부서 홈페이지, 기독공보 기사(홍보)

3) 경목협의회 워크숍 : 2023. 11. 13(월)-14(화)

장소 : 군산중동교회 및 군산일대

내용 : 경목활성화와 총회 경찰선교 방안연구 워크숍

4) 총회 경목협의회 연석회의 및 시무식 : 2024. 1. 9(화)

장소 : 대전반석교회

내용 : 총회 경목협의회 시무식 및 사업논의

다. 소방선교

1) 소방선교협의회 임원회 :2024. 1. 25(목)

장소 : 조치원소망교회

내용 : 가) 제108회기 사업논의 및 후원회와의 협력 논의

나) 소방워크숍 및 수련회 세부사항을 논의하다.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 11일 - 7월 4일)

가. 군선교분과

1) 2024년도 군종장교 임관

입영일 : 2023. 3월말 /임관식 : 2024. 6월말

임관예정자 : 윤황섭 목사

2) 제108회기 총회 군종목사 수련회 및 워크숍 : 2024. 5. 27(월)-30(목)

장소 : 일본 가루이자와(도쿄인근)

주관 : 서울강북권역 7개 노회(서울, 서울동, 서울동북,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

3) 군선교주일 : 2024. 6. 16(주일)

4) 제108회기 총회 군종사관후보생 수련회 : 2024. 6. 24(월)-26(수)

장소 : 미정

5) 제108회기 총회 군선교사회 정기총회 : 2024. 7. 1(월)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나. 경찰·교정·소방선교분과

1) 제108회기 69개 노회 임원대상 총회교정선교 워크숍 : 2024. 4. 9(화)

장소 : 여주 소망교도소

2) 소방선교후원회 현장방문 : 2024. 4. 25(목)

장소 : 영종도 119특수대응단

3) 제108회기 교정선교협의회 워크숍 및 총회 : 2024. 6. 10(월)~11(화)

장소 : 대구교도소 및 라온제나호텔

4) 총회 경목협의회 경목대회 및 정기총회 : 2024. 6. 18(화)

장소 : 담양주산교회

5) 소방선교협의회 워크숍 및 총회 : 2024. 7. 1(월)~2(화)

장소 : 미정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가. 군종사관후보생(학부 4학년부터)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목사고시 합격자에 대하여 목사안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나. 제108회기 총회군선교주일(2024.6.16.)에 노회소속 군선교사역자(군종목사, 군선교사)를 초청하여 노회 소속 지역교회에서 설교 및 군선교 보고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회교정선교협의회 워크숍 및 총회가(2024년 6월10일~11일)있습니다. 노회 교정교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총회경목협의회 경목대회 및 정기총회(2024년 6월18일)가 있습니다. 노회 경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회소방선교협의회 워크숍이(2024년 7월1~2일)있습니다. 노회 소방위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노회 산하 경찰서, 교정시설, 소방서에 경목, 교정교역자, 소방목사 등 전문 교역자를 파송해주시길 바랍니다.

Ⅲ. 교회동반성장위원회

1.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3. 9. 19- 2024. 3. 10)

가. 제108-1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2023. 10. 24(화)

장소 : 대전제일교회

내용 : 1) 위원장으로 윤택진 장로(대전), 서기로 김상종 목사(제주), 회계로 김덕성 장로(부산)를 선출하다.

2) 교회동반성장사업 특별지원을 명성교회와 안산제일교회에 2023년 지원금을 준하여 요청하기로 하고, 의당기념사업회에도 2024년 특별지원금을 요청하기로 하다.

3) 제108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는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대전제일교회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4) 교회동반성장사업에 대한 정책, 사업방향, 노회 간 지원연결 및 조정, 세부 지침을 연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소위원회 연구위원은 연구의 지속성을 위해 지난 회기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나. 제108-1차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회 : 2023. 11. 22(수)

장소 :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내용 : 1)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다.

가) 김상종 목사(제108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서기)

나) 김승호 교수(제108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영남신학대학 교수)

다) 최상도 목사(제107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호남신학대학 교수)

라) 조주희 목사(제104회기 서기, 제105~107회기 전문 및 정책연구위원)

마) 이만식 목사(제105~107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연구위원)

바) 김종성 목사(제106~108회기 교회동반성장위원)

2)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 3차3개년(2022-2024)시 자립전환 요청을 한 충북노회, 순서노회, 경안노회 3개 노회와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원 및 자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08회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간담회를 가지기로 하다.

3)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는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립대상교회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로 구성

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다. 제108회기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협의회 : 2023. 12. 19(화) 11:00

장소 : 대전제일교회 참석 : 55개 노회 165명

내용 : 1) 개회예배(설교 : 김동엽 목사, 증경총회장)

2) 표창패 수여 : 경서노회 감사패 수여 : 서울서노회, 영등포노회

3) 2023년 교회동반성장사업 보고 및 2024년 교회동반성장사업(3차3개년) 지침 설명
(문장옥 목사, 국내와군특수선교처 총무)

4) 강의1.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5) 강의2. 교회동반성장사업 평가와 방향 제시
(최상도 교수,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정책연구위원)

6) 강의3. 부산지역 3개 노회 연합사역 – 자비량목회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나재천 목사, 前 부산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서기)

라. 제108-1차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회의 : 2024. 1. 16(화)

장소 : 국내와군특수선교처 회의실 참석 : 5명

내용 : 1) 교회동반성장정책연구소위원장으로 조주희 목사(평양노회, 성암교회), 서기로 김종성 목사(충북노회, 청주남교회)를 선임하다.

2) 총회 교회동반성장사업(2016-2024, 3차3개년)에 대한 각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 시 나온 의견을 수렴한 종합평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 강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하다.

3) 교회동반성장사업 후속 장기정책 연구 및 논의를 위해 2024. 2. 22-23(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갖기로 하다.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 11일 – 7월 4일)

가. 제108회기 4개 권역별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 자립대상교회 교육

1) 중부권 – 일시: 2024. 5. 7(화) 11:00 장소: 서원경(청주)

2) 동부권 – 일시: 2024. 5. 14(화) 11:00 장소: 산성교회(부산)

3) 서부권 – 일시: 2024. 5. 21(화) 11:00 장소: 광주유일교회(광주)

4) 수도권 – 일시: 2024. 5. 23(목) 11:0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울)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가. 제108회기 4개 권역별 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과의 간담회와 자립대상교회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립대상교회 1회 의무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노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된 3차3개년(2022-2024/3년차)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교회동반성장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총회전도부흥위원회

1. 제107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3. 9. 19- 2023. 3. 10)

가. 전도부흥위원회 : 2회

내용 : 1) 위원장으로 김준영 목사(목포), 서기로 박능팔 목사(평양), 회계로 김채옥 장로(서울강남)를 선출하다.

2) 2024 전도부흥운동을 각 노회별로 적극 동참하도록 위원들이 각자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하다.

가) 전도기간 : 제108회 총회 이후 ~ 2024. 6. 16(주일)

나) 전도부흥사례 모집 접수기간 : 2024. 6. 17(월)~2024. 6. 21(금)

다) 전도부흥운동 시상식 : 2024. 7. 4(목)

3) 위원회 5개 권역 방문의 건은 각 지역별로 방문하여 전도부흥운동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나. 2024 전도부흥운동 권역별 설명회

가) 서울강북권역 : 2023. 12. 13.(수) 07:00

내용 : 서울강북권역 8개 노회장 협의회 방문 후 전도부흥운동 취지 설명 및 참여 독려

나) 서울강남권역

일시 : 2024. 1. 30(화) 장소 : 서울강서, 부천, 인천, 인천동

일시 : 2024. 1. 31(수) 장소 :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다) 서부권역

일시 : 2024. 1. 22(월) 장소 : 순천

일시 : 2024. 1. 23(화) 장소 : 광주동, 목포

일시 : 2024. 1. 24(수) 장소 : 광주, 땅끝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 11일 - 7월 4일)

가. 전도부흥운동 후속조치를 위한 권역별 세미나

나. 2024 전도부흥운동 시상식

일시: 2024. 7. 4.(목) 11:00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예정)

3. 노회에 건의, 당부할 사항

가. 제108회기에 총회 주제사업으로 시행한 2024 전도부흥운동에 적극 동참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춘계노회 이후 총회로 성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회전도부흥위원회와 함께 전도를 활성화해서 부흥하기 위해 전도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와 지교회의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도로 부흥한 각 지교회들의 사례들을 발굴해서 노회와 총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 각 노회가 제출할 전도부흥운동 결과보고서는 총회 국내선교부 홈페이지 공문양식자료와 노회에 발송된 접수 공문을 참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총회 통계위원회에서 수집할 2024 통계 입력자료를 통해 제108회기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시상에 반영되오니, 통계기간 내에 반드시 교세통계를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되는 사항은 노회를 통해 총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제출규격, 양식은 총회 국내와군·특수선교처(www.pck.or.kr) 홈페이지 내 전도부흥 시상 제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전도한 숫자를 보고할 시 교회학교와 장년들을 구분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1.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2023. 9. 19- 2024. 3. 10)

가. 제108회 총회 '순교자기념주일' 명칭 변경 허락 결의에 따라 '순교·순직자기념주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전서노회/창북교회 : 故 이광우 집사 순직자 지정예식(2023.11.18.)

다. 대구동노회/온막교회 : 故 이창기 집사 순교자 추서 청원에 대한 조사 활동.

라.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및 해설서 개정 연구 활동.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 3. 11 - 7. 4)

가. 익산노회/대장교회 : 故 박도현 집사 제2호, 박병욱 전도사 제3호 순교자 추서 예식

나. 대구동노회/온막교회 : 故 이창기 집사 순교자 추서 논의

다. 서울노회, 서울동남노회 : 순직자 지정 청원 건 조사 활동.

목차

I.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 실시사업 보고(2023. 9. 22 ~ 2024. 3. 10)

1. 전체회의

가. 실행위원회

1) 108-1차 : 2023. 9. 21. (목) / 명성교회 지하1층
2) 108-2차 : 2023. 11. 9.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사랑홀
3) 108-3차 : 2024. 1. 11. (목) / 신림중앙교회
4) 108-4차 : 2024. 2. 20. (화) / 대전노회 회관 2층 회의실

나. 임원회

1) 108-1차 : 2023. 10. 5. (목) / 화상회의
2) 108-2차 : 2023. 10. 6. (금) / 화상회의
3) 108-3차 : 2023. 10. 18. (금) / 화상회의
4) 108-4차 : 2023. 10. 30. (월) / 세계선교부 사무실
5) 108-5차 : 2023. 11. 2. (목) / 유선회의(SNS)
6) 108-6차 : 2023. 11. 9. (금) / 화상회의
7) 108-7차 : 2023. 11. 15. (수) / 유선회의(SNS)
8) 108-8차 : 2023. 12. 1. (금) / 유선회의(SNS)
9) 108-9차 : 2023. 12. 14. (금) / 유선회의(SNS)
10) 108-10차 : 2023. 12. 22. (금) / 유선회의(SNS)
11) 108-11차 : 2024. 1. 9. (화) / 세계선교부 사무실
12) 108-12차 : 2024. 2. 19. (월) / 대전인터시티호텔 라운지

다. 분과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1) 선교사인사위원회(1차) : 2023.11.23.(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층 회의실
2)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1차) : 2024.1.9.(화)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사랑실
3) 타문화선교위원회(1차) : 2024. 2.15.(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층 회의실

2. 전체사업

가. 제108회기 총회세계선교부 정책협의회

일시 : 2024.2.20.(화) 오전11시 장소 : 대전노회 회관

나. 선교사 훈련

1) 권역장훈련

일시 : 2023.9.17.(일)~19.(화) 장소 : 강화도 한우리교회 수양관

참석자 : 조병래(대만), 오태근(캄보디아), 홍두석(방글라데시), 최진선(러시아), 변성유(괌), 김정호(탄자니아), 박기창(엘살바도르)

2) 제108-1차(72기)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

일시 : 2023.10.9.(월)~11.10.(금) 장소 : 홍익교회 큰숲비전센터

참석자 : 훈련생 17명 + MK14명

3) 견습선교사훈련 및 파송식

일시 : 2023.12.11.(월)~15.(금) 장소 : 장신대,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4) 동남아권역 해외한인목회자를 위한 영입선교사훈련

일시 : 2023.12.04.(월)~08(금) 장소 : 인도네시아

다. 선교활성화

1) 선교현장지원

가) 선교포럼 및 세미나

나) 총회 언권회원 선교사 및 근속선교사 지원

다) 선교사 경조 지원: 107회 총회 이후 경조사 지원 32건 (부모별세 및 자녀결혼)

2) 산하기관지원

가) 선교연구위원회 회의

나) MK사역위원회 재입국캠프

일시: 2023.2.8.(수)~9.(목) 장소: 가평 필그림하우스

다) MK 장학금 지원

라. 선교대회

1) 아프리카 권역선교대회

일시 : 2023.10.10.(화)~13.(금)/3박4일 장소 : 탄자니아 잔지바르 동궤호텔

참석대상 : 아프리카권역 PCK파송선교사 75명

강사 : 주승중목사(주안교회), 안광복목사(청주상당교회), 노영상목사(외항선교회)

출장자 : 총무 홍경환목사

마. 다문화선교

1) 다문화선교정책 연구

2) 외국인근로자 선교후원회 및 샬롬중국동포센터 지원

3) 이주민선교협의회 지원

바. 대외협력사업

1) 엔코위후속모임-오피니언리더 교단선교실무자대표모임

일시: 2023.10.2.(월)~4.(수) 장소: 강릉 SKY BAY HOTEL

2) 한국교단선교실무자협의회

일시 : 2023.11.20.~22 장소 : 대전

사. 선교관 관리 및 운영

1) 총회세계선교부 선교관(총9개)

- 총회(2개), 상계동(2개), 행신동(4개), 마석(1개)

2) 외부 협력 선교관(총14개)

- 장신대(4개), 경천교회(1개), 성심교회(1개), 개화동교회(1개), 곤지암교회(1개), 화도광성교회(1개), 인천교회(1개), 광동교회(3개)

3) 선교관 필요시 구입 및 시설 관리 등

아. 제108회기 총회파송선교사 현황보고

1) 제108회기 상반기 견습선교사 파송(4개국, 7명)

성 명	소 속	파송국가	시니어 선교사
김기진	장신대 신대원1	호 주	김찬일
김선재	장신대 신대원3	케 냐	김옥실
김용한	장신대 신대원2	호 주	진기현
박정원	장신대 신대원3	케 냐	김옥실
신재승	장신대 신대원3	케 냐	이은용
한선민	장신대 신학과4	멕 시 코	최남영
황규석	장신대 신대원3	스 페 인	이만희

2) 제108회기 상반기 선교사 파송(12개국, 21가정, 41명)

파송일	선교사명	파송국가	소속교회(노회)	구분
2023.7.12.(수)	정문교/이선미	인도네시아	진성교회(서울북)	타문화권선교
08.20.(일)	이준희/박소은	슬로베니아	광릉내교회(서울동북)	타문화권선교
10.22.(일)	황윤규/김윤하	부르키나파소	대전신성교회(대전서)	해외한인목회
10.29.(일)	김진택/정미라	베트남	수원성교회(경기)	타문화권선교
11.14.(화)	우동일/김혜경	인도네시아	인천교회(인천동)	타문화권선교
11.14.(화)	박원국	캄보디아	세계로교회(서울동남)	타문화권선교
11.14.(화)	지형습/정선영	인도네시아	동교동교회(서울서)	타문화권선교
11.26.(일)	양인모/권은비	몽골	대구제일교회(경북)	타문화권선교
11.29.(수)	진주영/차은지	튀르키예	부산산성교회(부산)	타문화권선교
12.03.(일)	천주성/최은총	인도네시아	상원교회(서울북)	타문화권선교
12.10.(일)	이현승/박미영	키르기스스탄	왕궁제일교회(전북)	전문인선교
12.14.(목)	권기원/이은미	영국	버밍엄예수비전교회	해외한인목회
12.14.(목)	오은호/서재연	영국	창조교회(영등포)	해외한인목회
12.19.(목)	한민/이건미	싱가포르	싱가폴생명의말씀교회	해외한인목회
12.19.(목)	황원/강소애	싱가포르	싱가폴생명의말씀교회	해외한인목회
12.19.(목)	문호주/정지은	싱가포르	싱가폴생명의말씀교회	해외한인목회
2024.01.07.(일)	석진광/김보미	인도	구미시민교회(경북)	타문화권선교
01.14.(일)	남궁찬/장은희	인도네시아	여천제일교회(여수)	타문화권선교
01.18.(목)	김은경/범환균	미얀마	노은중앙교회(대전서)	해외한인목회
01.21.(일)	이홍석/김슬기	인도네시아	수색교회(서울서북)	해외한인목회
01.28.(일)	고성탁/안시내	캄보디아	점촌시민교회	해외한인목회

II.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계획(2024. 3. ~ 2024. 8.)

일 정	내 용
3월	제108-5차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경산비전교회)
	이슬람선교 및 단군상대책위원회 세미나
	총회세계선교대학 (영락선교훈련학교, 서울동노회, 언더우드선교훈련원, 한일장신대학교)
	디아스포라이주민선교위원회 회의
4월	총회세계선교대학(수원성교회, 장신대, 대구경북협의회)
	견습선교사훈련
5월	제108-2차(73기) 총회파송선교사 선교훈련(5.16~6.12)
	동아시아권역대회(대만)
	제108-6차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전주새힘교회)
	다문화선교 정책세미나
	여성선교사대회(베트남 호치민)
	총회세계선교대학(장신대)
6월	제108회기 후원단체협의회 정기총회
7월	제108-7차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부산광진교회)

III. 노회 건의 및 당부 사항

교회와 총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각 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당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총회파송선교사 훈련 안내

제108-4차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2024.2.20.) 결의에 따라 2025년부터 총회파송선교사훈련은 년 1회(봄)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75회 총회에서 선교사의 파송은 노회나 지교회, 선교단체가 하지 않고 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총회헌법 제5장 제27조 6항(선교목사)도 선교목사의 파송을 총회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회가 총회의 파송을 받지 않은 선교사를 선교목사로 파송하여 선교현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노회는 이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목사의 직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헌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세계선교대학 개설 청원 안내

각 노회 또는 지교회에서 총회세계선교대학 개설청원을 하실 경우 총회 세계선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문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노회 소속 선교사와 선교사자녀(MK) 관리 안내

타지에서 복음전도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선교사자녀(MK)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방문할 때 급변하는 한국사회를 보거나, 후원요청을 위해 교회와 노회에 방문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교회와 노회에 방문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를 만나면 따듯하게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듯한 말 한마디가 이들이 다시 선교현장으로 돌아가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 세계선교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증진

앞으로 총회 세계선교부와 노회 선교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차

교육·훈련처

1. 교육자원부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연구 및 개발

가) 임원회(6회) / 실행위원회(3회)

부장 : 김권수 목사(서울동), 서기 : 리종빈 목사(전남), 회계 : 엄경록 장로(안양)

실행위원 :

김동두 목사(서울북), 최석기 목사(서울강북), 김경섭 목사(서울동남), 박도현 목사(인천), 박상용 목사(대전), 소종영 목사(대전서), 황인돈 목사(평북), 박형식 목사(전서), 왕세호 장로(땅끝), 정상화 목사(부산), 신점철 장로(울산), 김휘동 목사(포항남)

나)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위원회(1회)

위원장 : 홍정근 목사(평북), 서기 : 고원석 교수(장신대)

제108회기 교육주제 연구 및 선정

다) 공과(5차교육과정)개발위원회(1회), 소위원회(성서학전문회의, 학업연계회의 등 총 12회)

위원장 : 박봉수 목사(서울관악), 서기 : 윤광서 목사(서울강남)

연구위원장 : 박상진 교수(장신대), 연구위원 : 신현호 교수(장신대), 최민영 목사

사업내용 : 제5차 총회교육과정 목적선정 및 방향설정, 요목선정을 위한 부분별 연구 및 샘플 교재작업 중

라) 성경체험관시설운영위원회(2회)

위원장 : 손대호 목사(서울동북), 서기 : 박주은 장로(서울동)

사업내용 : 성경체험관 지벳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후속 처리 진행

마) 다음세대중장기대책위원회(3회)

소위원회(교육정책분과, 평신도교육사분과, 다음세대분과 총 5회)

위원장 : 홍정근 목사(평북), 서기 : 김의신 목사(전남)

사업내용 : 다음세대 관련 교단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교육정책, 평신도교육사, 다음세대(청년)분과로 나누어 사업 선정 및 실시

바) 세례교육서발간위원회(1회), 소위원회(세례문답개정위원회, 유아세례부모교육교재회의, 입교교육교재회의 총 13회)

위원장 : 조용선 목사(서울강남), 서기 : 최원준 목사(안양)

사업내용 : (개정판)세례문답집 발간 및 세례교육세미나 개최, 세례교육서(유아세례부모교육/입교교육교재) 연구 및 집필

사) 역사교과서대책위원회(2회)

위원장 : 민귀식 목사(경남), 서기 : 박도현 목사(인천), 회계 : 김동두 장로(서울북)

사업내용 : 제108회기 수임안건으로 분과(종교편향에 대한 연구분과, 전문인 양성분과, 대책기구 설치 분과) 조직하여 사업 진행

2) 교재 및 자료개발에 관한 회의

가) 영유아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 공과개발 회의(39회)

제4차 교육과정 GPL-S 3년차(신앙편) 교재 발간,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재개발

나) 구역예배/절기묵상집/기타 자료개발 회의

장년부 구역예배교재 발간, 절기(대림절, 사순절) 묵상집 발간, 교육주제자료집 발간

다) 교육자원부에서 기획 편집하여 출판된 교재(25종)

(1)「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G.P.L S :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 1학기(18종)

(1) 영아부 교사, 어린이(2종)

(2) 유아부 교사, 어린이(2종)

(3) 유치부 교사, 어린이(2종)

(4) 영아부 지도자교재(디지털자료 포함), 지도자그림자료(2종)
유아유치부 지도자교재(디지털자료 포함), 지도자그림자료(2종)

(5) 아동부 저학년 교사, 어린이(2종)

(6) 아동부 고학년 교사, 어린이(2종)

(7) 아동부 지도자교재(디지털자료 포함)(1종)

(8) 중고등부 교사, 학생, 지도자교재(3종)

(2) 자료 개발(7종)

(1) 구역예배 인도자, 학습자(2종)

(2) 절기자료 - 대림절, 사순절 묵상집(2종)

(3) 교육주제 43(1종)

(4) 꿈꾸는 3막(1종)

(5) (개정판) 세례문답집(1종)

라) 교육자원부에서 편집하여 출판사에서 출판된 기타 단행본 및 성경공부 교재

(1)〈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 자료

(가) 성경통신과 초급과정〈믿음의 이야기〉(구약, 신약 문제집, 답안지)

나) 성경통신과 중급과정〈소망의 이야기〉(구약, 신약 문제집, 답안지)

(다) 성경통신대학(Ⅰ,Ⅱ,Ⅲ,Ⅳ,Ⅴ권, 문제집, 답안지)

(2)〈교사를 위한〉 자료

(가) 교사스토리(지도자용, 학습자용)

(나) 교사영성대학(지도자용, 교사용)

(다) 교사리더십대학(지도자용, 교사용)

(3)〈제직을 위한〉 제직훈련교재 지도자 및 학습자용(실천편, 이론편)

(4)〈항존 직분자를 위한〉 피택 항존직 훈련교재(지도자, 학습자용)

(5)〈새신자를 위한〉 거듭난 사람들(지도자, 학습자용)

(6) 구역장·권찰 교육교재 지도자 및 학습자용(기초편, 고급편)

(7)〈목사 임직자를 위한〉 M플랫폼(지도자, 학습자)

3) 세미나 외

가) 기독교교육주간 및 2024 교육정책 TIP세미나

2023. 10. 29 / 연동교회 / 150명 참석

내용 : 예배 설교(김권수 목사/교육자원부 부장), 교육목회심포지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홍정근 목사/평북, 김형석 목사/서울서북, 이상억 교수/장신대, 신현호 교수/장신대), 부서별 연간교육목회 및 특강

나) 제108회 총회 교육자원부 부원 워크숍

1차 2023. 11. 3. / 동신교회 / 27명 참석

2차 2023. 12.19. / 광주벧엘교회 / 24명 참석

내용 : 예배 설교(김권수 목사/교육자원부 부장), 사업소개(김명옥 총무), 질의 및 토론

다) 제108회기 총회 교육자원부 정책협의회

2023. 12. 4. / 동신교회 / 147명 참석

예배 설교(김권수 목사/교육자원부 부장), 사업소개, 교회학교전국연합회 사업소개, 다음세대 교회교육의 현실진단 연구(신현호 교수/장신대), 노회 교육자원부 활성화 방안(노회교육자원부 사례/이전규 목사(전남), 평신도교육사 사례(차명호 교수(부산장신)

라) 세례교육을 위한 세미나

1차 서부권 2024. 1. 23. / 광주벧엘교회(전남) / 160명 참석

2차 서울강북, 서울강남 2024. 1. 25. / 동신교회(서울동) / 250명 참석

3차 중부권 2024. 1. 30. / 대전성남교회(대전) / 220명 참석

4차 동부권 2024. 1. 23. / 포항송도교회(포항남) / 180명 참석

내용 : 예배 설교(지역실행위원), 강의(조용선 목사(서울강남)/서원모 교수(장신대), 김선권 교수(장신대), 양금희 교수(장신대), 안정도 교수(장신대)

마) 2024년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

2024. 1. 30. ~ 2024. 2. 29 / 청소년교실, 학부모교실 운영

코너스톤국제학교, 정의여중, 만나교회, 신답교회, 새생명교회, 참좋은교회, 마포교회, 신성교회, 노량진교회, 안정교회, 화동교회, 대전임마누엘교회, 순천소망교회 / 505명 참석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 사업

1) 교재개발 및 자료재발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공과개발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세대통합),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구역공과 및 여름성경학교(여름수련회) 교재 발간 등

2) 세미나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등 각종 세미나

2. 총회 훈련원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

1) 임원회(2회) / 실행위원회외 회의 (4회)

위원장 : 김휘현 목사(서울동), 서기 김석겸 목사(대구동), 회계 방군섭 장로(서울강서)
위　원 : 신성진 목사(서울서북), 류승선 목사(제주), 강인국 목사(서울동남),
노승찬 목사(경기), 박인규 목사(대전서), 정지태 목사(평양),
윤주환 목사(평남), 주삼문 목사(전주), 이현구 목사(군산),
박종식 장로(순천), 김영암 목사(경남), 박한규 장로(부산동)
원　장 : 주승중 목사

2) 총회 5개권역 지역 훈련원(목사계속교육, 장로계속교육)

가) 총회강북지역훈련원

(1) 총회 : 2023. 12. 11. 월.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믿음실.
이정원 목사(원장/서울강북), 김학수 목사(부원장/서울북),
김성철 목사(부원장/서울서북), 임정길 목사(총무/서울서),
박길우 목사(서기/서울동북), 박　훈 장로(회계/서울동)

나) 총회강남지역훈련원

(1) 총회 : 2023. 12. 12. 화.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믿음실.
이태종 목사(원장/서울강남), 윤석호 목사(부원장/인천동),
강기화 목사(부원장/안양), 김승민 목사(부원장/서울서남),
이양재 목사(부원장/서울남), 김문년 목사(총무/안양),
이영석 목사(서기/영등포), 박희철 장로(회계/서울관악)

다) 총회중부지역훈련원

신원홍 목사(원장/강원동), 연제국 목사(부원장/충청),
박상용 목사(부원장/대전), 김태호 장로(부원장/대전서),
안준호 목사(총무/천안아산), 류승준 목사(서기/충주),
김현달 목사(회계/평양)

라) 총회서부지역훈련원(2024. 2. 26 - 29. 제주더엘호텔외1 / 88명)

서순석 목사(원장/전남), 김준영 목사(부원장/목포),
김학균 목사(부원장/광주), 김윤상 목사(부원장/남원),
배규현 목사(부원장/순천), 박형식 목사(총무/전서),
서병철 목사(서기/광주), 이태춘 장로(회계/군산)

마) 총회동부지역훈련원

신영균 목사(원장/경동), 신성환 목사(부원장/포항),
이상근 목사(경남지역위부원장/경남), 엄정길 목사(부산지역부원장/부산남),
임광명 목사(대구지역부원장/대구동남), 곽혜수 목사(경북지역부원장/포항),
유승종 목사(총무/울산), 강석호 목사(서기/경안), 노홍기 장로(회계/부산남)

3) 후원이사회(3회)

4) 노년목회연구회의(2회)

5) 세미나 및 행사

가) 총회5개권역훈련원 원장과 간담회

2023. 11. 22. 수/ 11: 30 / 디마떼오(대학로) / 7명

나) 제108회기 총회훈련원 정책협의회

2023. 12. 14. 목.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 106명

내용 : 설교(김휘현 위원장), 제108회기 총회훈련원 사업설명,

총회5개권역훈련원 사업보고,

특강: 100세시대의 노년목회, 어떻게(강사 박상진 교수)

노회훈련원 활성화 사례 소개(서울서북노회, 제주노회, 순서노회, 경북노회)

다) 제108회기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전체) 워크숍

2023. 12. 18. 월. 14:30 - 19. 화. 14:00. / 호텔인터시티(대전) / 40명

내용 :설교(김휘현 위원장), 제108회기 총회훈련원 사업 소개,

기조강연 ' 진단과 변화와 발전'(강사 신영균 목사), 분과별 토의 및 발표,

기타행사 :

교양강좌 1 '나눔과학 : 세상과 환경을 생각하는 나눔과 배려의 이야기'

(강사 : 김태동 교수 /한남대 신소재학과)

교양강좌 2 '하나님이 창조하신 먹거리에 대한 소개'

(강사 : 장해동 교수 /충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대전시립미술관 '2023 세계유명미술특별전/ 미래저편에' 관람

라) 실행위원과 총회5개권역훈련원임원단 수련회

2024. 3. 04. 월 - 05. 화. / 정읍지역외 / 24명

6) 현장개발활성화교육

가) 행정대학 (2023. 7. 3. 월. - 5. 수. / 경주제삼교회 / 30명)

나) 담임전도사계속교육(전도사전국연합회와 협력) 2회

다) 여교역자계속교육(전국여교역자연합회와 협력) 1회

7) 훈련원에서 기획 편집하여 출판된 교재

가) 선택받은 이를 위한 네비게이션(지도자, 학습자)-피택자훈련과정

나) 교리교육훈련(지도자, 학습자)

다) 목사임직자를 위한 M플랫폼(지도자, 학습자)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가) 5개권역 목사장로계속교육

(1) 강북지역 목사계속교육

2024. 3. 31. 주일 - 4. 4. 목. / 클락서울호텔(필리핀)

(2) 강남지역 목사계속교육

2024. 8. 08. 월. - 11. 목. / 소망수양관(곤지암)

(3) 중부지역 목사계속교육

2024. 5. 07. 화. - 09. 목. / 속초 썬라이즈호텔외

(4) 동부지역 목사계속교육

2024. 06. 계획 중

나) 후원이사회(회의 및 해외 워크숍)

다) 행정대학(21회)

3. 신학교육부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가) 임원회(2회) / 실행위원회(3회)

부장 : 서순석 목사(전남) 서기 : 박선용 목사(충청) 회계 : 박기상 장로(영등포)

실행위원 :

문성욱 목사(서울서북) 김만준 목사(서울강북) 이대원 장로(서울북) 전만영 목사(서울강서)
안태근 목사(경기) 안준호 목사(천안아산) 곽충환 목사(함해) 임경철 목사(군산)
이진구 목사(목포) 류조희 목사(영주) 김성렬 목사(울산) 김병옥 목사(대구동)
언권회원 : 최흥진 총장(호남신대) 김영권 총장(대전신대)

나) 총장협의회(1회)

부장 서순석 목사(전남) 서기 박선용 목사(충청) 회계 박기상 장로(영등포)

7개신학대학교 총장

김운용 총장(장신대), 황해국 총장(서울장신대), 최흥진 총장(호남신대), 유재경 총장
(영남신대), 천병석 총장(부산장신대), 김영권 총장(대전신대), 배성찬 총장서리(한일장신대)
사업내용 : 신학교육부 수임안건 검토 및 학교별 협조요청, 신입생통합수련회 및 교수세미나
관련 논의

다) 수임안건연구위원회(1회)

이진구 목사(위원장) 김선종 목사(서기)
서순석 목사(부장) 박선용 목사(서기) 박기상 장로(회계)
전만영 목사 김병옥 목사 김철경 장로 강석보 목사
자문위원 최흥진 총장
사업내용 : 108회기 신학교육부 수임안건 연구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 수련회
2024. 6. 17~19 / 소망수양관
참석대상 : 각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 및 미이수 학생 포함

2) 7개 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
2024. 6. 20~21 / 미정
참석대상 :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

4. 고시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가) 임원회(3회) / 실행위원회 (1회)

위원장 : 안창호 목사(인천동), 서기 : 박석진 목사(포항), 회계 : 강무순 목사(군산)
실행위원 :
윤여민 목사(서울강북), 이경욱 목사(서울서), 강두성 목사(제주), 윤병수 목사(서울서남),
김성한 목사(인천), 한성수 목사(충남), 권태구 목사(충주), 김경호 목사(평북),
김진영 목사(순천), 이종학 목사(전북동), 이병영 목사(부산), 안성환 목사(대구서남)

나) 연구위원회 (2회)

위원장 : 안창호 목사(인천동), 서기 : 박석진 목사(포항), 회계 : 강무순 목사(군산)
최영걸 목사(서울), 민경운 목사(서울동). 김한호 목사(강원), 김화수 목사(평남),
김보한 목사(전주), 서광종 목사(김제), 이종문 목사(전남), 유갑준 목사(광주),
안대현 목사(진주), 조신제 목사(경남), 최송규 목사(부산동). 조민상 목사(경서).
김승학 목사(경안)
사업내용 :

1. 설교, 논술 채점기준표 작성
2.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목사고시 응시자 및 목사 임직자는 앞으로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이기에 기본적인 자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범교단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고시위원회에서 기초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의 후속 조치)에 대한 연구
3. 제108회 총회 헌의안(포항남노회장 이용만 장로가 제출한 목사 고시자가 군 입대 등, 합당한 사유로 고시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 그 기간을 면제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건)에 대한 연구

2) 목사고시

가) 2024 목사고시 온라인 접수기간
2024. 2. 13~20. 오후 5시까지

나) 2024 목사고시 우편서류 접수기간
2024. 2. 13~23.

다) 2024 목사고시 당회장·노회장 추천서 접수기간
2024. 3. 8까지

라) 2024 목사고시 접수현황
- 온라인접수 1018명 + 온라인접수 불가능한 외국인 5명 총 1023명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2024년도 목사고시 예정
2024. 5. 15 / 장로회신학대학교

2) 2024년도 목사고시 채점 및 사정회
2024. 5. 21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5. 평신도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및 주요사업

가) 임원회(2회) / 실행위원회 (2회)

부장 : 임현희 장로(전주), 서기 : 오경남 목사(함해), 회계 : 강찬성 장로(영등포)

실행위원 :

이정원 목사(서울강북) 김대권 장로(서울서) 이강호 장로(서울서북) 박웅섭 목사(서울남)

김현호 장로(부천) 김 기 목사(대전) 김경수 장로(충남) 명대준 목사(전남)

윤태현 목사(순천) 정기철 목사(대구동남) 이수현 장로(포항남) 진병호 장로(부산남)

언권위원 : 유재돈 장로(진주남) 정성철 장로(서울강북) 은정화 장로(전남)

전문위원 : 김창만 장로(인천동) 윤효심 목사(서울)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 간담회

2023. 11. 7 / 여전도회 2층 대강당 / 18명 참석

내용 : 총회평신도위원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협력방안 논의

다) 제108회기 총회 평신도위원회와 남녀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 워크숍

2023. 12. 7~8 / 전주 시그니처호텔 / 25명 참석

내용 :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소개, 특강(신정호 목사/동신교회)

라) 제108회기 총회 평신도위원회 정책세미나

2024. 3. 7. / 여전도회관 / 213명

내용 : 개회예배 설교(임현희 목사/위원장), 특강1. 3040세대에 대한 이해와 선교 제안-성석환 교수(장신대), 특강 2. 3040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방향 모색-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특강3. 3040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례-박요한 목사(연동교회 3040담당), 정책소개1. 여전도회전국연합회-윤효심 목사(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 정책소개2. 남선교회전국연합회-김창만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총무), 특별순서 : 사순절특별찬양-익투스 찬양단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 간담회 예정

2024. 3. 26. / 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교육·훈련처 내 총회특별위원회 및 임원회 자문위원회〉

6. 다음세대비전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및 주요사업

가) 회의(4회)

위원장 : 박성근 목사(포항남) 서기 : 안준호 목사(천안아산) 회계 : 박기상 장로(영등포)

위 원 : 박영국 목사(서울서), 유상진 목사(서울북), 송용규 장로(서울북),

남광현 목사(서울동남), 조한원 장로(서울강서), 박석진 목사(포항)

전문위원 : 이규민 교수(장신대), 문재진 목사(미래교회전략연구소장), 신관우 장로(부산동)

사업내용 : 청년사역자들이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년목회의 새로운 비전과 부흥을 위함.

나) 사업

(1) 총회 제108회기 청념목회자 세미나 “청년애(愛) 목회”

2023. 12. 11 / 메이필드호텔 아이리스홀 / 120명

내용 : 개회예배설교(박성근 목사/위원장), 청년이 모이는 교회(김선민 컨설턴트/데일카네기코리아수석), 사례발표(수도권:서울예능교회, 중부권: 대전신성교회, 동부권: 포항중앙교회), 찬양콘서트(강찬/찬양사역자), 말씀 및 기도회(김의식 목사/총회장), 흔들림 없는 청년목회와 미래(최현식 소장/아시아미래연구소), 청년을 위한 열정의 목회(유임근 목사/KOSTA본부 국제총무), 청년회전국연합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청년사역을 위해’, 파송예배(김보현 목사/사무총장)

(2) 총회 제108회기 청년회연합회 재건대회

2024. 1. 9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 130명

내용 : 개회예배설교(김의식 목사/총회장), 기조강연: 청년연합활동의 평가 및 새로운 청년연합활동의 방향 제시(김정현 목사/동성교회), 지역별 교제/ 노회별 청년연합회 조직 및 보고

7. 여성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및 주요사업

가) 임원회의(1회), 위원회의(3회), 분과회의(1회)

위원장 : 김순미 장로(서울)　서기 : 이종엽 목사(서울서남)　회계 : 백보현 장로(서울강남)

위　원 : 이운성 장로(서울서북/강북), 나진옥 장로(대전/중부), 이진구 목사(목포/서부)

최동균 목사(순천/서부), 김병옥 목사(대구동/동부), 이동천 장로(대구동남/동부)

전문위원 : 정병주 목사(안양), 김영암 목사(경남), 정강용 장로(부산)

사업내용 : 지노회의 여성위원회 재개와 조직 독려 및 여성 지도자 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 실시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총회 여성위원회 정책 세미나

2024. 3. 18 / 연동교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2) 여성안수허락 30주년 기념 여성대회

2023. 6. 27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8. 신학대학교미래발전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정책회의 및 주요사업

가) 위원회의(2회)

위원장 : 신영균 목사(경동)　서기 : 김기용 목사(영등포)　회계 : 방서호 장로(강원동)
위　원 : 강찬성 장로(영등포)　이두섭 장로(안양)　박봉수 목사(서울관악)
신동설 목사(대전서)　김태호 장로(대전서)　곽충환 목사(함해)
전문위원 : 이현범 장로(광주)　안주훈 목사(평양)　이영익 목사(평양)
언권위원 : 최흥진 총장(호남신학대학교)
사업내용 : 신학대학교 미래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과거 연구안 분석, 발전방안 연구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1) 정책회의
상반기 중 / 화상회의

9. 총회주제연구위원회(임원회 자문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5회)
위원장 : 정해우 목사(평북)　서기 : 최광순 목사(용천)　회계 : 최경우 장로(서울동)
위　원 : 윤동일 목사(서울), 김미순 장로(제주), 허요환 목사(서울강서), 박재필 목사(충청)
조민상 목사(경서), 홍정근 목사(평북)
전문위원 : 김도훈 교수(장신대), 하경택 교수(장신대), 김성중 교수(장신대)
사업내용 : 109회기 총회주제 연구 및 선정, 총회주제해설집 집필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총회주제해설집 발간

10.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임원회 자문위원회)

가. 제108회기 상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회의(3회)
위원장 : 김운성 목사(서울)　서기 : 강무순 목사(군산)　회계 : 박주은 장로(서울동)
위　원 : 조건회 목사(서울), 김재복 장로(서울동남), 이재훈 목사(평양남), 김종서 장로(충청),
조성현 장로(전남/광주서남), 김승학 목사(경안/안동)
전문위원 : 손병렬 목사(포항남/포항중앙), 박상진 교수(장신대), 함승수 교수(사학미션네트워크)

나.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실시 현황

1)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지평을 회복하라!”
2024. 2. 1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 130명
내용 : 1부 예배: 예배설교(김의식 목사/총회장), 2부 세미나: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한국교회 대응전략(함승수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 성명서 발표, 3부 기도회: 한국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
2) MZ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모범 사례 공모

11. 노회건의사항

1.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노회에서는 홍보와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제4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GPL-S 교회학교 공과가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각 노회에서는 지교회에서 본 교단 공과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판) 세례교육서를 발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강의영상과 자료를 총회 교육자원부 홈페이지(사이버교육원)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회 산하의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닌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 선교, 친교와 봉사의 사업에 귀 노회의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노회 산하에 청년연합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년연합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의 만남과 격려의 자리를 평신도위원회가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사회봉사부 보고

1. 사업보고

가. 현장개발활성화사업

1) 사회선교현장사업

가) 일본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증언의 시간(증언과 화해- 원폭 피해 증언의 시간)

일시 : 2024.02.22.(목) 오후 6시　　장소 :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신관) 405호

내용 : 사회선교위원, 신대원생평화훈련1기, 2기생, 일본관계자 외 32명 참석하여 하카리야 미치오(일본 나카사키 침례교인)님의 원폭 피해 증언의 시간 및 참가자들과 화해와 평화에 대한 질의응답 함.

2) 예장녹색교회협의회

가) 예장생태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모임

일시 : 2023.10.23.(월) 오후 2시　　장소 : 고기교회

내용 : 예장녹색교회협의회의 예장생태운동본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모임

나)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조직화사업 관련 회의

일시 : 2023.10.25.(수) 오후 1시　　장소 :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5층 사무총장실

내용 : 생태선교운동본부 조직화사업 관련 논의 등

다)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추진위원회 회의

일시 : 2024.01.04.(목)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Zoom)

내용 :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이사진 및 사업운영방안 논의 등

라) 예장녹색교회협의회 정기총회 및 한마당

일시 : 2024.01.15.(월)~16.(화)　　장소 : 순천, 여수 애향원

내용 :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로의 전환 준비회의 및 이야기 마당, 순천덕신교회 탐방 등

마)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추진위원회 회의

일시 : 2024.01.30.(화) 오후 7시　　장소 : 온라인(Zoom)

위원 : 김광훈, 김정식, 박상훈, 박용권, 박희광, 백영기
소종영, 안홍택. 유미호, 이주영, 이현아

내용 : 이사회 조직 및 사업계획 등 논의

바)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이사회 모임

일시 : 2024.02.15.(목) 오후 3시　　장소 : 연동교회

내용 :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논의 등

사)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정관 개정 설명-규칙부제2분과

일시 : 2024.02.27.(화)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아) 예장생태선교운동본부 추진위원회 회의

일시 : 2024.03.04.(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온라인(Zoom)

내용 : 정관개정 등

3) 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가) (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3년 사회적경제활성화 목회자&성도 정책세미나”

일정 : 2023.07.24.(월)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사랑실

내용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제로, 약 37명이 모임

나) (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23년 사회적경제활성화 3대 종교계 종교공동행사”

일시 : 2023.11.02.(목) 오전 11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

내용 :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종교계 대표들의 축사, 사회적경제기업체 시상, 퍼포먼스, 판매 부스 등 약 180여명 참석

나. 정책기획개발

1) 제108회기 사회봉사부 정책협의회

일시 : 2023.11.21.(화) 오전 11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내용 : 개회예배 설교 김의식 목사(총회장), 격려사 김보현 목사(사무총장) 등, 주제강의 ‘다중재난과 사회적 돌봄(정무성 박사/숭실대학교)’, 소강의1 ‘다중위기와 한국교회의 지속가능성(홍창현 목사/장신대 겸임)’, 소강의2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이현아 목사/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참석 : 130여명

다. 재해구호

1) 국내재해구호 지원

가) 여름철 장마 및 극한호우 피해 대비 요청 공문 각 노회 발송(2023.07.13.)

나)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성금(일천만원) 전달(2023.07.21.)

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피해 전국모금 및 태풍 대비 요청 공문 각 노회 발송(2023.08.09.)

라) 총회-울기연 지역사회공모사업 최종 보고서 접수(2023.10.30.)

마) 2023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긴급구호 3차 지원

(4개 노회 / 4개 교회 / 11,000,000원)

바)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집필위원회 1차 회의

(1) 일시 : 2024.01.25.(목) 오후 12시 30분

(2)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카페온 회의실

(3) 참석자 : 강석훈 목사(강원동노회 재난대책위원회 상임총무), 박재범 목사(기아대책), 안홍철 목사(한아봉사회 사무총장), 조성원 전도사(담당 실무자)

(4) 내용 : ‘총회 사회봉사부 국내재해구호지침’ 및 ‘총회 재난봉사단’ 경과와 국내재해구호지침 집필 취지 공유와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의 개정집필 방향성’ 설명 등

사)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집필위원회 2차 회의

(1) 일시: 2024.3.7.(목) 오후 2시 (2)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카페온 회의실

(3) 내용: 총회 국내재해구호지침 개정 틀거리 1차 논의 및 업무 분담 등

2) 해외재해구호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가) 우크라이나전쟁 폴란드 바르샤바 베이스캠프 2차 지원

(한교봉 7,500USD 포함(3개월) (2023.11.2./USD 28,100))

나) 우크라이나 전쟁 폴란드 바르샤바 베이스캠프 추가(3차) 지원
(2024.02.15. / 김대오 선교사 / 6.000USD_8,097,208원)

3) 해외재해구호지원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지원
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튀르키예 임원과의 8~12차 온라인회의
(1) 일시 : 2023.07.19./08.02/09.06/10.04/11.02 (총 5회)
(3) 내용 : 이스켄데룬 한국마을 준공식 및 말라티아PCK마을 실사 상황 공유, 한교총 튀르키예재건TF팀 튀르키예 현지 방문(말라티아PCK마을 등) 일정, 말라티아PCK마을 준공식 및 이재민지원센터, 총회 사회봉사부 말라티아PCK마을 모니터링 해외 출장(11월 말) 논의 등
나) 튀르키예 '말리티아 PCK마을 내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및 'Church Town'사업 지원
(2023.11.20./사)한국교회총연합/190,000,000원)
다) CWM에서 요청한 시리아정교회를 통한 시리아 지진 구호 사업 지원
(2023.11.21./CWM(세계선교협의회)/100,000USD 129,706,432원)
라)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문/13차 회의 및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폴란드 바르샤바 방문
(1) 일정: 2023.11.27.(월)~12.02.(토) (2) 장소: 튀르키예, 폴란드
(3) 참석자: 사회봉사부장 박귀환 목사,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
직원 조성원 전도사
(4) 내용: 튀르키예 말라티아PCK마을 준공식 참여해 202동 컨테이너 및 내부시설(냉난방기, 인덕션, 온수기 등) 확인 및 말라티아 주정부 관계자·AFAD(재난관리청) 관계자·주튀르키예 한국대사 등 면담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를 위한 폴란드 바르샤바 베이스캠프 방문해 베이스캠프 모니터링 및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 방문 위로
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를 위한 튀르키예 임원과의 14차 회의
(1) 일시 : 2024.03.07.(목) 오후 4시 30분 (2) 장소 : 온라인(Zoom)
(3) 내용 : 말라티아PCK마을 진행상황 공유, 대도시 내 이재민지원센터 논의 등
바) 튀르키예현지선교회 지진피해 회복지원 워크숍
(1) 일정: 2024.01.01.(월)~05.(금) (2) 장소: 몰타
(3) 참석자: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
(4) 내용: 말라티아PCK마을 내 문화센터 설립 후, 치료센터, 문화교실, 콘서트 등 문화센터 사업계획을 위한 튀르키예현지선교회 전략회의 및 회복지원 워크숍

4) 기타
가) 모로코 지진 긴급구호 지원(2023.09.27. 모로코한인선교회 20,000,000원)
나) 더펠로우십(재)한국IFCJ 이스라엘 긴급구호 지원(2023.10.26./5,000,000원)
다) 기독교선교연대(EMS)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긴급구호 지원(2023.10.27./EUR 20,000)
라) 멕시코허리케인 피해 구호를 위해 멕시코장로교회(INPM)총회로 구호비 지원
(2023.11.29./멕시코장로교회(INPM)총회/10,000USD 13,040,994원)

마) 목회자 긴급구호 및 특별구호

(1) 목회자 긴급구호

(가) 김제/무임/강신욱 목사-신경총장애 희귀질환(루게릭) 투병 지원(2023.10.26. ₩1,000,000)

(나) 진주/장단/류낙안 목사-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지원(2023.11.23. ₩500,000)

(다) 서울서남/주사랑/강문상 목사-전립선암 투병 지원(2023.11.23. ₩1,000,000)

(라) 목회자유가족 백숙자 사모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 지원(2023.11.28. ₩1,000,000)

(마) 전서/성송서부/정종윤 목사-전립선암 수술치료비 지원(2024.02.15. ₩1,000,000)

(바) 전서/신흥/임경재 목사-신장질환(말기) 치료비 지원(2024.02.15. ₩500,000)

(사) 경기/오산다솜/오영미 목사-뇌출혈 수술치료비 지원(2024.02.15. ₩1,000,000)

(2) 특별구호

(가) 한교총에서 요청한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회 긴급 지원(2023.8.9. ₩2,000,000)

(나) 제108회기 예장노숙인복지회와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지원(2023.11.28. ₩30,000,000)

(다) 2023년 노숙인거리성탄예배

일시 : 2023.12.18.(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부산희망드림센터

내용 : 성탄예배 및 방한용품&선물꾸러미 나눔

(지역취약계층 및 노숙인 약 350여명 참석/총회 사회봉사부 임원 참여)

(라) 제주노회 대천교회(김태용 목사) 화재 피해 복구 지원

(2024.01.19. ₩30,000,000)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6월)

가. 사회선교프로그램 및 선교훈련교재개발

1) 생태정의포럼 진행(5/28(화))

2) 사회선교지도자양성사업 진행

3) 교회와사회포럼 진행(4/25(목))

나. 현장개발활성화사업

1) 총회사회봉사주일(3월 첫째 주/총회홈페이지 참고)

2) 총회장애인주일(4월 셋째 주/총회홈페이지 참고)

3) 총회노동주일(4월 넷째 주/총회홈페이지 참고)

4) 노회사회봉사부 총무단 워크숍

다. 사회선교협력사업

1) 해외교류사업-일본그리스도교동맹사업

라. 총회 특별위원회 실무 지원

1) 총회 역사·선교유산회복위원회 사업

가) 총회 한국기독교사적(유물) 지정식 - 전북노회, 전북동노회, 경안노회

나) 한국기독교사적과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목록화 작업(계속)

다) 사적(유물)관리 - 총회한국기독교사적지 책자 수정증보판 1만권 발행

라) 교회사관련사업 - 2024년 한국교회사논문공모사업 및 제108회기 한국교회사포럼

마) 총회 제31회 회의록 일본어-한글 번역 사업

2)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 사업
가) 위원회 조직 확대사업
나) 권역별 위원회 연석회의 및 각노회 임원 정책세미나
3) 울릉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가) 위원회 조직
4)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사업
가) 위원회 조직
나) 예장농어촌목회자교회 실태 조사
5) 생명목회 순례10년 위원회 사업
가) 생명문명 · 생명목회순례10년(2022~2032) 로드맵 집필

3. 노회에 건의 및 당부할 사항

가.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지원사업에 전국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총회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사업의 평가와 대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전국 노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방향제시가 있을 때까지 현 상황 유지 및 지속적인 섬김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국내·외 재해구호를 위한 전국교회 모금 협조 공문과 기타 사회봉사부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노회 내 지교회까지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6월 2일/예배자료 배포예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보전하기 위한 '총회기후위기대응지침'(제107회 총회정책문서 채택)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농어촌선교부 보고

1. 사업보고

가. 농어촌선교현장사업

1) 2023년 농어촌 쌀 나눔 운동 현황

일시 : 2023.11월.~12월

총수량 : 800g * 9,278개, 10kg * 26개, 총 9,278개 (26)

내용 : 도농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인 교류 농촌 일손 돕기, 강단 교류, 농산물 판로 확대 모색을 위한 취지

2) 제108회기 총회농어촌주일 예배

일시 : 2023.11.15.(수) 장소 : 동대전교회(이기용 목사 시무)

내용 : 인도 이흥만 목사(서기), 설교 신동성 목사(부장), 기도 김동천 목사(농목협 수석 부회장), 성경봉독 김두영 목사(농목협 서기), 봉헌기도 김선민 목사(농목협 회계), 축도 송재건 목사(농목협 부회장), 인사 이기용 목사(동대전교회), 오상열 목사(대도농사회처 총무), 인사 오상열 목사(도농사회처 총무)

참석인원 : 50명

3) 2023년 총회농촌선교센터 세미나(지속가능한 농어촌목회를 상상한다)

일시 : 2023.12.14.(목) 장소 : 총회농촌선교센터
내용 : 개회예배 및 농촌목회 현실, 총회의 정책방향, 현장이야기 등 세미나 진행
참석인원 : 농어촌목회자 및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 50명

4) 대전신학대학교 농어촌마을목회 전문사역자과정 종강예배
일시 : 2023.12.05.(화)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수료자 : 3명(학부), 8명(신학대학원) 총 11명

5) 총회농어촌선교후원회 회의
일시 : 2024.01.22.(월)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층 카페온
참석 : 김한호 목사, 김정운 목사, 김명술 목사, 강선기 목사, 손주완 목사, 정성철 목사, 송기섭 목사, 오상열 목사, 홍문배 실장, 김학범 목사
내용 : 제108회기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 실태조사 300만원 후원
농어촌선교후원회 총회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위임

6)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제13회기)
일시 : 2024.01.29.(월) 장소 : 대전노회회관
내용 : 제108회기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 실태조사 설명
각 부 사업 계획, 지역 농어촌목회자협의회 3월 총회 지원 방안

7) 농촌과 목회 100호 25년 감사 예배
일시 : 2024.01.30.(화)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
내용 : 예배 인도 손은기 목사(농촌과 목회 편집위원), 설교 축도 한종현 목사, 기도 안재학 목사, 성경봉독 인도자
참석 : 50명

8) 북한농업개발협력선교후원회 임원회의
일시 : 2024.02.29.(목) 장소 : 기독교회관 5층 한아봉사회 사무실
참석 : 회장 홍기영 목사, 총무 김경호 목사, 부총무 안홍철 목사
배석 : 실장 홍문배, 김학범 목사
내용 : 사업계획

나. 농어촌선교부 정책협의회

1) 제108회기 농어촌선교부 정책협의회
일시 : 2023.11.16.(목)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글리아홀(대강당)
내용 : 개회예배 설교 김태영 목사(증경총회장), 축사 김보현 목사(사무총장), 인도 신동성 목사(부장), 성경봉독 이흥만 목사(서기), 기도 정성철 목사(위원)
강연 : 농어촌교회 현실과 농어촌목회자 협의회 관계(김정운 목사)
사례발표 :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사례(김덕은 목사)
사례 : 지난여름의 감사(신동성 목사)
사례 : 총회농촌센터 협력(이원영 목사)
사업방향 : 총회농어촌선교부 사업(오상열 총무)
참석 : 69개 노회농어촌선교부, 임원, 실행위원, 산하단체 임원 등 200명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6월)

가. 현장개발활성화사업

1) 제13차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대의원 총회(5월 중)
2) 제13차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전국선교대회(7월 중)
3) 귀농귀촌상담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4)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지역별 정기총회(3월-5월 중)
5) 농어촌선교정책문서 발간을 위한 토론회 등
6)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제주지역 창립총회(4월)

나. 사회선교협력사업

1) 농어촌 대외협력

3. 노회 건의 및 당부할 사항

가. 총회 농어촌선교부는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하여 제106회기부터 농촌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이 생산한 쌀 나눔을 추수감사절 및 연말연시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교회의 건강한 농산물을 도시교회에 공급하는 도농상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지속하고자 하오니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Ⅲ.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1. 사업보고

가. 정책개발

1) 해방전북한교회총람집필위원회 회의
(참석자 : 임희국교수, 김진박사, 서선영박사, 김일석 박사, 김시규 박사, 오상열 총무, 이명숙 실장)
가) 제108-1차(2023.9.27.(수) 오전11시/ 백주년 2층 회의실/ 집필일정 및 집필진 소세미나 발제 분야 논의 등
나) 제108-2차(2023.10.30.(월) 오전 11시/백주년 3층 회의실/ 평안도,황해도 김진 박사가, 함경도 서선영 박사가 발표 및 토론하여 집필목차 확정 등
다) 제108-3차(2023. 11. 27.(월) 오후1시/백주년 2층 회의실/ “한국장로교회 북한지역교회사”라는 제하에 전체적인 개괄은 임희국 교수가, 서북지역(평안도, 황해도)는 김진 박사가, 함경도 지역은 서선영 박사가 집필하고 총회 회록 통계(북한교회, 학교, 병원(봉사)등은 김일석 박사가 해제하기로 함.
라) 제108-4차(2023.12.28.(목) 오전 11시 30분/백주년 2층 회의실/집필분야 토론 및 논의
마) 제108-5차(2024.01.25.(목) 오후 1시/백주년 2층 회의실/집필내용 토론 및 방향 합의
바) 제108-6차(2023.02.26.(월) 오전 11시/백주년 2층 회의실/ 집필내용 발제 및 토론 등

2) 제108회기 제35차 총회 남북한선교통일 정책협의회
(2023.12.5. 오전11시/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내용 : 강연1 정진호 교수 “역사의 변곡점에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다” 강연2 임희국 교수 “한국장로교회 북한교회사, 그곳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강연3 김의혁 교수 “총회 북한이탈주민 선교지침” 및 종합토론 등

나. 평화통일선교훈련사업

1) 통일선교대학원 13기 교육과정 강사료 지원(200만원, 11/27)

2) 제1기 총회통일선교지도자과정

가) 1차 과정 : 통일선교에 대한 이론적 이해 (2024.02.27. 오후2시 백주년 소망홀)

나) 2차 과정 : 통일선교 현장탐방을 통한 교육(2024.05.06.~11 대련, 단둥, 집안, 백두산)

다) 3차 과정 : 목회현장에서 접목 (2023.06월 중 총회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다. 현장개발활성화사업

1)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정책간담회

일시 : 2023. 11. 2.(목) 오후 12시 30분 장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

내용 : 통일선교대학원, 통일연구소, 북한선교연구소, 새터민종합상담센터, 이북노회협의회와 함께 제107회기 사업보고 및 제108회기 사업계획 논의 등

라. 북한선교협력사업

1) 북한이탈주민목회자와 총회임원회가 함께하는 연말사랑나눔

일시 : 2023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장소 : 총회장실

주요내용 : 제1부 경건회, 제2부 간담회 및 전달식(12명의 탈북민목회자에게 500만원 전달), 만찬의 시간을 가짐

마. 산하단체

1) 통일선교대학원

가) 13기 통일선교대학원 교육일정(9.26~12.05 강사민외 60명)

나) 총회장 명의 수료증 발급(2023.12.5.)

다) 총회 통일선교대학원 이사회 제3차 정기총회(2024.2.6.오전11시/백주년소망홀)

라) 제8회 통일선교대학원총동문회 정기총회(2024.2.14./오전11시/백주년소망홀/회장 김경진장로 수석부회장 이준삼 장로, 총무 정재순 장로)

2)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새터민 사회정착 선교 안내서 출판 준비)

3) 총회북한선교연구소

이사회 (1차 2023.11.17. / 2차 2023.12.14. : 소장 안교성 교수 선임)

바. 대외협력사업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가) 화해통일위원회 2030 평화통일의제발굴세미나 지원(10/6, 50만원)

나) 제71-3차 회의 화해통일위원회(2023.10.17.(화) 오후2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내용 : 제71회기 사업보고 및 제72회기 사업계획 논의

다) 화해통일위원회 정책협의회(2023.11.28.(화) 12시 30분 / 기사연 공간 이제)

내용 : 72회기 사업설명 논의 및 도잔소프로세스 40주년 준비 등

라) 제72-1차 화해통일위원회(2024.01.16.(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내용 : DMZ생명평화순례, 부활절공동기도문,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 참석(사회선언문 작성), 평화통일 청년의제발굴 세미나, NCCK 100주년 국제컨퍼런스 준비팀 및 협력관련 논의 등

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의 납부(10/31, 일백만원)

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연말행사(2023. 12. 21.(목) 오후5시 / 마포 현래장)
내용 : 대북인도적협력실무자 네트워크 등 1년 평가모임
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24-1차 운영위원회(2024.01.30.(목) 오후 4시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실 / 내용 : 정기총회 준비 및 현안정책과제 논의 등
3)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2023.10.24.(화). 오전 10시/일산광림교회)
내용 : 고신교단의 통일선교 정책소개(정종기 목사) 및 사업계획 논의 등

2. 제108회기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2024년 3월-6월)

가. 정책개발 사업
1) 해방전북한교회총람(북한교회사 출판 / 7~8월 중)
나. 현장개발활성화 사업
1) 총회제정주일캠페인 사업 : 북한선교주일(6/23)
2) 북한선교소식지 발간(6월 중)
다. 사회선교협력사업
1) 북한이탈주민 정착안내사 과정 진행 예정(5~6월)
라. 산하기관 통일선교대학원 14기 계속 교육 진행(현재 69명 등록)

3. 노회에 건의 및 당부할 사항

가. 총회제정주일 북한선교주일(6월 23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하기관 통일선교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15:26, 사53:4-5, 살전5:2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